

더샵 오포센트리체 입주자모집공고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 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및 계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19(COVID-19) 관련 안내 사항

더샵 오포센트리체는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인하여 견본주택 관람을 사이버모델하우스(www.더샵오포센트리체.com)로 대체하여 운영됩니다.

※단, 당첨자발표 후 계약기간 중 계약일에 당첨자(예비입주자)에 한하여 견본주택 관람이 가능합니다.

※계약은 일시별 '온라인 예약제'로 세대별 방문 일시가 상이하오니 방문 전 더샵 오포센트리체 홈페이지(www.더샵오포센트리체.com)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당 일시 외에는 방문이 불가합니다.

※서류제출은 '등기우편 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자세한 사항은 더샵 오포센트리체 상담전화(1661-0069) 또는 입주자모집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의 계약을 위한 견본주택 방문 시 입장은 당첨자(예비입주자)만 입장이 가능합니다. (동반자 동행 불가 / 대리인 위임 시 대리인 1인만 입장 가능)

■ 견본주택 방문 시 아래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입장이 제한됩니다.

입장 제한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스크 미착용, 손 소독제, 비접촉 체온계 등 예방 절차에 불응할 경우 - 열화상 카메라 또는 체온계 측정을 통한 체온 37.3도가 넘을 경우 - 코로나19 감염증상이 있을 경우 - 기타 방역당국 및 사업주체 등이 요구한 사항에 불응할 경우
---------	---

■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예방을 위한 정부 정책에 따라 당첨자의 견본주택 관람, 당첨자 서류제출 및 공급계약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개별 통보할 예정입니다.

■ 더샵 오포센트리체 상담전화(1661-0069) 등을 통해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하여 정확한 지 않은 정보제공으로 청약 관련 사항에 대한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객 여러분께서는 청약과 관련한 상담은 청약의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청약자 본인이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청약자격 등을 숙지하시어 주민등록표등본·초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소득 관련 서류 등을 발급받아 직접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및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 안내

구분	특별공급 (기관추천,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생애최초, 노부모부양)	일반공급 1순위 (해당지역)	일반공급 1순위 (기타지역)	일반공급 2순위 (해당/기타)	당첨자발표 (동·호수 발표)	서류제출 기간 (당첨자 적격 확인)	계약체결 (온라인 예약제)
일정	02월 18일(목)	02월 19일(금)	02월 22일(월)	02월 23일(화)	03월 02일(화)	03월 03일(수) ~ 03월 09일(화)	03월 18일(목) ~ 03월 27일(토)
방법	인터넷 청약 (08:00 ~ 17:30)	인터넷 청약 (08:00 ~ 17:30)			개별조회 (‘청약Home’ 로그인 후 조회 가능)	등기우편 접수 (견본주택 관람 불가)	온라인 예약일 (10:00 ~ 16:00)
장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 앱 : ‘청약홈’ 검색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 앱 : ‘청약홈’ 검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 앱 : ‘청약홈’ 검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첨자 유형별 제출서류는 분양홈페이지를 통해 안내 예정 • 미비서류 보완 제출 및 부적격 세대 등에 대해선 개별통지 예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약체결은 분양 홈페이지 내 예약시스템 통한 예약(방문일시) 후 계약일에 견본주택 방문 계약 ※당첨자 1인에 한하여 방문 계약 ※일반인 입장 불가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견본주택(10:00~14:00)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함. ※은행 창구접수 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취약계층에 한하여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창구(09:00~16:00) ※코로나19 예방대책에 따라 은행 업무시간은 변경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견본주택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손곡로 9 (동천동 855-2) (우편번호: 16827) • 분양 홈페이지 : www.더샵오포센트리체.com 	<ul style="list-style-type: none">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예방을 위한 정부정책에 따라 일정 및 서류접수방식 등이 변경될 수 있음. (*변경될 경우 개별 통보 예정) ※예비입주자(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동·호수 추첨 및 서류제출 일정은 추후 통보예정

※1순위 청약 접수일을 '해당지역'과 '기타지역'으로 분리하여 접수하오니, 청약신청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주민등록표등·초본 상 거주지역 및 거주기간을 명확히 확인 후 신청하여 거주지역 오류로 인한 부적격 처리, 당첨 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지역 거주자(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경기도 광주시 1년 미만 거주자 및 기타 경기도, 수도권 거주자)**가 해당지역으로 신청하여 당첨 시 부적격 처리되오니, 청약신청자의 거주지역에 따른 1순위(해당지역, 기타지역) 청약 접수일을 확인하여 청약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스마트폰 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동인증서를 해당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거나, 네이버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폰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알려드립니다

- 2020.09.29.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 됩니다..
- 본 아파트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1.02.08.**입니다. (청약자격 조건의 기간, 나이, 지역우선 등의 청약자격조건 판단 기준일입니다)
-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경기도 광주시)는 「주택법」 제63조 및 제63조의2에 의한 비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조정대상지역 제1지역)이며,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 규정에 의한 자연보전권역입니다.
- 본 아파트는 수도권 비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입니다.
- 본 아파트는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으로 무주택 또는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한하여 1순위 청약신청이 가능하며, 무주택 세대에 속한 청약신청자(세대주)는 1순위 가점제로,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청약신청자(세대주)는 추첨제로 청약 시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자동 분류됩니다.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청약신청자는 2순위로 청약신청 가능)
*주택소유 관한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당첨 제한 (특별공급 및 1, 2순위 포함)

- 본 아파트 청약신청 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재당첨 제한)에 따른 기존주택 당첨 여부에 따라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게 되며,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배우자 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와 이르고 있는 세대원 포함)는 본 아파트 청약이 불가합니다.
※2020.4.16. 이전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신청하여 입주자를 모집한 경우, 재당첨 제한 적용 기간은 중전의 규정을 따르므로 과거 당첨된 주택의 재당첨 제한 기간은 당첨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문 또는 '청약홈' > '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확인' 메뉴를 통해 개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약자 및 세대원 전원)
- 본 아파트는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으로서 당첨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향후 다른 주택 청약신청 시점의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재당첨 제한)의 개정(2020.4.17.)에 따라 당첨일로부터 7년간 재당첨 제한이 적용되며**, 재당첨 제한 기간 내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하되,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은 제외)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 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당첨된 자의 세대 중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7조의3(불법전매 등으로 계약 취소된 주택의 재공급)에 따른 당첨자의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및 그 배우자만 해당합니다.
*향후 「주택법」 및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 향후 관계법령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상기 '재당첨 제한' 규정) 개정으로 인하여 재당첨 제한 규제가 해제되더라도,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 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민영주택 일반공급)에 따라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민영주택 일반공급 1순위' 청약이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안에서 건설, 공급되는 주택의 세대주 자격을 갖춘 청약자(배우자 분리된 세대의 세대주)가 각각 청약하여 당첨되는 경우,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주택은 둘 다 부적격(재당첨 제한), 당첨자 발표일이 다른 경우 선당첨 인정, 후당첨 부적격(재당첨 제한)으로 처리되오니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 신청할 경우 모두를 무효처리 합니다.
단,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 중복청약 시에는 모두 무효처리)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등본 기준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및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 부양)

[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도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 신청자중 같은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경기도 광주시 1년 이상 계속 거주(2020.02.08. 이전부터)자가 우선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및 제23조제2항제7호에 따라 해당지역 거주자로 우선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출생년도부터 현재까지 기간지정으로 발급)를 사업주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장기해외체류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됩니다.

- 경기도 광주시는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경기도 광주시에서 최근 1년간 계속하여 거주하여야 1순위(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중 우선공급 대상 요건을 충족하게 되며, 국내에 거주하지 않고 해외에 장기간(연속 90일 초과 또는 연간 183일 초과) 체류하고 있는 상태에서 해당 주택건설지역 1순위자로 청약 당첨되는 것은 부정 당첨자에 해당되오니 청약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기간(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 또는 연간 183일을 초과하여 국외에 거주한 기간은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해당 주택건설지역으로 청약할 수 없습니다. 단, 90일 이내의 여행, 출장, 파견 등 단기 해외체류는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나 계속해서 90일 초과 국외에 체류한 경력이 있으면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는 불인정하나 **기타지역 거주자로는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 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3)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 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불인정되며 **기타지역 거주자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 국내 거주로 인정하는 해외체류 예외규정

- 90일 이내의 여행, 출장, 파견 등 단기 해외체류인 경우

-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단신부임)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2020.09.29.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7항에 따라 과거 ①계속하여 90일 ②연간 183일 초과하여 해외에 거주한 경우 우선공급 대상자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해외근무 등 생업사정으로 인하여 혼자 국외에 체류한 경우(단신부임)에는 국내에 거주한 것으로 봅니다)

■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규정에 의거 1순위 청약접수 시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을 점수로 계산하여 당첨자를 우선 선정하는 '청약가점제도' 및 추첨의 방법으로 나머지 당첨자를 선정하는 '추첨제'가 적용됩니다.

- 전용면적 85㎡ 이하 : 일반공급 세대수의 75%(가점제), 나머지 25%(추첨제)

■ 가점제 재당첨 제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6항제2호 2017.09.20. 개정)

• 본 아파트에 1순위 청약 시 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가점제 제한 대상자로서 추첨제로 청약접수 하여야 합니다.

(가점제 제한 대상자(청약신청자)가 가점제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부적격 처리되오니 청약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에 가점제로 당첨되신 분은 당첨일로부터 2년간 가점제 당첨제한자로 관리되오니, 향후 당첨자 본인 및 세대원이 가점제가 적용되는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가점제 제한사항 적용 여부를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 '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확인' 개별조회 가능)

■ 민영주택의 일반공급 1순위 추첨제 당첨자선정 방법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8항에 의거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및 광역시는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주택수보다 추첨 대상자가 많은 경우, 다음 순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1.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되는 주택수의 75% : 무주택세대구성원

2. 나머지 25%의 주택(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 포함) :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기존 소유주택 처분조건을 승낙한 자로 한정)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공급한 후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 1순위에 해당하는 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에게 공급

• 1주택('분양권등' 제외)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가 우선 공급받으려는 경우, ①공급받은 주택의 입주 이전에 기존주택의 소유권 처분조건을 승낙하여야 하며, ②입주예정일 이전에 기존주택의 소유권 처분계약에 관하여 신고하거나 검인을 받아야 하고, ③입주 가능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주택의 소유권 처분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②에 따라 신고하거나 검인받지 않은 경우 입주할 수 없으며, ③에 따라 처분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공급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의2, 제23조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주택소유 여부 판정 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참조)

• 주택소유로 보는 '분양권등'의 범위(「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부칙]제3조, 국토교통부령 제565호, 2018.12.11. 시행)

- '분양권등' 신규 계약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봄)

- '분양권등' 매수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매매대금 완납일(실거래 신고서상) 기준 주택소유로 봄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의3에 의거 '소형·저가주택등'은 '분양권등'을 포함하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 제외)을 기준으로 가격을 판단합니다.

※'소형·저가주택등'이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주택공시가격이 8천만원(수도권은 1억3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등/주택가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제1호가목2)의 기준에 따름)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제1호나목에 의거 주택('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직계존속과 직계존속의 배우자는 가점제 항목의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또한, 부양가족 판정 시 직계비속은 미혼자녀와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인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됩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의3호, 제2조제4호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 가. 주택공급신청자
-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예) 전혼자녀 등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에 따라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 시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단, 혼인신고일로부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전 기존주택을 처분(등기 완료분에 한정)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 2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부칙 제5조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관한 특례)

■ 2020.09.29.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에 따라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 시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외의 출생자가 있는 경우, 혼인 기간 중 출생한 자녀로 인정됩니다.

■ 2020.09.29.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3조에 따라 생애최초 특별공급(전용면적 85㎡ 이하 주택건설량의 7%)이 적용됩니다.

- 2020.09.29.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3조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청약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 중 한사람이라도 주택(분양권등 포함) 구입, 상속, 증여, 신축 등 사유를 불문하고, 과거에 한번이라도 주택(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자격 참조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방법이 '건본주택 방문 신청'에서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인터넷 청약신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만 건본주택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 고령자, 장애인, 다자녀가구(단,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의 최하층 우선 배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제1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인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2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3호 미성년자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자 또는 세대에 속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신청(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시 최하층의 주택배정을 희망한 당첨자에 대해서 해당층을 우선 배정하오니 청약 시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 해당 주택의 분양가격이 바로 위층 주택의 분양가격보다 높은 경우는 제외)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제3호에 해당하는 자 사이에 경쟁이 있으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단, 신청자가 많은 경우 다른 층을 배정받을 수 있고, 적은 경우 미신청자(최하층 우선배정 신청 비대상자 포함)에게도 최하층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 2순위 접수방법이 '청약신청금 납부'에서 '청약통장 사용'으로 변경되었으니 2순위로 청약하고자 하시는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지역별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순위요건을 만족하였으나, 청약신청 전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청약이 불가합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5조제7항에 의거 특별공급 대상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예비입주자 선정방식 및 지위 인정 기간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2에 의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도록 신설되었으며, 특별공급 접수종류 구분 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2제1항 및 제26조제1항에 따라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은 순위에 따라 대상 주택수의 300퍼센트를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함) 분양 홈페이지(www.더샵오폴센트리체.com)에 공개되며, 공개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며,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된 때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처리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02.28. 시행한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1590(청약과열지역 등 예비입주자 선정비율 확대 요청)호에 따라 '20.3.16. 이후 청약과열지역·수도권(인천, 경기)·지방 광역시(부산, 대구, 대전, 광주, 울산)에서 입주자모집공고하는 주택은 300%의 예비입주자를 선정 (투기과열지구 내 공급 주택은 500% 적용)
- 2017.09.20.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방식이 추첨제에서 가점제 방식으로 변경되었으며,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하고 남은 경우 추첨으로 선정합니다.
- 2019.12.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방식이 변경되어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 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별로 공급세대수의 300%를 아래와 같이 선정합니다.
- 1순위 : 공급세대수의 300%까지 지역 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인 경우 지역 구분 없음)하여 가점이 높은 자를 앞 순번으로 선정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인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
- 2순위 :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공급세대수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추첨으로 선정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로 선정된 자 중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공급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자가 있으면 소명기간이 지난 후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의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의

참가 의사를 표시한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특별공급 물량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일반공급 물량을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하여 공급하고, 특별공급 물량 중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제6항에 의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배정일(당첨일)이 입주자선정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체결은 가능하며 입주자 선정 내역은 무효처리됩니다.
- 부동산 거래의 신고 등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 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또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거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경기도 광주시) 내 아파트의 경우 주택매매 계약(최초 공급계약 및 분양권·입주권 전매를 포함)의 부동산 거래신고 시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아파트의 공급계약을 체결한 계약자(외국인 포함)는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및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작성하여 신고에 필요한 서류와 함께 사업주체에 제출하여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비·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및 소재지 신고관청에 직접 제출 등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 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제3항에 의거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된 자는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촉지역 3개월', (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분양권 전매행위 제한 기간
 - 「주택법」 제64조 및 「주택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본 아파트가 건설, 공급되는 경기도 광주시는 조정대상지역(1지역)으로서 최초 입주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일(3년을 초과하는 경우 3년) 까지 전매가 금지됩니다. ※단, 향후 「주택법」 및 「주택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 투기적발자 처벌 (「주택법」 제65조 및 제101조)
 - 분양과 관련하여 주택 청약통장 및 주택 분양권을 불법 거래하다가 적발된 자는 「주택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주택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형사 고발되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거나 3천만원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게 될 수 있습니다.
 - 또한, 2020.4.17.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에 따라 공급질서를 위반한 행위가 적발된 날로부터 10년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불법거래를 알선 또는 중개한 부동산업자에 대해서도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자격정지, 등록취소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원 등 공공기관으로부터 위법 여부 확인 등을 위한 개인정보 요구 시 사업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최초 계약자의 불법행위로 취득한 분양권의 전매
 - 「주택법」 제65조제2항 및 제65조제1항을 위반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은 자에 대하여 이미 체결된 주택의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러한 부정한 방법으로 공급받은 주택의 분양권이 제3자에게 전매된 경우 공급계약 취소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을 위한 위장전입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주택법」 제65조 및 제101조제3호)
- 국토교통부에서는 청약 자료를 토대로 주소 이전 현황 등을 분석, 정기적으로 위장전입 의심자를 수사 의뢰할 수 있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제2항에 따라 주택의 공급계약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당첨자발표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기간 동안에 체결합니다.
- 본 아파트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① 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거나, ②네이버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한국부동산원이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 함에 따라 종전에 국민은행 청약통장 가입자도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를 통해 접수하게 되었습니다.
-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운영하는 "청약가상체험"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제1항에 따라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청약콜센터(1644-7445)에서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 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20.09.29. 개정된 내용 관련 자세한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I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경기도 광주시 주택정책과-6092 (2021. 2. 5.)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고산리 333번지 일원 (고산1지구 C2블록)

■ 공급규모 및 내역 : 지하3층, 지상22~25층, 13개동 총 1,475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은 별도 공급 예정)

일반공급 757세대

특별공급 718세대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144세대,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144세대, 신혼부부 특별공급 291세대, 생애최초 특별공급 99세대,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40세대]

■ 입주시기 : 2023년 12월 예정 (정확한 입주 일자자는 추후 통보예정)

■ 공급내역 및 공급대상

(단위 : m², 세대)

구분	주택관리번호	모델	주택형 (주거전용면적)	약식 표기	주택공급면적			기타공용 면적 (지하주차장등)	계약면적	세대별 대지지분	총공급 세대수	특별공급						일반공급	최하층 우선배정 세대수
					주거 전용면적	주거 공용면적	소계					일반 (기관추천)	다자녀 가구	신혼부부	생애 최초	노부모 부양	계		
민영 주택	2021000045	01	059.9600A	59A	59.9600	23.4700	83.4300	48.9200	132.3500	36.46	184	18	18	36	12	5	89	95	2
		02	059.9800B	59B	59.9800	23.2400	83.2200	48.9300	132.1500	36.47	48	4	4	9	3	1	21	27	1
		03	059.9700C	59C	59.9700	23.5600	83.5300	48.9200	132.4500	36.47	192	19	19	38	13	5	94	98	6
		04	076.9900A	76A	76.9900	29.4300	106.4200	62.8100	169.2300	46.81	145	14	14	29	10	4	71	74	4
		05	076.9900B	76B	76.9900	29.8200	106.8100	62.8100	169.6200	46.81	180	18	18	36	12	5	89	91	8
		06	084.9600A	84A	84.9600	33.3900	118.3500	69.3100	187.6600	51.67	207	20	20	41	14	6	101	106	2
		07	084.9800B	84B	84.9800	32.5100	117.4900	69.3300	186.8200	51.67	164	16	16	32	11	4	79	85	7
		08	084.9800C	84C	84.9800	32.7000	117.6800	69.3300	187.0100	51.67	134	13	13	26	9	4	65	69	6
		09	084.9800D	84D	84.9800	32.9000	117.8800	69.3300	187.2100	51.67	221	22	22	44	15	6	109	112	9
	합계											1,475	144	144	291	99	40	718	757

- 주택형의 구분은 공고상의 표기이며, 견본주택 및 카탈로그-홍보 제작물은 약식으로 표현되었으니,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에 대한 혼돈 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람.
- 주택형 표기방식은 종전(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이점 유념하시어 청약신청 바람. [평형 환산방법 : 공급면적(m²) × 0.3025 또는 공급면적(m²) ÷ 3.3058]
- 계약면적에는 주거 용도로만 쓰이는 주거전용면적과 주거공용면적(계단, 복도, 벽체 등), 기타공용면적(주차장 및 관리사무소, 경비실, 주민공동시설, 기계·전기실 등)이 포함되어 있음.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원)

주택형	동별 (라인별)	공급 세대수	층 구분	해당 세대수	대지비	건축비	공급금액	계약금 (10%)	중도금(60%)						잔금 (30%)			
									계약시	1차(10%)	2차(10%)	3차(10%)	4차(10%)	5차(10%)		6차(10%)		
										2021.07.19	2021.11.18	2022.04.18	2022.09.19	2023.02.20		2023.07.18	입주지정일	
59.9600A	201동 2호	25	1층	1	123,551,695	224,518,305	348,070,000	34,807,000	34,807,000	34,807,000	34,807,000	34,807,000	34,807,000	34,807,000	34,807,000	34,807,000	104,421,000	
			2층	1	123,551,695	228,028,305	351,580,000	35,158,000	35,158,000	35,158,000	35,158,000	35,158,000	35,158,000	35,158,000	35,158,000	35,158,000	35,158,000	105,474,000
			3층	1	123,551,695	231,548,305	355,100,000	35,510,000	35,510,000	35,510,000	35,510,000	35,510,000	35,510,000	35,510,000	35,510,000	35,510,000	35,510,000	106,530,000
			4층	1	123,551,695	235,068,305	358,620,000	35,862,000	35,862,000	35,862,000	35,862,000	35,862,000	35,862,000	35,862,000	35,862,000	35,862,000	35,862,000	107,586,000
			5~9층	5	123,551,695	238,578,305	362,130,000	36,213,000	36,213,000	36,213,000	36,213,000	36,213,000	36,213,000	36,213,000	36,213,000	36,213,000	36,213,000	108,639,000
			10층 이상	16	123,551,695	242,098,305	365,650,000	36,565,000	36,565,000	36,565,000	36,565,000	36,565,000	36,565,000	36,565,000	36,565,000	36,565,000	36,565,000	109,695,000
59.9600A	202동 2호	23	3층	1	123,551,695	224,518,305	348,070,000	34,807,000	34,807,000	34,807,000	34,807,000	34,807,000	34,807,000	34,807,000	34,807,000	34,807,000	104,421,000	
			4층	1	123,551,695	228,028,305	351,580,000	35,158,000	35,158,000	35,158,000	35,158,000	35,158,000	35,158,000	35,158,000	35,158,000	35,158,000	105,474,000	
			5층	1	123,551,695	231,548,305	355,100,000	35,510,000	35,510,000	35,510,000	35,510,000	35,510,000	35,510,000	35,510,000	35,510,000	35,510,000	106,530,000	
			6~9층	4	123,551,695	235,068,305	358,620,000	35,862,000	35,862,000	35,862,000	35,862,000	35,862,000	35,862,000	35,862,000	35,862,000	35,862,000	107,586,000	
			10~14층	5	123,551,695	238,578,305	362,130,000	36,213,000	36,213,000	36,213,000	36,213,000	36,213,000	36,213,000	36,213,000	36,213,000	36,213,000	108,639,000	
			15층 이상	11	123,551,695	242,098,305	365,650,000	36,565,000	36,565,000	36,565,000	36,565,000	36,565,000	36,565,000	36,565,000	36,565,000	36,565,000	109,695,000	
59.9600A	203동 4호	23	3층	1	123,551,695	224,518,305	348,070,000	34,807,000	34,807,000	34,807,000	34,807,000	34,807,000	34,807,000	34,807,000	34,807,000	104,421,000		
			4층	1	123,551,695	228,028,305	351,580,000	35,158,000	35,158,000	35,158,000	35,158,000	35,158,000	35,158,000	35,158,000	35,158,000	105,474,000		
			5~9층	5	123,551,695	231,548,305	355,100,000	35,510,000	35,510,000	35,510,000	35,510,000	35,510,000	35,510,000	35,510,000	35,510,000	106,530,000		
			10~13층	4	123,551,695	235,068,305	358,620,000	35,862,000	35,862,000	35,862,000	35,862,000	35,862,000	35,862,000	35,862,000	35,862,000	107,586,000		
			14~15층	2	123,551,695	238,578,305	362,130,000	36,213,000	36,213,000	36,213,000	36,213,000	36,213,000	36,213,000	36,213,000	36,213,000	108,639,000		
			16층 이상	10	123,551,695	242,098,305	365,650,000	36,565,000	36,565,000	36,565,000	36,565,000	36,565,000	36,565,000	36,565,000	36,565,000	36,565,000	109,695,000	

주택형	동별 (라인별)	공급 세대수	층 구분	해당 세대수	대지비	건축비	공급금액	계약금 (10%)	중도금(60%)						잔금 (30%)	
									1차(10%)	2차(10%)	3차(10%)	4차(10%)	5차(10%)	6차(10%)		
									계약시	2021.07.19	2021.11.18	2022.04.18	2022.09.19	2023.02.20		2023.07.18
59.9600A	204동 4호	22	3층	1	123,551,695	224,518,305	348,070,000	34,807,000	34,807,000	34,807,000	34,807,000	34,807,000	34,807,000	34,807,000	104,421,000	
			4층	1	123,551,695	228,028,305	351,580,000	35,158,000	35,158,000	35,158,000	35,158,000	35,158,000	35,158,000	35,158,000	35,158,000	105,474,000
			5~9층	5	123,551,695	231,548,305	355,100,000	35,510,000	35,510,000	35,510,000	35,510,000	35,510,000	35,510,000	35,510,000	35,510,000	106,530,000
			10~11층	2	123,551,695	235,068,305	358,620,000	35,862,000	35,862,000	35,862,000	35,862,000	35,862,000	35,862,000	35,862,000	35,862,000	107,586,000
			12층	1	123,551,695	238,578,305	362,130,000	36,213,000	36,213,000	36,213,000	36,213,000	36,213,000	36,213,000	36,213,000	36,213,000	108,639,000
			13층 이상	12	123,551,695	242,098,305	365,650,000	36,565,000	36,565,000	36,565,000	36,565,000	36,565,000	36,565,000	36,565,000	36,565,000	109,695,000
59.9600A	207동 4호	21	3층	1	123,551,695	224,518,305	348,070,000	34,807,000	34,807,000	34,807,000	34,807,000	34,807,000	34,807,000	34,807,000	104,421,000	
			4층	1	123,551,695	228,028,305	351,580,000	35,158,000	35,158,000	35,158,000	35,158,000	35,158,000	35,158,000	35,158,000	105,474,000	
			5~9층	5	123,551,695	231,548,305	355,100,000	35,510,000	35,510,000	35,510,000	35,510,000	35,510,000	35,510,000	35,510,000	106,530,000	
			10~11층	2	123,551,695	235,068,305	358,620,000	35,862,000	35,862,000	35,862,000	35,862,000	35,862,000	35,862,000	35,862,000	35,862,000	107,586,000
			12층 이상	12	123,551,695	242,098,305	365,650,000	36,565,000	36,565,000	36,565,000	36,565,000	36,565,000	36,565,000	36,565,000	36,565,000	109,695,000
59.9600A	210동 2호	22	3층	1	123,551,695	224,518,305	348,070,000	34,807,000	34,807,000	34,807,000	34,807,000	34,807,000	34,807,000	34,807,000	104,421,000	
			4층	1	123,551,695	228,028,305	351,580,000	35,158,000	35,158,000	35,158,000	35,158,000	35,158,000	35,158,000	35,158,000	105,474,000	
			5~9층	5	123,551,695	231,548,305	355,100,000	35,510,000	35,510,000	35,510,000	35,510,000	35,510,000	35,510,000	35,510,000	106,530,000	
			10~12층	3	123,551,695	235,068,305	358,620,000	35,862,000	35,862,000	35,862,000	35,862,000	35,862,000	35,862,000	35,862,000	35,862,000	107,586,000
			13~14층	2	123,551,695	238,578,305	362,130,000	36,213,000	36,213,000	36,213,000	36,213,000	36,213,000	36,213,000	36,213,000	36,213,000	108,639,000
			15층 이상	10	123,551,695	242,098,305	365,650,000	36,565,000	36,565,000	36,565,000	36,565,000	36,565,000	36,565,000	36,565,000	36,565,000	109,695,000
59.9600A	211동 2호	25	1층	1	123,551,695	217,488,305	341,040,000	34,104,000	34,104,000	34,104,000	34,104,000	34,104,000	34,104,000	34,104,000	102,312,000	
			2층	1	123,551,695	224,518,305	348,070,000	34,807,000	34,807,000	34,807,000	34,807,000	34,807,000	34,807,000	34,807,000	104,421,000	
			3층	1	123,551,695	228,028,305	351,580,000	35,158,000	35,158,000	35,158,000	35,158,000	35,158,000	35,158,000	35,158,000	105,474,000	
			4층	1	123,551,695	231,548,305	355,100,000	35,510,000	35,510,000	35,510,000	35,510,000	35,510,000	35,510,000	35,510,000	106,530,000	
			5~9층	5	123,551,695	235,068,305	358,620,000	35,862,000	35,862,000	35,862,000	35,862,000	35,862,000	35,862,000	35,862,000	107,586,000	
			10~15층	6	123,551,695	238,578,305	362,130,000	36,213,000	36,213,000	36,213,000	36,213,000	36,213,000	36,213,000	36,213,000	36,213,000	108,639,000
			16층 이상	10	123,551,695	242,098,305	365,650,000	36,565,000	36,565,000	36,565,000	36,565,000	36,565,000	36,565,000	36,565,000	36,565,000	109,695,000
59.9600A	212동 2호	23	3층	1	123,551,695	224,518,305	348,070,000	34,807,000	34,807,000	34,807,000	34,807,000	34,807,000	34,807,000	34,807,000	104,421,000	
			4층	1	123,551,695	228,028,305	351,580,000	35,158,000	35,158,000	35,158,000	35,158,000	35,158,000	35,158,000	35,158,000	105,474,000	
			5~9층	5	123,551,695	235,068,305	358,620,000	35,862,000	35,862,000	35,862,000	35,862,000	35,862,000	35,862,000	35,862,000	107,586,000	
			10~16층	7	123,551,695	238,578,305	362,130,000	36,213,000	36,213,000	36,213,000	36,213,000	36,213,000	36,213,000	36,213,000	36,213,000	108,639,000
			17층 이상	9	123,551,695	242,098,305	365,650,000	36,565,000	36,565,000	36,565,000	36,565,000	36,565,000	36,565,000	36,565,000	36,565,000	109,695,000
59.9800B	213동 1호	23	3층	1	123,592,907	223,597,093	347,190,000	34,719,000	34,719,000	34,719,000	34,719,000	34,719,000	34,719,000	34,719,000	104,157,000	
			4층	1	123,592,907	227,107,093	350,700,000	35,070,000	35,070,000	35,070,000	35,070,000	35,070,000	35,070,000	35,070,000	105,210,000	
			5~9층	5	123,592,907	230,617,093	354,210,000	35,421,000	35,421,000	35,421,000	35,421,000	35,421,000	35,421,000	35,421,000	106,263,000	
			10~11층	2	123,592,907	234,117,093	357,710,000	35,771,000	35,771,000	35,771,000	35,771,000	35,771,000	35,771,000	35,771,000	35,771,000	107,313,000
			12~13층	2	123,592,907	237,627,093	361,220,000	36,122,000	36,122,000	36,122,000	36,122,000	36,122,000	36,122,000	36,122,000	36,122,000	108,366,000
			14층 이상	12	123,592,907	241,137,093	364,730,000	36,473,000	36,473,000	36,473,000	36,473,000	36,473,000	36,473,000	36,473,000	36,473,000	109,419,000
59.9800B	213동 2호	25	1층	1	123,592,907	216,587,093	340,180,000	34,018,000	34,018,000	34,018,000	34,018,000	34,018,000	34,018,000	34,018,000	102,054,000	
			2층	1	123,592,907	220,087,093	343,680,000	34,368,000	34,368,000	34,368,000	34,368,000	34,368,000	34,368,000	34,368,000	103,104,000	
			3층	1	123,592,907	223,597,093	347,190,000	34,719,000	34,719,000	34,719,000	34,719,000	34,719,000	34,719,000	34,719,000	104,157,000	
			4층	1	123,592,907	227,107,093	350,700,000	35,070,000	35,070,000	35,070,000	35,070,000	35,070,000	35,070,000	35,070,000	105,210,000	
			5~9층	5	123,592,907	230,617,093	354,210,000	35,421,000	35,421,000	35,421,000	35,421,000	35,421,000	35,421,000	35,421,000	106,263,000	
			10~15층	6	123,592,907	234,117,093	357,710,000	35,771,000	35,771,000	35,771,000	35,771,000	35,771,000	35,771,000	35,771,000	35,771,000	107,313,000
			16~17층	2	123,592,907	237,627,093	361,220,000	36,122,000	36,122,000	36,122,000	36,122,000	36,122,000	36,122,000	36,122,000	36,122,000	108,366,000
			18층 이상	8	123,592,907	241,137,093	364,730,000	36,473,000	36,473,000	36,473,000	36,473,000	36,473,000	36,473,000	36,473,000	36,473,000	109,419,000

주택형	동별 (라인별)	공급 세대수	층 구분	해당 세대수	대지비	건축비	공급금액	계약금 (10%)	중도금(60%)						잔금 (30%)
									1차(10%)	2차(10%)	3차(10%)	4차(10%)	5차(10%)	6차(10%)	
								계약시	2021.07.19	2021.11.18	2022.04.18	2022.09.19	2023.02.20	2023.07.18	입주지정일
59.9700C	201동 1호	23	3층	1	123,572,301	217,867,699	341,440,000	34,144,000	34,144,000	34,144,000	34,144,000	34,144,000	34,144,000	34,144,000	102,432,000
			4층	1	123,572,301	221,387,699	344,960,000	34,496,000	34,496,000	34,496,000	34,496,000	34,496,000	34,496,000	34,496,000	103,488,000
			5~9층	5	123,572,301	224,907,699	348,480,000	34,848,000	34,848,000	34,848,000	34,848,000	34,848,000	34,848,000	34,848,000	104,544,000
			10층 이상	16	123,572,301	228,427,699	352,000,000	35,200,000	35,200,000	35,200,000	35,200,000	35,200,000	35,200,000	35,200,000	105,600,000
59.9700C	202동 1호	25	1층	1	123,572,301	207,307,699	330,880,000	33,088,000	33,088,000	33,088,000	33,088,000	33,088,000	33,088,000	33,088,000	99,264,000
			2층	1	123,572,301	210,827,699	334,400,000	33,440,000	33,440,000	33,440,000	33,440,000	33,440,000	33,440,000	33,440,000	100,320,000
			3층	1	123,572,301	214,347,699	337,920,000	33,792,000	33,792,000	33,792,000	33,792,000	33,792,000	33,792,000	33,792,000	101,376,000
			4층	1	123,572,301	217,867,699	341,440,000	34,144,000	34,144,000	34,144,000	34,144,000	34,144,000	34,144,000	34,144,000	102,432,000
			5~9층	5	123,572,301	221,387,699	344,960,000	34,496,000	34,496,000	34,496,000	34,496,000	34,496,000	34,496,000	34,496,000	103,488,000
			10~13층	4	123,572,301	224,907,699	348,480,000	34,848,000	34,848,000	34,848,000	34,848,000	34,848,000	34,848,000	34,848,000	104,544,000
			14층 이상	12	123,572,301	228,427,699	352,000,000	35,200,000	35,200,000	35,200,000	35,200,000	35,200,000	35,200,000	35,200,000	105,600,000
59.9700C	203동 5호	25	1층	1	123,572,301	203,787,699	327,360,000	32,736,000	32,736,000	32,736,000	32,736,000	32,736,000	32,736,000	32,736,000	98,208,000
			2층	1	123,572,301	207,307,699	330,880,000	33,088,000	33,088,000	33,088,000	33,088,000	33,088,000	33,088,000	33,088,000	99,264,000
			3층	1	123,572,301	210,827,699	334,400,000	33,440,000	33,440,000	33,440,000	33,440,000	33,440,000	33,440,000	33,440,000	100,320,000
			4층	1	123,572,301	214,347,699	337,920,000	33,792,000	33,792,000	33,792,000	33,792,000	33,792,000	33,792,000	33,792,000	101,376,000
			5~9층	5	123,572,301	217,867,699	341,440,000	34,144,000	34,144,000	34,144,000	34,144,000	34,144,000	34,144,000	34,144,000	102,432,000
			10~12층	3	123,572,301	221,387,699	344,960,000	34,496,000	34,496,000	34,496,000	34,496,000	34,496,000	34,496,000	34,496,000	103,488,000
			13층	1	123,572,301	224,907,699	348,480,000	34,848,000	34,848,000	34,848,000	34,848,000	34,848,000	34,848,000	34,848,000	104,544,000
			14층 이상	12	123,572,301	228,427,699	352,000,000	35,200,000	35,200,000	35,200,000	35,200,000	35,200,000	35,200,000	35,200,000	105,600,000
59.9700C	204동 5호 210동 1호	48	1층	2	123,572,301	203,787,699	327,360,000	32,736,000	32,736,000	32,736,000	32,736,000	32,736,000	32,736,000	32,736,000	98,208,000
			2층	2	123,572,301	207,307,699	330,880,000	33,088,000	33,088,000	33,088,000	33,088,000	33,088,000	33,088,000	33,088,000	99,264,000
			3층	2	123,572,301	210,827,699	334,400,000	33,440,000	33,440,000	33,440,000	33,440,000	33,440,000	33,440,000	33,440,000	100,320,000
			4층	2	123,572,301	214,347,699	337,920,000	33,792,000	33,792,000	33,792,000	33,792,000	33,792,000	33,792,000	33,792,000	101,376,000
			5~9층	10	123,572,301	217,867,699	341,440,000	34,144,000	34,144,000	34,144,000	34,144,000	34,144,000	34,144,000	34,144,000	102,432,000
			10층	2	123,572,301	221,387,699	344,960,000	34,496,000	34,496,000	34,496,000	34,496,000	34,496,000	34,496,000	34,496,000	103,488,000
			11층	2	123,572,301	224,907,699	348,480,000	34,848,000	34,848,000	34,848,000	34,848,000	34,848,000	34,848,000	34,848,000	104,544,000
12층 이상	26	123,572,301	228,427,699	352,000,000	35,200,000	35,200,000	35,200,000	35,200,000	35,200,000	35,200,000	35,200,000	105,600,000			
59.9700C	207동 5호	23	1층	1	123,572,301	203,787,699	327,360,000	32,736,000	32,736,000	32,736,000	32,736,000	32,736,000	32,736,000	32,736,000	98,208,000
			2층	1	123,572,301	207,307,699	330,880,000	33,088,000	33,088,000	33,088,000	33,088,000	33,088,000	33,088,000	33,088,000	99,264,000
			3층	1	123,572,301	210,827,699	334,400,000	33,440,000	33,440,000	33,440,000	33,440,000	33,440,000	33,440,000	33,440,000	100,320,000
			4층	1	123,572,301	214,347,699	337,920,000	33,792,000	33,792,000	33,792,000	33,792,000	33,792,000	33,792,000	33,792,000	101,376,000
			5~9층	5	123,572,301	217,867,699	341,440,000	34,144,000	34,144,000	34,144,000	34,144,000	34,144,000	34,144,000	34,144,000	102,432,000
			10층	1	123,572,301	224,907,699	348,480,000	34,848,000	34,848,000	34,848,000	34,848,000	34,848,000	34,848,000	34,848,000	104,544,000
			11층 이상	13	123,572,301	228,427,699	352,000,000	35,200,000	35,200,000	35,200,000	35,200,000	35,200,000	35,200,000	35,200,000	105,600,000
59.9700C	211동 1호	23	3층	1	123,572,301	210,827,699	334,400,000	33,440,000	33,440,000	33,440,000	33,440,000	33,440,000	33,440,000	33,440,000	100,320,000
			4층	1	123,572,301	214,347,699	337,920,000	33,792,000	33,792,000	33,792,000	33,792,000	33,792,000	33,792,000	101,376,000	
			5~9층	5	123,572,301	221,387,699	344,960,000	34,496,000	34,496,000	34,496,000	34,496,000	34,496,000	34,496,000	103,488,000	
			10~14층	5	123,572,301	224,907,699	348,480,000	34,848,000	34,848,000	34,848,000	34,848,000	34,848,000	34,848,000	104,544,000	
			15층 이상	11	123,572,301	228,427,699	352,000,000	35,200,000	35,200,000	35,200,000	35,200,000	35,200,000	35,200,000	35,200,000	105,600,000

주택형	동별 (라인별)	공급 세대수	층 구분	해당 세대수	대지비	건축비	공급금액	계약금 (10%)	중도금(60%)						잔금 (30%)	
									1차(10%)	2차(10%)	3차(10%)	4차(10%)	5차(10%)	6차(10%)		
									계약시	2021.07.19	2021.11.18	2022.04.18	2022.09.19	2023.02.20		2023.07.18
59.9700C	212동 1호	25	1층	1	123,572,301	203,787,699	327,360,000	32,736,000	32,736,000	32,736,000	32,736,000	32,736,000	32,736,000	32,736,000	98,208,000	
			2층	1	123,572,301	207,307,699	330,880,000	33,088,000	33,088,000	33,088,000	33,088,000	33,088,000	33,088,000	33,088,000	33,088,000	99,264,000
			3층	1	123,572,301	210,827,699	334,400,000	33,440,000	33,440,000	33,440,000	33,440,000	33,440,000	33,440,000	33,440,000	33,440,000	100,320,000
			4층	1	123,572,301	217,867,699	341,440,000	34,144,000	34,144,000	34,144,000	34,144,000	34,144,000	34,144,000	34,144,000	34,144,000	102,432,000
			5~9층	5	123,572,301	221,387,699	344,960,000	34,496,000	34,496,000	34,496,000	34,496,000	34,496,000	34,496,000	34,496,000	34,496,000	103,488,000
			10~15층	6	123,572,301	224,907,699	348,480,000	34,848,000	34,848,000	34,848,000	34,848,000	34,848,000	34,848,000	34,848,000	34,848,000	104,544,000
			16층 이상	10	123,572,301	228,427,699	352,000,000	35,200,000	35,200,000	35,200,000	35,200,000	35,200,000	35,200,000	35,200,000	35,200,000	105,600,000
76.9900A	201동 5호	23	3층	1	158,643,179	271,886,821	430,530,000	43,053,000	43,053,000	43,053,000	43,053,000	43,053,000	43,053,000	43,053,000	129,159,000	
			4층	1	158,643,179	276,366,821	435,010,000	43,501,000	43,501,000	43,501,000	43,501,000	43,501,000	43,501,000	43,501,000	130,503,000	
			5~9층	5	158,643,179	280,856,821	439,500,000	43,950,000	43,950,000	43,950,000	43,950,000	43,950,000	43,950,000	43,950,000	131,850,000	
			10~16층	7	158,643,179	285,336,821	443,980,000	44,398,000	44,398,000	44,398,000	44,398,000	44,398,000	44,398,000	44,398,000	44,398,000	133,194,000
			17층	1	158,643,179	289,826,821	448,470,000	44,847,000	44,847,000	44,847,000	44,847,000	44,847,000	44,847,000	44,847,000	44,847,000	134,541,000
			18층 이상	8	158,643,179	294,306,821	452,950,000	45,295,000	45,295,000	45,295,000	45,295,000	45,295,000	45,295,000	45,295,000	45,295,000	135,885,000
76.9900A	202동 5호	25	1층	1	158,643,179	262,916,821	421,560,000	42,156,000	42,156,000	42,156,000	42,156,000	42,156,000	42,156,000	42,156,000	126,468,000	
			2층	1	158,643,179	267,396,821	426,040,000	42,604,000	42,604,000	42,604,000	42,604,000	42,604,000	42,604,000	42,604,000	127,812,000	
			3층	1	158,643,179	271,886,821	430,530,000	43,053,000	43,053,000	43,053,000	43,053,000	43,053,000	43,053,000	43,053,000	129,159,000	
			4층	1	158,643,179	276,366,821	435,010,000	43,501,000	43,501,000	43,501,000	43,501,000	43,501,000	43,501,000	43,501,000	130,503,000	
			5~8층	4	158,643,179	280,856,821	439,500,000	43,950,000	43,950,000	43,950,000	43,950,000	43,950,000	43,950,000	43,950,000	131,850,000	
			9층	1	158,643,179	285,336,821	443,980,000	44,398,000	44,398,000	44,398,000	44,398,000	44,398,000	44,398,000	44,398,000	44,398,000	133,194,000
			10~17층	8	158,643,179	289,826,821	448,470,000	44,847,000	44,847,000	44,847,000	44,847,000	44,847,000	44,847,000	44,847,000	44,847,000	134,541,000
			18층 이상	8	158,643,179	294,306,821	452,950,000	45,295,000	45,295,000	45,295,000	45,295,000	45,295,000	45,295,000	45,295,000	45,295,000	135,885,000
76.9900A	210동 5호	24	1층	1	158,643,179	271,886,821	430,530,000	43,053,000	43,053,000	43,053,000	43,053,000	43,053,000	43,053,000	43,053,000	129,159,000	
			2층	1	158,643,179	276,366,821	435,010,000	43,501,000	43,501,000	43,501,000	43,501,000	43,501,000	43,501,000	43,501,000	130,503,000	
			3층	1	158,643,179	280,856,821	439,500,000	43,950,000	43,950,000	43,950,000	43,950,000	43,950,000	43,950,000	43,950,000	131,850,000	
			4층	1	158,643,179	285,336,821	443,980,000	44,398,000	44,398,000	44,398,000	44,398,000	44,398,000	44,398,000	44,398,000	44,398,000	133,194,000
			5~9층	5	158,643,179	289,826,821	448,470,000	44,847,000	44,847,000	44,847,000	44,847,000	44,847,000	44,847,000	44,847,000	44,847,000	134,541,000
			10층 이상	15	158,643,179	294,306,821	452,950,000	45,295,000	45,295,000	45,295,000	45,295,000	45,295,000	45,295,000	45,295,000	45,295,000	135,885,000
76.9900A	211동 5호	25	1층	1	158,643,179	262,916,821	421,560,000	42,156,000	42,156,000	42,156,000	42,156,000	42,156,000	42,156,000	42,156,000	126,468,000	
			2층	1	158,643,179	267,396,821	426,040,000	42,604,000	42,604,000	42,604,000	42,604,000	42,604,000	42,604,000	42,604,000	127,812,000	
			3층	1	158,643,179	271,886,821	430,530,000	43,053,000	43,053,000	43,053,000	43,053,000	43,053,000	43,053,000	43,053,000	129,159,000	
			4층	1	158,643,179	276,366,821	435,010,000	43,501,000	43,501,000	43,501,000	43,501,000	43,501,000	43,501,000	43,501,000	130,503,000	
			5~9층	5	158,643,179	280,856,821	439,500,000	43,950,000	43,950,000	43,950,000	43,950,000	43,950,000	43,950,000	43,950,000	131,850,000	
			10~15층	6	158,643,179	285,336,821	443,980,000	44,398,000	44,398,000	44,398,000	44,398,000	44,398,000	44,398,000	44,398,000	44,398,000	133,194,000
			16층	1	158,643,179	289,826,821	448,470,000	44,847,000	44,847,000	44,847,000	44,847,000	44,847,000	44,847,000	44,847,000	44,847,000	134,541,000
			17층 이상	9	158,643,179	294,306,821	452,950,000	45,295,000	45,295,000	45,295,000	45,295,000	45,295,000	45,295,000	45,295,000	45,295,000	135,885,000
76.9900A	212동 5호	25	1층	1	158,643,179	262,916,821	421,560,000	42,156,000	42,156,000	42,156,000	42,156,000	42,156,000	42,156,000	42,156,000	126,468,000	
			2층	1	158,643,179	267,396,821	426,040,000	42,604,000	42,604,000	42,604,000	42,604,000	42,604,000	42,604,000	42,604,000	127,812,000	
			3층	1	158,643,179	271,886,821	430,530,000	43,053,000	43,053,000	43,053,000	43,053,000	43,053,000	43,053,000	43,053,000	129,159,000	
			4층	1	158,643,179	276,366,821	435,010,000	43,501,000	43,501,000	43,501,000	43,501,000	43,501,000	43,501,000	43,501,000	130,503,000	
			5~9층	5	158,643,179	280,856,821	439,500,000	43,950,000	43,950,000	43,950,000	43,950,000	43,950,000	43,950,000	43,950,000	131,850,000	
			10~16층	7	158,643,179	285,336,821	443,980,000	44,398,000	44,398,000	44,398,000	44,398,000	44,398,000	44,398,000	44,398,000	44,398,000	133,194,000
			17층 이상	9	158,643,179	294,306,821	452,950,000	45,295,000	45,295,000	45,295,000	45,295,000	45,295,000	45,295,000	45,295,000	45,295,000	135,885,000

주택형	동별 (라인별)	공급 세대수	층 구분	해당 세대수	대지비	건축비	공급금액	계약금 (10%)	중도금(60%)						잔금 (30%)
									1차(10%)	2차(10%)	3차(10%)	4차(10%)	5차(10%)	6차(10%)	
									계약시	2021.07.19	2021.11.18	2022.04.18	2022.09.19	2023.02.20	
76.9900A	213동 5호	23	3층	1	158,643,179	276,366,821	435,010,000	43,501,000	43,501,000	43,501,000	43,501,000	43,501,000	43,501,000	43,501,000	130,503,000
			4층	1	158,643,179	280,856,821	439,500,000	43,950,000	43,950,000	43,950,000	43,950,000	43,950,000	43,950,000	43,950,000	131,850,000
			5~9층	5	158,643,179	285,336,821	443,980,000	44,398,000	44,398,000	44,398,000	44,398,000	44,398,000	44,398,000	44,398,000	133,194,000
			10~15층	6	158,643,179	289,826,821	448,470,000	44,847,000	44,847,000	44,847,000	44,847,000	44,847,000	44,847,000	44,847,000	134,541,000
			16층 이상	10	158,643,179	294,306,821	452,950,000	45,295,000	45,295,000	45,295,000	45,295,000	45,295,000	45,295,000	45,295,000	135,885,000
76.9900B	205동 3호/4호 206동 2호/3호 208동 2호/3호 209동 2호/3호	180	1층	8	158,643,179	255,456,821	414,100,000	41,410,000	41,410,000	41,410,000	41,410,000	41,410,000	41,410,000	41,410,000	124,230,000
			2층	8	158,643,179	259,956,821	418,600,000	41,860,000	41,860,000	41,860,000	41,860,000	41,860,000	41,860,000	41,860,000	125,580,000
			3층	8	158,643,179	264,456,821	423,100,000	42,310,000	42,310,000	42,310,000	42,310,000	42,310,000	42,310,000	42,310,000	126,930,000
			4층	8	158,643,179	268,966,821	427,610,000	42,761,000	42,761,000	42,761,000	42,761,000	42,761,000	42,761,000	42,761,000	128,283,000
			5~9층	40	158,643,179	273,466,821	432,110,000	43,211,000	43,211,000	43,211,000	43,211,000	43,211,000	43,211,000	43,211,000	129,633,000
			10층 이상	108	158,643,179	277,966,821	436,610,000	43,661,000	43,661,000	43,661,000	43,661,000	43,661,000	43,661,000	43,661,000	130,983,000
84.9600A	201동 3호	25	1층	1	175,065,911	298,744,089	473,810,000	47,381,000	47,381,000	47,381,000	47,381,000	47,381,000	47,381,000	47,381,000	142,143,000
			2층	1	175,065,911	303,724,089	478,790,000	47,879,000	47,879,000	47,879,000	47,879,000	47,879,000	47,879,000	47,879,000	143,637,000
			3층	1	175,065,911	308,714,089	483,780,000	48,378,000	48,378,000	48,378,000	48,378,000	48,378,000	48,378,000	48,378,000	145,134,000
			4층	1	175,065,911	313,704,089	488,770,000	48,877,000	48,877,000	48,877,000	48,877,000	48,877,000	48,877,000	48,877,000	146,631,000
			5~9층	5	175,065,911	318,694,089	493,760,000	49,376,000	49,376,000	49,376,000	49,376,000	49,376,000	49,376,000	49,376,000	148,128,000
			10층 이상	16	175,065,911	323,674,089	498,740,000	49,874,000	49,874,000	49,874,000	49,874,000	49,874,000	49,874,000	49,874,000	149,622,000
84.9600A	202동 3호	23	3층	1	175,065,911	298,744,089	473,810,000	47,381,000	47,381,000	47,381,000	47,381,000	47,381,000	47,381,000	47,381,000	142,143,000
			4층	1	175,065,911	303,724,089	478,790,000	47,879,000	47,879,000	47,879,000	47,879,000	47,879,000	47,879,000	47,879,000	143,637,000
			5~9층	5	175,065,911	308,714,089	483,780,000	48,378,000	48,378,000	48,378,000	48,378,000	48,378,000	48,378,000	48,378,000	145,134,000
			10~16층	7	175,065,911	313,704,089	488,770,000	48,877,000	48,877,000	48,877,000	48,877,000	48,877,000	48,877,000	48,877,000	146,631,000
			17층	1	175,065,911	318,694,089	493,760,000	49,376,000	49,376,000	49,376,000	49,376,000	49,376,000	49,376,000	49,376,000	148,128,000
			18층 이상	8	175,065,911	323,674,089	498,740,000	49,874,000	49,874,000	49,874,000	49,874,000	49,874,000	49,874,000	49,874,000	149,622,000
84.9600A	203동 3호	23	3층	1	175,065,911	298,744,089	473,810,000	47,381,000	47,381,000	47,381,000	47,381,000	47,381,000	47,381,000	47,381,000	142,143,000
			4층	1	175,065,911	303,724,089	478,790,000	47,879,000	47,879,000	47,879,000	47,879,000	47,879,000	47,879,000	47,879,000	143,637,000
			5~9층	5	175,065,911	308,714,089	483,780,000	48,378,000	48,378,000	48,378,000	48,378,000	48,378,000	48,378,000	48,378,000	145,134,000
			10~15층	6	175,065,911	313,704,089	488,770,000	48,877,000	48,877,000	48,877,000	48,877,000	48,877,000	48,877,000	48,877,000	146,631,000
			16~18층	3	175,065,911	318,694,089	493,760,000	49,376,000	49,376,000	49,376,000	49,376,000	49,376,000	49,376,000	49,376,000	148,128,000
			19층 이상	7	175,065,911	323,674,089	498,740,000	49,874,000	49,874,000	49,874,000	49,874,000	49,874,000	49,874,000	49,874,000	149,622,000
84.9600A	204동 3호	22	3층	1	175,065,911	298,744,089	473,810,000	47,381,000	47,381,000	47,381,000	47,381,000	47,381,000	47,381,000	47,381,000	142,143,000
			4층	1	175,065,911	303,724,089	478,790,000	47,879,000	47,879,000	47,879,000	47,879,000	47,879,000	47,879,000	47,879,000	143,637,000
			5~9층	5	175,065,911	308,714,089	483,780,000	48,378,000	48,378,000	48,378,000	48,378,000	48,378,000	48,378,000	48,378,000	145,134,000
			10~13층	4	175,065,911	313,704,089	488,770,000	48,877,000	48,877,000	48,877,000	48,877,000	48,877,000	48,877,000	48,877,000	146,631,000
			14층	1	175,065,911	318,694,089	493,760,000	49,376,000	49,376,000	49,376,000	49,376,000	49,376,000	49,376,000	49,376,000	148,128,000
			15층 이상	10	175,065,911	323,674,089	498,740,000	49,874,000	49,874,000	49,874,000	49,874,000	49,874,000	49,874,000	49,874,000	149,622,000
84.9600A	207동 3호	21	3층	1	175,065,911	298,744,089	473,810,000	47,381,000	47,381,000	47,381,000	47,381,000	47,381,000	47,381,000	47,381,000	142,143,000
			4층	1	175,065,911	303,724,089	478,790,000	47,879,000	47,879,000	47,879,000	47,879,000	47,879,000	47,879,000	47,879,000	143,637,000
			5~9층	5	175,065,911	308,714,089	483,780,000	48,378,000	48,378,000	48,378,000	48,378,000	48,378,000	48,378,000	48,378,000	145,134,000
			10~12층	3	175,065,911	313,704,089	488,770,000	48,877,000	48,877,000	48,877,000	48,877,000	48,877,000	48,877,000	48,877,000	146,631,000
			13층	1	175,065,911	318,694,089	493,760,000	49,376,000	49,376,000	49,376,000	49,376,000	49,376,000	49,376,000	49,376,000	148,128,000
			14층 이상	10	175,065,911	323,674,089	498,740,000	49,874,000	49,874,000	49,874,000	49,874,000	49,874,000	49,874,000	49,874,000	149,622,000

주택형	동별 (라인별)	공급 세대수	층 구분	해당 세대수	대지비	건축비	공급금액	계약금 (10%)	중도금(60%)						잔금 (30%)	
									1차(10%)	2차(10%)	3차(10%)	4차(10%)	5차(10%)	6차(10%)		
									계약시	2021.07.19	2021.11.18	2022.04.18	2022.09.19	2023.02.20		2023.07.18
84.9600A	210동 3호	22	3층	1	175,065,911	298,744,089	473,810,000	47,381,000	47,381,000	47,381,000	47,381,000	47,381,000	47,381,000	47,381,000	142,143,000	
			4층	1	175,065,911	303,724,089	478,790,000	47,879,000	47,879,000	47,879,000	47,879,000	47,879,000	47,879,000	47,879,000	47,879,000	143,637,000
			5~9층	5	175,065,911	308,714,089	483,780,000	48,378,000	48,378,000	48,378,000	48,378,000	48,378,000	48,378,000	48,378,000	48,378,000	145,134,000
			10~15층	6	175,065,911	313,704,089	488,770,000	48,877,000	48,877,000	48,877,000	48,877,000	48,877,000	48,877,000	48,877,000	48,877,000	146,631,000
			16층	1	175,065,911	318,694,089	493,760,000	49,376,000	49,376,000	49,376,000	49,376,000	49,376,000	49,376,000	49,376,000	49,376,000	148,128,000
			17층 이상	8	175,065,911	323,674,089	498,740,000	49,874,000	49,874,000	49,874,000	49,874,000	49,874,000	49,874,000	49,874,000	49,874,000	149,622,000
84.9600A	211동 3호	23	3층	1	175,065,911	298,744,089	473,810,000	47,381,000	47,381,000	47,381,000	47,381,000	47,381,000	47,381,000	47,381,000	142,143,000	
			4층	1	175,065,911	308,714,089	483,780,000	48,378,000	48,378,000	48,378,000	48,378,000	48,378,000	48,378,000	48,378,000	145,134,000	
			5~9층	5	175,065,911	313,704,089	488,770,000	48,877,000	48,877,000	48,877,000	48,877,000	48,877,000	48,877,000	48,877,000	146,631,000	
			10~18층	9	175,065,911	318,694,089	493,760,000	49,376,000	49,376,000	49,376,000	49,376,000	49,376,000	49,376,000	49,376,000	49,376,000	148,128,000
			19층 이상	7	175,065,911	323,674,089	498,740,000	49,874,000	49,874,000	49,874,000	49,874,000	49,874,000	49,874,000	49,874,000	49,874,000	149,622,000
84.9600A	212동 3호	23	3층	1	175,065,911	298,744,089	473,810,000	47,381,000	47,381,000	47,381,000	47,381,000	47,381,000	47,381,000	47,381,000	142,143,000	
			4층	1	175,065,911	303,724,089	478,790,000	47,879,000	47,879,000	47,879,000	47,879,000	47,879,000	47,879,000	47,879,000	143,637,000	
			5~6층	2	175,065,911	308,714,089	483,780,000	48,378,000	48,378,000	48,378,000	48,378,000	48,378,000	48,378,000	48,378,000	145,134,000	
			7~9층	3	175,065,911	313,704,089	488,770,000	48,877,000	48,877,000	48,877,000	48,877,000	48,877,000	48,877,000	48,877,000	146,631,000	
			10~17층	8	175,065,911	318,694,089	493,760,000	49,376,000	49,376,000	49,376,000	49,376,000	49,376,000	49,376,000	49,376,000	148,128,000	
			18층 이상	8	175,065,911	323,674,089	498,740,000	49,874,000	49,874,000	49,874,000	49,874,000	49,874,000	49,874,000	49,874,000	49,874,000	149,622,000
84.9600A	213동 3호	25	1층	1	175,065,911	288,764,089	463,830,000	46,383,000	46,383,000	46,383,000	46,383,000	46,383,000	46,383,000	46,383,000	139,149,000	
			2층	1	175,065,911	293,754,089	468,820,000	46,882,000	46,882,000	46,882,000	46,882,000	46,882,000	46,882,000	46,882,000	140,646,000	
			3층	1	175,065,911	298,744,089	473,810,000	47,381,000	47,381,000	47,381,000	47,381,000	47,381,000	47,381,000	47,381,000	142,143,000	
			4층	1	175,065,911	303,724,089	478,790,000	47,879,000	47,879,000	47,879,000	47,879,000	47,879,000	47,879,000	47,879,000	143,637,000	
			5~9층	5	175,065,911	308,714,089	483,780,000	48,378,000	48,378,000	48,378,000	48,378,000	48,378,000	48,378,000	48,378,000	145,134,000	
			10~17층	8	175,065,911	313,704,089	488,770,000	48,877,000	48,877,000	48,877,000	48,877,000	48,877,000	48,877,000	48,877,000	146,631,000	
			18~19층	2	175,065,911	318,694,089	493,760,000	49,376,000	49,376,000	49,376,000	49,376,000	49,376,000	49,376,000	49,376,000	148,128,000	
			20층 이상	6	175,065,911	323,674,089	498,740,000	49,874,000	49,874,000	49,874,000	49,874,000	49,874,000	49,874,000	49,874,000	49,874,000	149,622,000
84.9800B	203동 1호	25	1층	1	175,107,123	285,352,877	460,460,000	46,046,000	46,046,000	46,046,000	46,046,000	46,046,000	46,046,000	46,046,000	138,138,000	
			2층	1	175,107,123	290,302,877	465,410,000	46,541,000	46,541,000	46,541,000	46,541,000	46,541,000	46,541,000	46,541,000	139,635,000	
			3층	1	175,107,123	295,252,877	470,360,000	47,036,000	47,036,000	47,036,000	47,036,000	47,036,000	47,036,000	47,036,000	141,132,000	
			4층	1	175,107,123	300,202,877	475,310,000	47,531,000	47,531,000	47,531,000	47,531,000	47,531,000	47,531,000	47,531,000	142,629,000	
			5~9층	5	175,107,123	305,152,877	480,260,000	48,026,000	48,026,000	48,026,000	48,026,000	48,026,000	48,026,000	48,026,000	144,126,000	
			10~16층	7	175,107,123	310,112,877	485,220,000	48,522,000	48,522,000	48,522,000	48,522,000	48,522,000	48,522,000	48,522,000	145,623,000	
			17층	1	175,107,123	315,062,877	490,170,000	49,017,000	49,017,000	49,017,000	49,017,000	49,017,000	49,017,000	49,017,000	147,120,000	
			18층 이상	8	175,107,123	320,012,877	495,120,000	49,512,000	49,512,000	49,512,000	49,512,000	49,512,000	49,512,000	49,512,000	148,617,000	
84.9800B	204동 1호	24	1층	1	175,107,123	285,352,877	460,460,000	46,046,000	46,046,000	46,046,000	46,046,000	46,046,000	46,046,000	46,046,000	138,138,000	
			2층	1	175,107,123	290,302,877	465,410,000	46,541,000	46,541,000	46,541,000	46,541,000	46,541,000	46,541,000	46,541,000	139,635,000	
			3층	1	175,107,123	295,252,877	470,360,000	47,036,000	47,036,000	47,036,000	47,036,000	47,036,000	47,036,000	47,036,000	141,132,000	
			4층	1	175,107,123	300,202,877	475,310,000	47,531,000	47,531,000	47,531,000	47,531,000	47,531,000	47,531,000	47,531,000	142,629,000	
			5~9층	5	175,107,123	305,152,877	480,260,000	48,026,000	48,026,000	48,026,000	48,026,000	48,026,000	48,026,000	48,026,000	144,126,000	
			10~13층	4	175,107,123	310,112,877	485,220,000	48,522,000	48,522,000	48,522,000	48,522,000	48,522,000	48,522,000	48,522,000	145,623,000	
			14~15층	2	175,107,123	315,062,877	490,170,000	49,017,000	49,017,000	49,017,000	49,017,000	49,017,000	49,017,000	49,017,000	147,120,000	
			16층 이상	9	175,107,123	320,012,877	495,120,000	49,512,000	49,512,000	49,512,000	49,512,000	49,512,000	49,512,000	49,512,000	49,512,000	148,617,000

주택형	동별 (라인별)	공급 세대수	층 구분	해당 세대수	대지비	건축비	공급금액	계약금 (10%)	중도금(60%)						잔금 (30%)	
									1차(10%)	2차(10%)	3차(10%)	4차(10%)	5차(10%)	6차(10%)		
									계약시	2021.07.19	2021.11.18	2022.04.18	2022.09.19	2023.02.20		2023.07.18
84.9800B	205동 1호/2호 209동 4호/5호	92	1층	4	175,107,123	295,252,877	470,360,000	47,036,000	47,036,000	47,036,000	47,036,000	47,036,000	47,036,000	47,036,000	141,108,000	
			2층	4	175,107,123	300,202,877	475,310,000	47,531,000	47,531,000	47,531,000	47,531,000	47,531,000	47,531,000	47,531,000	47,531,000	142,593,000
			3층	4	175,107,123	305,152,877	480,260,000	48,026,000	48,026,000	48,026,000	48,026,000	48,026,000	48,026,000	48,026,000	48,026,000	144,078,000
			4층	4	175,107,123	310,112,877	485,220,000	48,522,000	48,522,000	48,522,000	48,522,000	48,522,000	48,522,000	48,522,000	48,522,000	145,566,000
			5~9층	20	175,107,123	315,062,877	490,170,000	49,017,000	49,017,000	49,017,000	49,017,000	49,017,000	49,017,000	49,017,000	49,017,000	147,051,000
			10층 이상	56	175,107,123	320,012,877	495,120,000	49,512,000	49,512,000	49,512,000	49,512,000	49,512,000	49,512,000	49,512,000	49,512,000	148,536,000
84.9800B	207동 1호	23	1층	1	175,107,123	285,352,877	460,460,000	46,046,000	46,046,000	46,046,000	46,046,000	46,046,000	46,046,000	46,046,000	138,138,000	
			2층	1	175,107,123	290,302,877	465,410,000	46,541,000	46,541,000	46,541,000	46,541,000	46,541,000	46,541,000	46,541,000	139,623,000	
			3층	1	175,107,123	295,252,877	470,360,000	47,036,000	47,036,000	47,036,000	47,036,000	47,036,000	47,036,000	47,036,000	141,108,000	
			4층	1	175,107,123	300,202,877	475,310,000	47,531,000	47,531,000	47,531,000	47,531,000	47,531,000	47,531,000	47,531,000	142,593,000	
			5~9층	5	175,107,123	305,152,877	480,260,000	48,026,000	48,026,000	48,026,000	48,026,000	48,026,000	48,026,000	48,026,000	144,078,000	
			10~12층	3	175,107,123	310,112,877	485,220,000	48,522,000	48,522,000	48,522,000	48,522,000	48,522,000	48,522,000	48,522,000	145,566,000	
			13층	1	175,107,123	315,062,877	490,170,000	49,017,000	49,017,000	49,017,000	49,017,000	49,017,000	49,017,000	49,017,000	147,051,000	
			14층 이상	10	175,107,123	320,012,877	495,120,000	49,512,000	49,512,000	49,512,000	49,512,000	49,512,000	49,512,000	49,512,000	148,536,000	
84.9800C	205동 5호 206동 1호/4호 208동 1호/4호 209동 1호	134	1층	6	175,107,123	296,012,877	471,120,000	47,112,000	47,112,000	47,112,000	47,112,000	47,112,000	47,112,000	47,112,000	141,336,000	
			2층	6	175,107,123	300,972,877	476,080,000	47,608,000	47,608,000	47,608,000	47,608,000	47,608,000	47,608,000	47,608,000	142,824,000	
			3층	6	175,107,123	305,932,877	481,040,000	48,104,000	48,104,000	48,104,000	48,104,000	48,104,000	48,104,000	48,104,000	144,312,000	
			4층	6	175,107,123	310,892,877	486,000,000	48,600,000	48,600,000	48,600,000	48,600,000	48,600,000	48,600,000	48,600,000	145,800,000	
			5~9층	30	175,107,123	315,852,877	490,960,000	49,096,000	49,096,000	49,096,000	49,096,000	49,096,000	49,096,000	49,096,000	147,288,000	
			10층 이상	80	175,107,123	320,812,877	495,920,000	49,592,000	49,592,000	49,592,000	49,592,000	49,592,000	49,592,000	49,592,000	148,776,000	
84.9800D	201동 4호	25	1층	1	175,107,123	271,982,877	447,090,000	44,709,000	44,709,000	44,709,000	44,709,000	44,709,000	44,709,000	44,709,000	134,127,000	
			2층	1	175,107,123	276,942,877	452,050,000	45,205,000	45,205,000	45,205,000	45,205,000	45,205,000	45,205,000	45,205,000	135,615,000	
			3층	1	175,107,123	281,912,877	457,020,000	45,702,000	45,702,000	45,702,000	45,702,000	45,702,000	45,702,000	45,702,000	137,106,000	
			4층	1	175,107,123	286,882,877	461,990,000	46,199,000	46,199,000	46,199,000	46,199,000	46,199,000	46,199,000	46,199,000	138,597,000	
			5~9층	5	175,107,123	291,852,877	466,960,000	46,696,000	46,696,000	46,696,000	46,696,000	46,696,000	46,696,000	46,696,000	140,088,000	
			10~20층	11	175,107,123	296,812,877	471,920,000	47,192,000	47,192,000	47,192,000	47,192,000	47,192,000	47,192,000	47,192,000	141,576,000	
			21층 이상	5	175,107,123	301,782,877	476,890,000	47,689,000	47,689,000	47,689,000	47,689,000	47,689,000	47,689,000	47,689,000	143,067,000	
84.9800D	202동 4호	25	1층	1	175,107,123	267,012,877	442,120,000	44,212,000	44,212,000	44,212,000	44,212,000	44,212,000	44,212,000	44,212,000	132,636,000	
			2층	1	175,107,123	271,982,877	447,090,000	44,709,000	44,709,000	44,709,000	44,709,000	44,709,000	44,709,000	44,709,000	134,127,000	
			3층	1	175,107,123	276,942,877	452,050,000	45,205,000	45,205,000	45,205,000	45,205,000	45,205,000	45,205,000	45,205,000	135,615,000	
			4층	1	175,107,123	281,912,877	457,020,000	45,702,000	45,702,000	45,702,000	45,702,000	45,702,000	45,702,000	45,702,000	137,106,000	
			5~9층	5	175,107,123	286,882,877	461,990,000	46,199,000	46,199,000	46,199,000	46,199,000	46,199,000	46,199,000	46,199,000	138,597,000	
			10~19층	10	175,107,123	291,852,877	466,960,000	46,696,000	46,696,000	46,696,000	46,696,000	46,696,000	46,696,000	46,696,000	140,088,000	
			20층 이상	6	175,107,123	301,782,877	476,890,000	47,689,000	47,689,000	47,689,000	47,689,000	47,689,000	47,689,000	47,689,000	143,067,000	
			84.9800D	203동 2호	25	1층	1	175,107,123	267,012,877	442,120,000	44,212,000	44,212,000	44,212,000	44,212,000	44,212,000	44,212,000
2층	1	175,107,123	271,982,877			447,090,000	44,709,000	44,709,000	44,709,000	44,709,000	44,709,000	44,709,000	44,709,000	134,127,000		
3층	1	175,107,123	276,942,877			452,050,000	45,205,000	45,205,000	45,205,000	45,205,000	45,205,000	45,205,000	45,205,000	135,615,000		
4층	1	175,107,123	281,912,877			457,020,000	45,702,000	45,702,000	45,702,000	45,702,000	45,702,000	45,702,000	45,702,000	137,106,000		
5~7층	3	175,107,123	286,882,877			461,990,000	46,199,000	46,199,000	46,199,000	46,199,000	46,199,000	46,199,000	46,199,000	138,597,000		
8~9층	2	175,107,123	291,852,877			466,960,000	46,696,000	46,696,000	46,696,000	46,696,000	46,696,000	46,696,000	46,696,000	140,088,000		
10~20층	11	175,107,123	296,812,877			471,920,000	47,192,000	47,192,000	47,192,000	47,192,000	47,192,000	47,192,000	47,192,000	141,576,000		
21층 이상	5	175,107,123	301,782,877			476,890,000	47,689,000	47,689,000	47,689,000	47,689,000	47,689,000	47,689,000	47,689,000	143,067,000		

주택형	동별 (라인별)	공급 세대수	층 구분	해당 세대수	대지비	건축비	공급금액	계약금 (10%)	중도금(60%)						잔금 (30%)	
									1차(10%)	2차(10%)	3차(10%)	4차(10%)	5차(10%)	6차(10%)		
									계약시	2021.07.19	2021.11.18	2022.04.18	2022.09.19	2023.02.20		2023.07.18
84.9800D	204동 2호	24	1층	1	175,107,123	267,012,877	442,120,000	44,212,000	44,212,000	44,212,000	44,212,000	44,212,000	44,212,000	44,212,000	132,636,000	
			2층	1	175,107,123	271,982,877	447,090,000	44,709,000	44,709,000	44,709,000	44,709,000	44,709,000	44,709,000	44,709,000	44,709,000	134,127,000
			3층	1	175,107,123	276,942,877	452,050,000	45,205,000	45,205,000	45,205,000	45,205,000	45,205,000	45,205,000	45,205,000	45,205,000	135,615,000
			4층	1	175,107,123	281,912,877	457,020,000	45,702,000	45,702,000	45,702,000	45,702,000	45,702,000	45,702,000	45,702,000	45,702,000	137,106,000
			5~9층	5	175,107,123	286,882,877	461,990,000	46,199,000	46,199,000	46,199,000	46,199,000	46,199,000	46,199,000	46,199,000	46,199,000	138,597,000
			10~14층	5	175,107,123	291,852,877	466,960,000	46,696,000	46,696,000	46,696,000	46,696,000	46,696,000	46,696,000	46,696,000	46,696,000	140,088,000
			15~16층	2	175,107,123	296,812,877	471,920,000	47,192,000	47,192,000	47,192,000	47,192,000	47,192,000	47,192,000	47,192,000	47,192,000	141,576,000
84.9800D	207동 2호	23	1층	1	175,107,123	267,012,877	442,120,000	44,212,000	44,212,000	44,212,000	44,212,000	44,212,000	44,212,000	44,212,000	132,636,000	
			2층	1	175,107,123	271,982,877	447,090,000	44,709,000	44,709,000	44,709,000	44,709,000	44,709,000	44,709,000	44,709,000	134,127,000	
			3층	1	175,107,123	276,942,877	452,050,000	45,205,000	45,205,000	45,205,000	45,205,000	45,205,000	45,205,000	45,205,000	135,615,000	
			4층	1	175,107,123	281,912,877	457,020,000	45,702,000	45,702,000	45,702,000	45,702,000	45,702,000	45,702,000	45,702,000	137,106,000	
			5~9층	5	175,107,123	286,882,877	461,990,000	46,199,000	46,199,000	46,199,000	46,199,000	46,199,000	46,199,000	46,199,000	46,199,000	138,597,000
			10~14층	5	175,107,123	291,852,877	466,960,000	46,696,000	46,696,000	46,696,000	46,696,000	46,696,000	46,696,000	46,696,000	46,696,000	140,088,000
			15층 이상	1	175,107,123	296,812,877	471,920,000	47,192,000	47,192,000	47,192,000	47,192,000	47,192,000	47,192,000	47,192,000	47,192,000	141,576,000
84.9800D	210동 4호	24	1층	1	175,107,123	267,012,877	442,120,000	44,212,000	44,212,000	44,212,000	44,212,000	44,212,000	44,212,000	44,212,000	132,636,000	
			2층	1	175,107,123	271,982,877	447,090,000	44,709,000	44,709,000	44,709,000	44,709,000	44,709,000	44,709,000	44,709,000	134,127,000	
			3층	1	175,107,123	276,942,877	452,050,000	45,205,000	45,205,000	45,205,000	45,205,000	45,205,000	45,205,000	45,205,000	135,615,000	
			4층	1	175,107,123	281,912,877	457,020,000	45,702,000	45,702,000	45,702,000	45,702,000	45,702,000	45,702,000	45,702,000	137,106,000	
			5~9층	5	175,107,123	286,882,877	461,990,000	46,199,000	46,199,000	46,199,000	46,199,000	46,199,000	46,199,000	46,199,000	138,597,000	
			10~17층	8	175,107,123	291,852,877	466,960,000	46,696,000	46,696,000	46,696,000	46,696,000	46,696,000	46,696,000	46,696,000	46,696,000	140,088,000
			18층 이상	1	175,107,123	296,812,877	471,920,000	47,192,000	47,192,000	47,192,000	47,192,000	47,192,000	47,192,000	47,192,000	47,192,000	141,576,000
84.9800D	211동 4호	25	1층	1	175,107,123	267,012,877	442,120,000	44,212,000	44,212,000	44,212,000	44,212,000	44,212,000	44,212,000	44,212,000	132,636,000	
			2층	1	175,107,123	271,982,877	447,090,000	44,709,000	44,709,000	44,709,000	44,709,000	44,709,000	44,709,000	44,709,000	134,127,000	
			3층	1	175,107,123	276,942,877	452,050,000	45,205,000	45,205,000	45,205,000	45,205,000	45,205,000	45,205,000	45,205,000	135,615,000	
			4층	1	175,107,123	281,912,877	457,020,000	45,702,000	45,702,000	45,702,000	45,702,000	45,702,000	45,702,000	45,702,000	137,106,000	
			5~9층	5	175,107,123	291,852,877	466,960,000	46,696,000	46,696,000	46,696,000	46,696,000	46,696,000	46,696,000	46,696,000	46,696,000	140,088,000
			10~18층	9	175,107,123	296,812,877	471,920,000	47,192,000	47,192,000	47,192,000	47,192,000	47,192,000	47,192,000	47,192,000	47,192,000	141,576,000
			19층 이상	7	175,107,123	301,782,877	476,890,000	47,689,000	47,689,000	47,689,000	47,689,000	47,689,000	47,689,000	47,689,000	47,689,000	143,067,000
84.9800D	212동 4호	25	1층	1	175,107,123	267,012,877	442,120,000	44,212,000	44,212,000	44,212,000	44,212,000	44,212,000	44,212,000	44,212,000	132,636,000	
			2층	1	175,107,123	271,982,877	447,090,000	44,709,000	44,709,000	44,709,000	44,709,000	44,709,000	44,709,000	44,709,000	134,127,000	
			3층	1	175,107,123	276,942,877	452,050,000	45,205,000	45,205,000	45,205,000	45,205,000	45,205,000	45,205,000	45,205,000	135,615,000	
			4층	1	175,107,123	281,912,877	457,020,000	45,702,000	45,702,000	45,702,000	45,702,000	45,702,000	45,702,000	45,702,000	137,106,000	
			5~7층	3	175,107,123	286,882,877	461,990,000	46,199,000	46,199,000	46,199,000	46,199,000	46,199,000	46,199,000	46,199,000	46,199,000	138,597,000
			8~9층	2	175,107,123	291,852,877	466,960,000	46,696,000	46,696,000	46,696,000	46,696,000	46,696,000	46,696,000	46,696,000	46,696,000	140,088,000
			10~18층	9	175,107,123	296,812,877	471,920,000	47,192,000	47,192,000	47,192,000	47,192,000	47,192,000	47,192,000	47,192,000	47,192,000	141,576,000
19층 이상	7	175,107,123	301,782,877	476,890,000	47,689,000	47,689,000	47,689,000	47,689,000	47,689,000	47,689,000	47,689,000	47,689,000	143,067,000			

주택형	동별 (라인별)	공급 세대수	층 구분	해당 세대수	대지비	건축비	공급금액	계약금 (10%)	중도금(60%)						잔금 (30%)
									1차(10%)	2차(10%)	3차(10%)	4차(10%)	5차(10%)	6차(10%)	
									계약시	2021.07.19	2021.11.18	2022.04.18	2022.09.19	2023.02.20	
84.9800D	213동 4호	25	1층	1	175,107,123	267,012,877	442,120,000	44,212,000	44,212,000	44,212,000	44,212,000	44,212,000	44,212,000	44,212,000	132,636,000
			2층	1	175,107,123	271,982,877	447,090,000	44,709,000	44,709,000	44,709,000	44,709,000	44,709,000	44,709,000	44,709,000	134,127,000
			3층	1	175,107,123	276,942,877	452,050,000	45,205,000	45,205,000	45,205,000	45,205,000	45,205,000	45,205,000	45,205,000	135,615,000
			4층	1	175,107,123	281,912,877	457,020,000	45,702,000	45,702,000	45,702,000	45,702,000	45,702,000	45,702,000	45,702,000	137,106,000
			5~9층	5	175,107,123	286,882,877	461,990,000	46,199,000	46,199,000	46,199,000	46,199,000	46,199,000	46,199,000	46,199,000	138,597,000
			10~19층	10	175,107,123	291,852,877	466,960,000	46,696,000	46,696,000	46,696,000	46,696,000	46,696,000	46,696,000	46,696,000	140,088,000
			20~21층	2	175,107,123	296,812,877	471,920,000	47,192,000	47,192,000	47,192,000	47,192,000	47,192,000	47,192,000	47,192,000	141,576,000
22층 이상	4	175,107,123	301,782,877	476,890,000	47,689,000	47,689,000	47,689,000	47,689,000	47,689,000	47,689,000	47,689,000	143,067,000			

■ 공통 유의사항

■ 청약신청 및 계약 관련

- 본 주택에 대한 신청자격 등 판단 시 기준이 되는 면적은 주거전용면적이고, 연령조건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며, 거주지역은 주민등록표등본,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초본을 기준(말소사실이 있는 경우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으로 함. 또한, 당첨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소명기간 이내에 소명을 완료하여야만 계약체결이 가능함.
- 주택공급신청서 상 기재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반드시 확인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함.
- 동·호수에 따라 동일한 주택형이나 건본주택과 달리 평면이 좌우대칭이 될 수 있으니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 전 반드시 확인 바람.
- 동일한 주택형이라 하여도 주택형별 세부면적과 해당 동, 라인, 층은 상이 할 수 있으니, 입주자모집공고 내용 확인 후 청약 및 계약을 하시기 바람.
- 청약 및 계약 전에 사업부지 내·외 현장을 반드시 방문하시어 주변현황 및 현장여건, 주변개발, 조망권, 각종 공사로 인한 소음발생 여부 등을 확인하신 후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 하시기 바람,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신청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 하지 않으며, 청약신청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취소나 정정이 불가함.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관련 법령 및 공급계약 일반조항에 의거 해제 또는 해지 조치 됨.
- 청약신청 및 계약장소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시공업체, 부동산중개업자 등의 영업행위)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 분양사업자와 무관한 사항임.
- 본 아파트는 실입주자를 위하여 건립되는 것이므로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의 내용 변조 등의 행위로 주택공급질서를 어지럽힐 경우에는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됨.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 본 아파트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주택으로 상기 주택형별 공급금액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임.
- 본 아파트의 공급금액은 각 세대의 주택형별, 동별, 층별, 일조만족 수준 등의 다양한 조건들을 고려하여 책정한 금액으로 주택형별 공급가격의 상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상기 공급금액의 항목별 공시 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음.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전용면적, 주거공용면적 및 기타공용면적에 대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음.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공회 소유권 이전등기비용, 취득세가 미포함 되어있음.
- 상기 공급금액에는 발코니 확장비용 및 추가선택품목 금액이 포함되지 않은 금액이며, 발코니 확장 및 추가선택품목은 계약자가 선택하여 계약하는 사항으로 별도의 계약을 통한 선택이 가능함.
(단, 추가선택품목 계약체결 일정은 추후 별도 안내 예정임)
- 단지 내 근린생활시설(단지내 상가)은 상기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 공급금액 납부일정은 사전에 계약자 본인이 숙지하고 청약 및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본 아파트의 판매 시점에 따라 향후 분양조건이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추후 소급적용 및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입주금의 납부

- 공급금액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여야 하고, 잔금은 입주 전(세대 열쇠 불출 전)에 납부하여야 함. (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영업일을 기준으로 함)
- 중도금은 해당 주택의 건축공정이 아파트의 경우 전체 공사비(부지매입비를 제외)의 50% 이상이 투입되고, 동별 건축공정이 30% 이상인 때를 기준으로 전후 각 2회 이상 분할하여 받으며(기준시점 이전에는 중도금의 50%를 초과하여 받을 수 없음), 상기 중도금 납부 일자는 예정 일자이고 감리자의 건축공정 확인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음.
- 잔금은 사용검사일을 기준으로 납부하되, 동별 사용검사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입주금의 10%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은 입주일에 납부하고, 전체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잔금은 사용검사일을 기준으로 납부하여야 함. (소유권보존등기 및 대지권에 대한 등기는 공부정리 절차 등의 이유로 실 입주일과는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위 단서조항은 적용되지 아니함)
기타 입주금 납부와 관련해서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0조 및 관계법령에 따름.

II 특별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선정 방법

▣ 특별공급 신청자격별 · 주택형별 공급세대수

(단위 : 세대)

구분		59A	59B	59C	76A	76B	84A	84B	84C	84D	합계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장애인	경기도	4	1	5	3	4	5	3	3	6	34
		서울특별시	1	1	1	1	1	1	1	1	1	9
		인천광역시	1	1	1	1	1	1	1	1	1	9
	국가유공자 등		2	-	2	1	2	2	2	1	2	14
	장기복무 제대 군인		1	-	1	-	1	1	-	1	2	7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		7	1	7	6	7	8	7	5	9	57
	중소기업근로자		2	-	2	2	2	2	2	1	1	14
	소계		18	4	19	14	18	20	16	13	22	144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경기도 거주자(50%)		9	2	10	7	9	10	8	7	11	73
	서울시, 인천시 거주자(50%)		9	2	9	7	9	10	8	6	11	71
	소계		18	4	19	14	18	20	16	13	22	144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우선공급(75%)	27	7	29	22	27	31	24	20	33	220
		일반공급(25%)	9	2	9	7	9	10	8	6	11	71
	소계		36	9	38	29	36	41	32	26	44	291
생애최초 특별공급	경기도, 서울시, 인천시 거주자		12	3	13	10	12	14	11	9	15	99
노부모 부양자 특별공급	경기도, 서울시, 인천시 거주자		5	1	5	4	5	6	4	4	6	40
합계		89	21	94	71	89	101	79	65	109	718	

※주택형별 특별공급대상 세대수는 공급세대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배정 하였으며 배정호수가 없는 주택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음.

※2018.05.04. 및 2020.09.29.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75%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 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에게 우선공급하며, 나머지 주택(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은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20% 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30% 이하)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함.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방법이 "건본주택 방문 신청"에서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인터넷 청약신청'으로 변경되었으며, 특별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며 정보취약계층인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건본주택(10:00~14:00)에서 접수가 가능함. (은행창구 접수 불가)

▣ 특별공급 공통사항

구분	내 용
1회 한정/ 자격요건/ 자격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별공급 주택을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이 가능하고,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향후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신청 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제1호 및 제8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별공급 횟수 제한 제외)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요건, 청약자격 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함.
무주택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함.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주 한정) 중 1인만 신청 가능하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의 구성원(부부 포함)이 중복청약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람. [계약체결 불가, 부적격당첨자로 관리되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 (공급 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당첨 제한]

- 일반(기관추천) / 신혼부부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주 요건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세대원) 전원이 주택(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구성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및 제4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형제, 자매, 동거인 등은 청약자의 세대에 속한 자가 아님.
 ※배우자 분리세대인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및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을 포함함.
 ※'소형·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하지 않음.

• 특별공급에 청약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공급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단,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순위요건을 만족하였으나, 청약신청 전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청약이 불가함)
 - 기관추천(국가유공자 등, 장애인은 제외)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자
 ① 청약예금 :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 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단, 청약저축 및 청약부금 가입자 중 상기 청약예금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청약예금으로 통장을 변경한 자 포함)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 되고, 매월 약정 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85㎡ 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이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된 자 중,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납입인정금액이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자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 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단, 청약저축 및 청약부금 가입자 중 상기 청약예금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청약예금으로 통장을 변경한 자 포함)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 되고, 매월 약정 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 인정금액(85㎡ 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이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된 자 중,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납입인정금액이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단, 주택규모 선택 및 변경 절차 없이 예치금 잔액은 청약신청 당시 선택한 거주지(지역)를 기준으로 산정함)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

구분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그 밖의 광역시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전용면적 85㎡ 이하 (더샵 오포센트리체 전타입)	200만원	250만원	300만원

※작은 주택규모로 변경할 경우 지역별 청약 예치기준금액 충족 시 별도의 주택규모 변경 절차 없이 하위 면적 모두 청약 가능함.

중복청약 및 재당첨 제한
 ○ 특별공급 세대 내 1회 제한 기준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되면 당첨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람.
 • 특별공급 신청자가 일반공급에도 중복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에 당첨된 경우 일반공급 청약은 무효로 처리(특별공급에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에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에서 제외)하고, 특별공급 신청자가 타 유형의 특별공급에 중복청약 시 둘 다 무효처리 됨.
 •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신청할 수 없음.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 제1호, 제2호, 제3호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
 ※재당첨 제한 등 자세한 사항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 '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확인' 메뉴를 통해서 청약자 및 세대원 등 각각 조회해 보시기 바람.
 •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첨자로 봄. (1회 특별공급 간주)
 ○ 재당첨 제한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
 • 본 아파트 청약신청 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재당첨 제한)에 따른 기존주택 당첨 여부에 따라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게 되며,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포함)는 본 아파트 청약이 불가함.
 ※2020.4.16. 이전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신청하여 입주자를 모집한 경우, 재당첨 제한 적용 기간은 종전의 규정을 따르므로 과거 당첨된 주택의 재당첨 제한 기간은 당첨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문 또는 '청약홈' > '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확인' 메뉴를 통해 개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약자 및 세대원 전원)
 • 본 아파트는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으로서 당첨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 (*향후 다른 주택의 청약신청 시점의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재당첨 제한)의 개정(2020.4.17.)에 따라 당첨일로부터 7년간 재당첨 제한이 적용되며, 재당첨 제한 기간 내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하되,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은 제외)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으므로 신중히 확인하고 청약하시기 바람.
 (단, 향후 「주택법」 및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특별공급별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기준

1.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전용면적 85㎡이하 공급세대수의 10% 범위 / 대상세대 : 총 144세대)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해당하는 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특별공급 대상 해당기관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으신 분 (단, 거주요건 등 우선순위 기준은 해당기관장이 정하며,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는 제외함)
- 청약자격요건 : 청약통장 가입 기간 6개월 이상 경과 (신청 주택형의 지역별 /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단,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제외)
- 추천기관

추천기관	청약통장 구비여부
장애인(경기도 장애인복지과, 서울특별시 장애인자립지원과, 인천광역시 장애인복지과), 국가유공자 등(경기동부보호지청)	청약통장 필요 없음
장기복무 제대 군인(경기동부보호지청), 10년 이상 복무 중인 군인(국군복지단), 중소기업 근로자(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해당 요건을 갖춘 분

• 당첨자 선정방법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하여야 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함.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는 해당 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함. [미신청 시 당첨자 선정(동·호수 배정)에서 제외되며 계약 불가]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 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람.

2.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전체 공급세대수의 10% 범위 / 대상세대 : 총 144세대)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지역에 거주하는 민법상 미성년(만19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 (태아나 입양아를 포함)을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 청약자격요건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신청 주택형의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다거나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이 가능함.
 - 3명 이상의 자녀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등본 상 청약신청자와 세대를 달리하여 다른 지역에 거주할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 자녀 임을 입증해야 함.
 - 자녀수에는 태아나 입양 자녀도 포함되며 재혼으로 성이 다른 자녀를 부양하는 경우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자녀임을 입증해야 함.
 - 임신 중에 있는 태아나 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할 경우 출산 등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고, 입주 시까지 입양이 유지되어야 하며, 입주 전 불법 낙태 또는 파양한 경우에는 부적격 처리되어 당첨 취소 및 계약이 취소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제3항)
- ※이혼 및 재혼 자녀의 경우 청약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되어 있어야 함. 재혼 배우자의 친자녀(공급신청자의 친자녀가 아닌 자녀)는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된 경우만 해당됨.
- 지역우선 기준 및 당첨자 선정방법
 - 주택형별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50%를 경기도 거주자에게 우선공급(경쟁 시 경기도 광주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가 우선함)하며, 나머지 50%(우선공급에서 미달된 주택을 포함)는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거주자(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경기도 거주자 포함)에게 공급함.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배점기준표」에 의한 점수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되, 동일점수로 경쟁이 있을 경우 다음의 우선순위로 선정
 - ①미성년 자녀수(태아나 입양아 포함)가 많은 자
 - ②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 ※경기도 우선공급 물량에서 잔여 물량이 있을 경우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거주자 공급물량에 포함하며, 신청미달이 발생 되는 잔여 물량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5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함. (남는 주택이 있는 경우 일반공급 신청자에게 공급함)
 - ※경기도 거주자가 50% 우선공급(경쟁 시 경기도 광주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가 우선함)에서 낙첨될 경우, 나머지 50% 물량에서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거주자와 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경기도 거주자가 다시 경쟁하며 이 경우, 경기도 거주 신청자 우선공급 요건은 적용되지 않음.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람.
- 기타 본 공고문에 표기되지 않은 사항은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및 관련 법령에 따름.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배점기준표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운용지침」 [별표1]

평점요소	총 배점	배점 기준		비고
		기준	점수	
미성년 자녀수 (1)	40	미성년 자녀 5명 이상	40	• 자녀(태아, 입양아, 전혼자녀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만19세 미만)인 경우만 포함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
		미성년 자녀 4명	35	
		미성년 자녀 3명	30	
영유아 자녀수 (2)	15	자녀 중 영유아 3명 이상	15	• 영유아(태아, 입양아, 전혼자녀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인 자녀인 경우
		자녀 중 영유아 2명	10	
		자녀 중 영유아 1명	5	
		없음	0	
세대구성 (3) *중복선택불가	5	3세대 이상	5	•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 공급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자
		한부모 가족	5	
		해당 없음	0	
무주택기간 (4)	20	10년 이상	20	• 무주택기간은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과거 계속해서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분양권등 포함)하지 아니한 경우 • 배우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주택을 소유(분양권등 포함)하고 있지 않아야하며,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 청약자가 성년(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이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하되 청약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분양권등 포함)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분양권등 포함)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기간 산정
		5년 이상 ~ 10년 미만	15	
		1년 이상 ~ 5년 미만	10	
		1년 미만	0	
해당 시·도 거주기간 (5)	15	10년 이상	15	• 공급신청자가 성년자(만19세 이상)를 말하며,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자로 봄)로서 수도권(경기도·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으로 산정 *시는 광역시·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특별자치도 기준이며, 수도권의 경우 서울·경기·인천지역 전체를 해당 시·도로 봄
		5년 이상 ~ 10년 미만	10	
		1년 이상 ~ 5년 미만	5	
		1년 미만	0	
입주자저축가입기간 (6)	5	10년 이상	5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급신청자의 가입 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 산정 (※청약통장 정보 확인을 통하여 자동으로 입력되면 직접 선택은 불가)
		10년 미만	0	
계	100			

유의사항

- (1), (2)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 (이혼·재혼의 경우 자녀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경우(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도 포함)에 한함)
 ※단,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공급신청자의 친자녀가 아닌 자녀)는 주택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만 자녀수로 인정
 (3) : 한부모 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로 확인 (3), (4) : 주택소유 여부 판단 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를 적용
 (4), (5)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주민등록표초본으로 확인 (6) : 입주자저축 가입확인서로 확인
 ※동점자 처리 ①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 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재 내용을 검색 또는 확인 결과 평점 요소 자격이 다르거나 무주택기간 상이 및 유주택자 등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 당첨취소 및 계약해제 되므로 유의 바람.

※주민등록표초본 상 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시·도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

3. 신혼부부 특별공급 (전용면적 85㎡이하 공급세대수의 20% 범위 / 대상세대 : 총 291세대)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지역에 거주하고 혼인 기간이 7년(혼인신고일 기준, 재혼 포함) 이내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자
 -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로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 무주택자이어야 함.
 - 단, 2018.12.11. 전 기존주택을 처분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 2순위로 청약 가능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관한 특례)
 - ※전 배우자였던 동일인과의 재혼인 경우에는 이전 혼인 기간을 포함함.
- 청약자격요건 : 청약통장 가입 기간 6개월 이상 경과 (신청 주택형의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출산은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판단하며, 임신의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임신헌인서는 인정 안됨), 입양은 입양관계증명서의 입양신고일 기준으로 확인함.
 - 임신의 경우 계약서류 제출 시 출산 관련 자료(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임신지속 시 임신진단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임신, 불법 낙태의 경우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됨. (출산 관련 자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 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임신부부 또는 입양부부가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에게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까지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 제출을 요구하여 출산 여부 및 입양상태를 확인할 수 있음. 입양의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 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하고, 임신 부부의 임신상태가 입주지정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 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입주예정자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음.
 - 소득 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4명 이상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 기준의 120%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30% 이하)
- 우선공급 기준 및 당첨자 선정방법
 - 1)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75%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 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에게 우선 공급하며, 나머지 주택(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은 소득 기준을 완화하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기준의 120% 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30% 이하)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 함.
 - ※단,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의 120%(우선공급 대상자의 경우는 100%를 말함)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람.
 - 2) 우선공급(기준소득) 또는 일반공급(상위소득)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당첨자 선정방법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자녀 유무 등에 따라 순위제를 규정하며, 제1순위에 우선공급 함.
 - ① 제1순위 :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경우 포함)하여 미성년 자녀가 있는 자
[「민법」 제855조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외의 출생자(현재 혼인관계인 배우자와의 자녀를 혼인신고일 전에 출생신고한 경우를 말함)를 포함]
*재혼일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내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포함)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
 - ② 제2순위 : 1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무자녀 또는 2018.12.11. 전 기존주택을 처분하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신혼부부)
 - 3) 같은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당첨자 선정방법
 - 제1순위 또는 제2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대로 당첨자를 선정함.
 - ①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경기도 광주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 우선)
 - ②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많은 자
*재혼인 경우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 자녀(전혼 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신청자 또는 세대 분리된 재혼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되어야 함.
*재혼 배우자의 친자녀(전혼 배우자의 자녀)는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만 해당함.
 - ③ 미성년 자녀(태아 포함) 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된 자
- 기타 본 공고문에 표기되지 않은 사항은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및 관련 법령에 따름.

■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 기준** (2019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 / 통계청 자료)

공급유형		월평균 소득기준	2019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신혼부부 우선공급 (기준소득, 75%)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00% 이하	5,554,983원	6,226,342원	6,938,354원	7,594,083원	8,249,812원	8,905,541원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6,665,980원	7,471,610원	8,326,025원	9,112,900원	9,899,774원	10,686,649원
신혼부부 일반공급 (상위소득, 25%)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00%초과~120%이하	5,554,984원 ~ 6,665,980원	6,226,343원 ~ 7,471,610원	6,938,355원 ~ 8,326,025원	7,594,084원 ~ 9,112,900원	8,249,813원 ~ 9,899,774원	8,905,542원 ~ 10,686,649원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초과~130%이하	6,665,981원 ~ 7,221,478원	7,471,611원 ~ 8,094,245원	8,326,026원 ~ 9,019,860원	9,112,901원 ~ 9,872,308원	9,899,775원 ~ 10,724,756원	10,686,650원 ~ 11,577,203원

- 기준소득 :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부부 중 1인 소득이 월평균 소득기준 100% 초과 시 일반공급 25%(상위소득)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월평균 소득기준 120% 초과~130% 이하)]을 선택하여야 함.
- 상위소득 :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655,729) * (N-8)} ※N : 9인 이상 가구원수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공급신청자 및 성년인자(만19세 이상)의 합산 소득임.
 (단, 세대원의 실종·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함)
 ※가구원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 만큼 가구원수로 인정)
 ※월평균소득은 연간소득÷근무월수를 말하며, 연간소득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총급여액(21번) 및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상의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며, 근무월수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를,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상의 기간을 기준으로 함.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해당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 : 전년도 1월 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소득을 동 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하므로 전년도 1월 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기타 유의사항

- 군복무 중이어서 건강(의료)보험증이 없는 경우: 입대확인서(재직증명서)와 의료보험 자격득실 확인서를 징구하고 이 경우 군복무자(직업군인 제외)는 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군복무자의 배우자의 소득을 파악하여 월평균 소득을 산정함.
- 종교기관(교회,사찰 등)이 신청인 앞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 소득 신고의무 및 국민연금 가입의무가 없는 자로서 종교기관이 신청자 앞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는 대표자가 무보수임을 증명할 수 있는 정관 등을 첨부하여 소득증빙자료로 준용함.
- 직업이 프리랜서이고 소득이 불규칙한 경우 :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람인 경우에는 소득금액증명으로 소득을 확인하고, 신고하지 않은 사람의 경우에는 계약서상의 계약금액으로 월평균 소득을 산정함.
- 유자녀 부부로 청약하려는 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출생하였으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출생신고를 한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여 출생자녀가 부부사이의 자녀로 인정되는 경우 청약자격을 인정함.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해당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 전년도 1월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동 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 소득을 산정함.
- 자영업자이면서 근로자인 경우: 전년도 사업소득에 대한 월평균 소득과 근로소득에 대한 월평균소득을 각각 산정하여 합산하되, 사업소득이 손실로 되어 있으면 사업소득은 없는 것으로 하여 근로소득만으로 월평균 소득을 산정함.
- 전년도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인 경우 : 전년도 정상적인 소득과 근무개월수 및 출산휴가 기간을 합산하여 전년도 월평균 소득을 산정함.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급신청자는 전년도 계속하여 직장에 근무, 공급신청자의 배우자는 금년도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 우선공급 및 일반공급의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 신청하시기 바람
- 금년도에 개업한 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 등 소득증빙이 불가능한 경우: 국민연금보험 가입된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상 기준소득월액 또는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시기에 신고한 부가가치세 신고서상의 금액 및 사업기간을 확인하여 월평균 소득을 산정(부가가치세 신고서 상 세율 전 '매출액 합계-매입액 합계')
 ※부가가치세 등 해당 서류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사업주체의 서류심사기간(소명자료 제출기간) 내에 국민연금을 가입하여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상 기준소득월액으로 월평균소득을 산정.
- 분양권 전매 요청 시 입양자격이 유지(또는 출산)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입양자격이 유지되고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만 분양권 전매요청을 접수함.

4. 생애최초 특별공급 (전체 공급세대수의 7% 범위 / 대상세대 : 총 99세대)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3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지역에 거주하면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생애최초(세대에 속한 모든 세대원은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하며, 배우자가 결혼 전 주택소유 사실이 있는 경우도 청약 불가)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로서 다음의 요건과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제8조에서 정한 소득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청약자격
 -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른 민영주택의 일반공급 1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주**(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 내 주택)인 자
 - ※본 아파트는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아래 일반공급 1순위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함.
 - ① 청약통장에 가입하여 2년이 지난 자로서 신청 주택형의 지역별/면적별 예치기준금액 이상 납입 했을 것
 - ② 세대주일 것
 - ③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는 예외적으로 무주택에 해당되나, '소형-저가주택등'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함. (※다른 유형의 특별공급도 동일 적용)
 - 2)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재혼 포함)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입양 포함, 혼인 중이 아닌 경우에는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올라 있는 자녀를 말함)가 있는 자
 - 3) 소득세 납부 기준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과거 1년 내에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소득세를 납부한 사실이 있는 자를 포함)로서 통산하여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이 경우 해당 소득세 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함)
 - 4)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 기준[아래표]의 130% 이하인 자
 -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가구원수에 포함함.
- 당첨자 선정기준
 - ①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우선 (경기도 광주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 우선)
 - ②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으로 선정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람.
- 기타 본 공고문에 표기되지 않은 사항은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및 관련 법령에 따름.

■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세 납부 기준 (*자세한 소득세납부 확인(입증)서류 안내는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및 소득세 납부 입증 제출서류] 참조)

구분(청약신청자 기준)		소득세납부 기준
근로자 및 자영업자	① 과거 5개년도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자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5년 이상 소득세 납부실적은 청약자 본인이 납부한 경우만 인정하며, 그 배우자 또는 세대원의 납부실적은 인정되지 않음. ※해당연도의 소득세 납부 및 1년 기간 동안 12개월 이하로 근무하여 납부한 경우도 1개년의 실적으로 인정함. ※청약자 본인은 소득이 없고, 배우자는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배우자가 소득세를 납부한 기한은 인정되지 않음.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자	① 1년 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자 ② 과거 5개년도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자	

*소득세 :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또는 제20조(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함.
 *5개년도 소득세 납부실적 중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이 포함된 분은 소득금액증명의 총결정세액이 "0"원 초과일 경우 해당년도 납부(세)사실증명도 함께 제출

■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 기준 (2019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 / 통계청 자료)

구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기준	2019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통계청]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기준	130% 이하	7,221,478원	8,094,245원	9,019,860원	9,872,308원	10,724,756원	11,577,203원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655,729) * (N-8)}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공급신청자 및 세대에 속한 세대원(성년인자(만19세 이상))의 합산 소득임.
 (단, 세대원의 실종·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함)
 ※월평균소득은 연간소득÷근무월수를 말하며, 연간소득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 총급여액(21번) 및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상의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 상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며, 근무월수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를,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을 기준으로 함.
 ※가구원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가구원수로 포함되지 않음)

5.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전체 공급세대수의 3% 범위 / 대상세대 : 총 40세대)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지역에 거주하면서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여야 함)
- 청약자격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른 일반공급 1순위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 ※본 아파트는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아래 일반공급 1순위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함.
 - ①청약통장에 가입하여 2년이 지난 자로서 신청 주택형의 지역별/면적별 예치기준금액 이상 납입 했을 것
 - ②세대주일 것
 - ③과거 5년 이내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무주택세대구성원(※피부양 직계존속 및 그 배우자도 무주택)으로서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 피부양자(노부모) 및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함.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 따라 피부양자(노부모)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에서 제외)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여야 함.
 -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피부양자의 배우자 포함)이 주택 또는 '보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의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6호 미적용)
 - '소형·저가주택등'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함. (※다른 유형의 특별공급도 동일 적용)
- 당첨자 선정방법
 - 경쟁이 있을 경우 다음의 순서로 당첨자를 선정함.
 - ①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가 우선 (경기도 광주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 우선)
 - ②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제2항에 따라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가점제를 적용하되, 동점일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에 따름.
 - *가점제 적용은 신청자 본인이 작성한 '청약가점 산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 청약가점 점수를 우선순위로 당첨자를 선정함.
 - *신청자 본인이 직접 입력한 청약가점의 점수가 본인의 기재 오류에 의한 잘못으로 판명될 경우 당첨이 취소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음.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람.
 - 기타 본 공고문에 표기되지 않은 사항은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및 관련 법령에 따름.

III 일반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선정 방법

■ 일반공급 신청자격 및 유의사항

구분	내용
신청자격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지역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 부양)중 입주자저축 순위별 자격요건을 갖춘 자 [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은 세대요건을 갖춘 자에 한해 1.2순위 청약이 가능하며,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인 1순위 청약이 불가하며, 2순위 청약이 가능함.] ※단, 청약신청자 중 같은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경기도 광주시)에 1년 이상 계속 거주(외국에 거주한 기간 제외)한 신청자가 경기도 광주시 1년 미만 거주자 및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지역 거주자보다 우선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4항에 의거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인정됨. 다만,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에서 건설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아닌 기타지역 거주자로 인정됨. [본 주택의 해당순위(1순위 및 2순위) 요건 충족 시 청약 가능] • 1순위 신청은 세대주만 가능하므로 세대주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국내 거주 외국인 등은 1순위 청약이 불가함.
청약신청 및 당첨자선정 시 유의사항	<p>○청약신청 접수 시 유의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기준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이며, 면적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하며 거주지역 및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등·초본'을 기준으로 함. • 1순위 해당지역 거주자 자격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경기도 광주시에서 1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자 • 본 주택은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으로, 재당첨제한(규칙 제3조제2항제1호·2호·4호·6호·제7호가목(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으로 한정) 및 같은 항 제8호의 주택, 제47조에 따라 이전기관 종사자 등에 특별공급되는 주택,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토지임대주택,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에서 당첨된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배우자 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는 기 분양주택의 당첨 여부에 따라 본 주택의 청약이 제한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 전 반드시 '청약Home'에서 청약제한사항 조회 요망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 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확인) - 주택소유 및 당첨 사실 판단대상 : 청약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포함), 청약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같은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및 직계비속 등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에서 정하는 세대원 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단, 만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분양권등' 포함)은 신청자격 판단 시 무주택으로 인정 • 신청접수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중복신청이 불가(1인 1건만 신청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청약 모두를 무효 처리됨.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안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세대주 자격을 갖춘 청약자(배우자 분리된 세대의 세대주)가 각각 청약하여 당첨되는 경우,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주택은 둘다 부적격(제당첨 제한), 당첨자 발표일이 다른 경우 선당첨 인정, 후당첨 부적격(제당첨 제한)으로 처리되오니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람.

○청약과열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1순위 요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1항다목에 의거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만 1순위 청약이 가능함.

- ① 청약통장에 가입하여 2년이 지난 자로서 지역/면적별 예치기준금액을 납입 할 것
- ② 세대주일 것
- ③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 ④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당첨자선정 시 유의사항

- 청약접수 일자과 관계없이 당첨자 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주택의 당첨은 자동 취소됨. (각각 동일한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경우에 한함)
- 본 아파트에 청약신청하여 당첨된 자는 계약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전산관리되며, 당첨된 청약통장은 재사용이 불가함.
- 부적격당첨으로 통보받은 자 중 소명기간 내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된 경우,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1년, 수도권 외의 지역 6개월(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은 1년), 위촉지역 3개월 (공급 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으니, 향후 다른 주택청약 시 제한사항을 미리 확인하시기 바람.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제 또는 해지 조치하며, 관계 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음.
- 청약자격 제한조건을 확인하여 향후 부적격당첨 등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람.

○청약통장 관련 기준사항

※아래 기준사항 외 공통으로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청약통장 순위별 가입기간 충족 필요

- (단,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순위요건을 만족하였으나, 청약신청 전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청약이 불가함)
- 청약통장 예치금 기준(주택청약종합저축)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당일까지 예치기준금액 충족 시 청약신청 가능
-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 기준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신청 가능
- 청약예금의 신청 가능 주택규모(전용면적 기준) 변경 시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신청 가능
- (단, 해당 주택규모 구간의 청약예치기준금액 충족 시 별도의 주택규모 변경 절차 없이 하위면적 청약 가능)
- 청약예금 지역 간 예치금액 차액 충족 기준 : 청약접수 당일 청약신청 전까지 충족 시 청약신청 가능 (단, 동일 주택규모)
 - 청약예금 가입자 중 예치금액이 작은 지역에서 큰 지역으로 거주지를 이전한 자는 신청일 현재 변경된 거주지역에 해당하는 청약예금 예치금액으로 증액하여야 청약이 가능함.
 - (단, 차액을 감액하는 경우 또는 수도권 지역 거주자가 거주지 변경 없이 가입한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청약신청할 경우에는 지역 간 예치금액 변경 없이 청약 가능)
- 기타)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자 명의변경 등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2조)
 -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자 명의는 가입자가 사망하여 그 상속인 명의로 변경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할 수 없음.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2조제3항에 따라 입주자저축의 가입자 명의를 변경하려는 자는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입주자저축취급기관에 신청하여야 함.

○기타 유의사항

- '청약통장 가입은행의 공동인증서' 및 '네이버인증서'를 신청접수 이전에 미리 발급받아야 함.
- 주택공급 신청서의 단말기 (전산)인자란의 인자된 내용과 주택공급신청내용을 반드시 본인이 확인하여야 하며, 동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 신청(영업점 운영시간 내)을 하여야 함.
- 청약신청 시 은행에서는 청약신청자의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없이 주택공급신청서에 기재한 내용으로만 청약접수를 받으므로 청약자는 본인의 청약자격(거주지역, 거주개시일,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주택소유여부 등)을 신청 전 확인하여 청약하시기 바람.
- 청약신청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여야 함.
- 청약신청은 청약자 본인의 책임하에 이루어지므로 청약자격 착오, 오기 기재 등으로 부적격자로 판정되어 계약체결이 불가하거나, 계약이 취소될 경우 사업주체 및 접수은행에서는 책임지지 않음.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취소 및 부적격 결과에 대해서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으며, 당첨 취소세대는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함.
 - 2019.12.0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함.
 - ※신청한 가점접수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재산정한 가점점수가 다음 순위 예비입주자의 점수 이상인 경우에만 인정됨. (다음 순위의 예비입주자 점수와 비교하여 더 낮은 경우에는 예비입주자 선정이 취소됨)
- 주민등록표초본 상 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시도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함.
- 층별, 동별, 호별 등 구분 없이 주택형별, 청약 순위별로 접수하고, 선순위 청약접수 결과 일반공급 세대수를 초과하더라도 예비당첨자 선정비율(일반공급 세대수의 300%)에 미달할 경우 차순위 접수를 받을 수 있으므로 청약신청 전 청약경쟁률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단, 2순위까지 청약접수 결과 신청자 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400%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더이상 접수 불가)
-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운영하는 '청약가상체험' 및 '모집공고단지 청약연습'을 활용하시기 바람.

■ 순위별 자격요건

거주 구분	순위	주택형	공급 방법	청약 관련 신청자격	
경기도 광주시 / 수도권 (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1순위	전용 85㎡ 이하	가점제 75% 추첨제 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자는 가점제/추첨제 선택 청약이 불가하며,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분류됨. (※가점제 낙첨자는 추첨제 대상자로 자동 전환됨) 1) 가점제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 [청약자 본인 및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포함)]에 속한 세대주 2) 추첨제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주택을 소유한 세대 [청약자 본인 및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포함)]에 속한 세대주 *민영주택 추첨제 공급 시 무주택자 우선공급 :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주택수보다 추첨 대상자가 많은 경우, 다음 순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되는 주택수의 75% : 무주택세대구성원 2. 나머지 25%의 주택(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 포함) :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기존 소유주택 처분조건을 승낙한 자로 한정)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공급한 후 남은 주택 : 1순위에 해당하는 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 *1주택('분양권등' 제외)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가 우선 공급받으려는 경우 (※'1'분양권등' 소유 시 기존 소유 1주택 처분조건 승낙(서약) 불가)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공급받은 주택의 입주 이전에 기존주택의 소유권 처분조건을 승낙하여야 하며, ② 입주예정일 이전에 기존주택의 소유권 처분계약에 관하여 신고하거나 검인을 받아야 하고, ③ 입주 가능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주택의 소유권 처분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②에 따라 신고하거나 검인받지 않은 경우 입주할 수 없으며, ③에 따라 처분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공급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만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은 신청자격 판단 시 무주택으로 인정되나, 부양가족수에는 제외(직계존속의 배우자 포함)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의 입주자저축 자격요건을 갖춘 자 (단,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순위요건을 만족하였으나, 청약신청 전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청약이 불가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 되고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 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납입하여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전용면적 85㎡이하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 되고 현재 잔액 기준 범위 내에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각 주택형의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 되고 현재 잔액 기준이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청약제한 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순위자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당 주택에 1순위 청약 불가 (2순위로 청약 가능)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세대주가 아닌 자 ②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 (전지역 해당, 모든 청약 대상자) ③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제19조제4항에 의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지역(경기도 광주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에 거주하는 청약신청자에게 우선 공급하며, 1순위 청약 접수일을 '해당지역'과 '기타지역'으로 분리하여 접수하오니, 청약신청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주민등록표등·초본 상 거주지역 및 거주기간을 명확히 확인 후 신청하여 거주지역 및 거주기간 오류로 인한 부적격 처리, 당첨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람.	
	2순위	전주택형	추첨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경기도 및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성년자 • 상기 1순위에 해당하지 않은 자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금, 청약부금 포함)에 가입한 자 (※예치금액 무관) 	
		청약제한 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의거 과거 당첨 사실로 인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속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전원)는 2순위 청약 불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순위요건을 만족하였으나, 청약신청 전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청약이 불가함.

■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9조제3항 관련 [별표2]

구분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그 밖의 광역시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전용면적 85㎡ 이하 (더샵 오포센트리체 전타입)	200만원	250만원	300만원

※작은 주택규모로 변경할 경우 지역별 청약 예치기준금액 충족 시 별도의 주택규모 변경 절차 없이 하위면적 모두 청약 가능함.

■ 청약 가점제 항목별 적용 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 제1호]

구분	적용기준
<p>① 무주택기간 적용기준</p>	<p>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 모두 주택('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2)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전용면적 60㎡이하의 주택('분양권등' 포함)으로서, 주택공시가격이 수도권은 1억3천만원 이하, 비수도권은 8천만원 이하인 '소형·저가주택등'의 가격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함.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을 말함)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름. 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다) 분양권등의 경우 :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 3) 무주택기간은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주택공급신청자의 연령이 만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만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 함. 이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함.</p>
<p>② 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p>	<p>1)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세대원[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미혼인 자녀로 한정하며,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미혼의 손자녀 포함)]으로 함. 다만,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세대주)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부양가족으로 봄. 2) 배우자(세대분리 배우자 포함) : 외국인 배우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 배우자로 확인되면 국내 외 거주와 상관없이 부양가족으로 인정 3) 무주택 직계존속(부모·조부모,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①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신청자가 세대주(분리된 배우자가 직계존속 부양 시 배우자도 세대주)로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되어 있는 무주택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함. ②단,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직계존속 및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으로 인정 불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따라 부양가족을 산정 시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6호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 ③배우자 분리세대인 경우 청약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과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을 합쳐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등재 시 부양가족 인정 (예: 청약신청자 주민등록표등본에 1년 등재 + 계속하여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2년 등재 시 부양가족 인정) ④청약신청자가 주민등록표등본에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다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로 변경한 경우에도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등재 시 부양가족 인정 ⑤외국인 직계존속은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내국인 직계존속이라도 요양시설(「주민등록법」 제12조에 따라 주민등록을 하는 노인요양시설을 말함) 및 해외에 체류 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 경우 부양가족 인정 불가 ⑥직계존속의 판단은 가족관계증명서를 근거로 하며, 생모라 하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가족관계증명서에 등재되어 있지 않다면 직계존속 인정 불가. 4) 직계비속(자녀·손자녀) ①미혼인 자녀로 한정하며,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미혼의 손자녀를 포함함. ②만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청약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부양가족으로 인정 ③재혼한 경우 재혼 배우자의 자녀는 청약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야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며, 이혼한 자녀는 기혼자이므로 제외 ④외국인 직계비속은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내국인 직계비속이라도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에는 부양가족 인정 불가 - (만30세 미만 직계비속)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만30세 이상 직계비속)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p>
<p>③ 입주자저축 가입기간</p>	<p>1) 입주자저축 가입 기간에 대한 가점점수는 청약신청 시 자동 부여됨. 2)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가입 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 최초가입일을 기준으로 가입 기간을 산정함.</p>

※①무주택기간 적용기준 및 ②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에 따라 주택소유 여부를 판정하거나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53조에 따름.

■ 청약 가점점수 산정 기준표 (일반공급 및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가점항목	가점 상한	가점 구분	점수	가점 구분	점수	확인할 서류 등
① 무주택기간	32	만30세 미만 미혼자 또는 유주택자	0	8년 이상 ~ 9년 미만	18	- 무주택자에 한함 -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분리세대 시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등본 등 - 가족관계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 만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일 확인
		1년 미만 (무주택자에 한함)	2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1년 이상 ~ 2년 미만	4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2년 이상 ~ 3년 미만	6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3년 이상 ~ 4년 미만	8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	
② 부양가족수	35	0명	5	4명	25	- 주민등록표등·초본 ※청약신청자 본인은 부양가족수에서 제외 - 가족관계증명서 - 출입국사실증명서(배우자 제외) - 만18세 이상 미혼자녀 부양가족 인정 필요 시 추가 확인서류 (1)만18세 이상~만30세 미만 : 자녀의 혼인관계증명서 (2)만30세 이상 : 자녀의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
		1명	10	5명	30	
		2명	15	6명 이상	35	
		3명	20			
③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17	6개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 청약통장 (인터넷 청약 시에 자동 계산)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1년 이상 ~ 2년 미만	3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2년 이상 ~ 3년 미만	4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	
		3년 이상 ~ 4년 미만	5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	
		4년 이상 ~ 5년 미만	6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	
		5년 이상 ~ 6년 미만	7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 ~ 8년 미만	9					
총점	84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②+③

※만60세 이상 직계존속 소유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6호에 따라 신청자격 판단 시 무주택으로 인정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제외)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6항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호 또는 1세대의 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와 과거 2년 이내에 가점제를 적용받아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제1순위에서 가점제의 적용 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추첨제 적용 대상자에 포함됨.

■ 주택소유에 관한 유의사항

- 1) 건물의 용도는 공부상 표시된 용도를 기준으로 함.
- 2) 주택은 전국에 소재하는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공급신청자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포함됨.
- 3) 주택매매 등 처분 사실은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등기접수일(미등기주택은 건축물대장등본 상 처리일) 기준임.
- 4) 주택 또는 분양권등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봄.
- 5) 주택소유 여부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판명내용이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사업주체가 소명 요청을 통보한 날로부터 7일) 내에 아래 '주택소유 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 기준'을 참고하시어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

■ 주택소유 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 기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 검색대상 :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
-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등본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등'
- 주택처분 기준일 (아래의 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등기사항증명서 :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2의2.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2의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의2다목에 따른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가. '분양권등'의 매매 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나. '분양권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3. 그밖에 주택소유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등'에 관한 적용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부칙<국토교통부령 제565호, 2018.12.11.> 제3조)

· '분양권등' 신규 계약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및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분 주택에 대한 '분양권등'을 갖고 있거나 분양권등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공급계약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

(*주택형별로 경쟁이 발생하지 않은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는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봄)

· '분양권등' 매수자(2018.12.10 이전 공급분 포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하여 '매매대금 완납일'(실거래 신고서상) 기준 주택소유로 봄.

■ **주택소유로 보지 않는 경우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제외함.
6.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단,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자 제외)
 - 가점제의 부양가족 인정 여부 판단 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함.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 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 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중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함.
9. '소형.저가주택등'을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으로서 제28조에 따라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10.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

■ **'소형.저가주택등'을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경우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가목2**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전용면적 60㎡ 이하이며, 공시가격이 수도권 1억 3천만원(비수도권 8천만원) 이하인 1주택('소형.저가주택등' 및 '분양권등')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의한 민영주택의 일반공급 시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자에 한 해 '소형.저가주택등' 보유 기간을 무주택기간으로 인정함.
 - 현재 '소형.저가주택등' 소유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소형.저가주택등'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경우
 - 현재 무주택자 : 중전에 '소형.저가주택등'을 처분한 후 계속 무주택자로 있는 경우 → 해당 '소형.저가주택등'의 보유 기간도 무주택으로 간주함.
- '소형.저가주택등'의 가격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함.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 또는 제18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을 말함)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을 따름.
 - 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 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 다) '분양권등'의 경우 :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한다)

■ **부적격 당첨자에 대한 명단관리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 사업주체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제3항 및 제57조제8항에 따른 부적격 당첨자가 소명기간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고 규칙 제58조제4항에도 해당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명단을 전산관리지정기관에 통보하여야 함.
- 전산관리지정기관은 제58조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자의 명단을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하는 등 전산관리하고, 규칙 제57조제7항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전산검색결과를 통보할 때 규칙 제58조제3항에 해당하는 지를 표시하여 통보하여야 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제1항에 따라 당첨이 취소된 자는 공급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당첨일부터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역에서 해당 호에서 정한 기간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1. 수도권 : 1년

2. 수도권 외의 지역 : 6개월(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은 1년)
 3. 제1호 및 제2호의 지역 중 위축지역 3개월
- 사업주체는 부적격 당첨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규칙 제5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첨자로 봄. 다만, 규칙 제57조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1. 같은 순위(「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른 순위를 말함)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2.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규칙 제52조제3항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순차별로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
- ※부적격 당첨자는 계약기간 중 건본주택에 방문하여 부적격당첨 사유가 고의성 없는 단순 착오 기재가 사실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사업주체에 제출하고 '당첨사실 삭제 및 계좌부활요청서'(건본주택 비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만 전산관리지정기관에 부적격 당첨자명단 통보가 가능함.

IV 신청일정 및 장소, 구비서류, 입주자 선정방법

▣ 신청일정 및 방법

구분	신청대상자	신청일시	신청방법	신청장소
특별공급	일반(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생애최초, 노부모부양	2021.02.18(목)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08:00~17:30) (건본주택 : 10:00~14:00)	• 인터넷 청약 (PC 또는 스마트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및 애플앱스토어 '청약홈' 검색 • 건본주택 (※고령자, 장애인 한정) • 은행창구 접수 불가
일반공급	1순위 (해당지역)	2021.02.19(금) 08:00~17:30	• 인터넷 청약 (PC 또는 스마트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및 애플앱스토어 '청약홈' 검색 • 청약통장 은행 창구
	1순위 (기타지역)	2021.02.22(월) 08:00~17:30		
	2순위	2021.02.23(화) 08:00~17:30		

청약신청 시 유의사항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제19조제4항에 의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지역(경기도 광주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에 거주하는 청약신청자에게 우선 공급하며, 1순위 청약 접수일을 '해당지역'과 '기타지역'으로 분리하여 접수하오니, 청약신청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주민등록표등·초본 상 거주지역 및 거주기간을 명확히 확인 후 신청하여 거주지역 오류로 인한 부적격 처리, 당첨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지역 거주자(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경기도 광주시 1년 미만 거주자 및 기타 경기도, 수도권 거주자)가 해당지역으로 신청하여 당첨 시 부적격 처리되오니, 청약신청자의 거주지역에 따른 1순위(해당지역, 기타지역) 청약 접수일을 확인하여 청약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스마트폰 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및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 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동인증서나 네이버인증서를 해당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신청방법은 인터넷 청약('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이 원칙이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에 한하여 건본주택(문의 1661-0069) 방문접수(은행창구 접수 불가)가 허용됨. (방문 접수시간 : 10:00~14:00)
- 일반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나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에서 청약이 가능함. (창구 접수시간 : 09:00~16:00)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건본주택 방문접수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건본주택 방문접수 시 공급유형별 구비서류 미비자는 접수가 불가하며, 접수 마감 시간 이후에는 추가로 접수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건본주택 방문접수 시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함.
- 공급신청자, 배우자, 세대구성원 등의 관계 및 신청자격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로 별도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청약 시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체결 시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 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소유 여부의 판단에 있어 공급신청 당시 입력 값(자료) 및 제출서류(무주택 증명서류 등)만으로 우선 입주자선정을 하고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주 및 세대원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음.

■ 인터넷 청약서비스 이용방법 및 절차 안내 (해당 순위 청약신청일 08:00~17:30)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음.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현재 해당 청약 순위가 발생하신 분은 ①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거나, ②네이버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람.

한국부동산원(全 은행 청약자 : KB국민은행 포함)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PC 청약시]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접속 ⇒ 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스마트폰 청약시] 스마트폰앱(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접속 ⇒ 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운영하는 "청약가상체험"을 활용하시기 바람.

◎ 주택청약업무가 금융결제원으로부터 한국부동산원으로 이관되면서, 아래와 같은 서비스가 추가로 제공됨.

① **[행정정보 자동조회]**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청약신청 시, 신청 과정에서 **청약자가 원할 경우** 주민등록표등·초본,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해당기관으로부터 열람하여 그 정보를 즉시 보여줌으로써, 청약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자격을 판단할 수 있도록 지원함. **(선택사항이며, 청약신청 당일 지자체 통신망 연결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을 수 있음)**
 「청약신청」 ⇒ 「APT청약신청」 ⇒ 「Step2. 주택형선택 및 행정정보 자동조회」 ⇒ 「서비스 이용 동의 시」. 단, 미동의 시 기존과 동일한 절차대로 신청자가 직접 해당 자격을 판단하여 입력 가능

② **[모집공고단지 청약연습]** 공고일 다음날부터 일반공급 청약신청 전날까지 세대원을 등록하고, 해당 세대원(성년자에 한함)의 개인정보 동의를 완료되면, 실제 청약하고자 하는 모집공고에 대한 신청자 및 세대원의 청약자격(주택소유 및 각종 청약제한사실)을 미리 알아볼 수 있어, 부적격자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지원함.
 「모집공고단지 청약연습」 ⇒ 「세대구성원 등록/조회」 ⇒ 「세대구성원 동의」 ⇒ 「모집공고단지 청약연습 신청」 단, 세대구성원 등록 생략 시 신청자 본인에 대해서만 청약자격 검증

※상기 접수시간(17:30)은 청약접수 완료 기준으로 청약신청 진행 중이라도 접수 완료하지 않고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청약신청 시 해당 은행에서는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없이 청약신청자가 기재한 사항만으로 청약접수를 받으며,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여야 함.

■ 고령자, 장애인 등 은행창구 청약 (일반공급은 인터넷 청약신청이 원칙이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을 제외하고는 은행창구에서의 청약접수는 불가함)

구분	구비사항			
일반 공급	본인 신청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공급신청서(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 통장 • 예금인장 또는 본인 서명 		
	제3자 대리신청 시 추가사항 (배우자 포함)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직계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함.		
		<table border="1"> <thead> <tr> <th>인감증명 방식</th> <th>본인서명확인 방식</th> </tr> </thead> <tbody> <tr>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 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 (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 (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통 •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td> </tr> </tbody> </table>	인감증명 방식	본인서명확인 방식
인감증명 방식	본인서명확인 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 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 (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 (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통 •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또는 청약자격 전산등록 기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 (단,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서류 제출)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산일 산정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람.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음.

※주택공급 신청서의 단말기 「(전산)인지란」의 인자된 내용과 주택공급신청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고, 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 신청을 해야 함.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 날인 없이 신청인[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는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며,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해야 함.

■ 입주자 선정방법 및 동·호수 결정

구분	선정방법
<p>특별공급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신혼부부 특별공급,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생애최초 특별공급,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 추첨은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함. • 특별공급 대상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에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함. •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선정 시 특별공급 접수종류 구분 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특별공급 주택형별 공급세대의 300%까지 추첨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비입주자의 선정 및 순번은 특별공급 접수종류 구분 없이 추첨의 방법으로 함. - 주택형별 전체 신청자 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40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 • 특별공급 신청자가 없거나, 예비입주자 물량에 미달된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모집함.
<p>일반공급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각 순위별로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이 1순위는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2순위는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 추첨은 특별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함. •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은 다음과 같으며, 85㎡ 이하 1순위 청약자는 해당 순위에서 가점제(가점점수가 높은 순)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가점제 낙첨자에 한하여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해당 거주지역 추첨제 대상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재선정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용면적 85㎡ 이하 : 일반공급 세대수의 75%를 가점제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나머지 25% 추첨제 (추첨분 경쟁이 있을 경우 다음의 '민영주택 추첨제 우선공급*' 적용) *민영주택 추첨제 공급 시 무주택자 우선공급 :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및 광역시는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주택수보다 추첨 대상자가 많은 경우, 다음 순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되는 주택수의 75% : 무주택세대구성원 2. 나머지 25%의 주택(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 포함) :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기존 소유주택 처분조건을 승낙한 자로 한정)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공급한 후 남은 주택 : 1순위에 해당하는 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 • 동일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 중 경쟁이 있을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경기도 광주시 1년 이상 계속 거주 중인 신청자가 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거주 신청자보다 우선함.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경기도 광주시에 연속해서 1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지 않은 경기도 광주시 신청자는 1순위 기타지역으로 청약접수를 하여야 함) • 입주자선정 시 선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400%를 초과할 경우 차순위 접수분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2019.12.0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함. • 예비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별로 일반공급 세대수의 300%를 아래와 같이 선정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순위 : 일반공급 세대수의 300%까지 지역 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가점이 높은 자를 앞 순번으로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인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 - 2순위 :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공급세대수만큼 지역 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추첨으로 선정 • 정당당첨자 계약종료 이후 미계약 또는 계약해제 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함. • 특별공급 당첨세대의 당첨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은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일반공급 당첨세대의 당첨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되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물량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전환하여 공급됨. • 예비입주자로서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 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됨. (청약통장 재사용 불가 및 재당첨 제한 등이 적용됨)
<p>기타 유의사항</p>	<p>○ 중복청약 및 재당첨 제한 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별공급 신청자가 일반공급에도 중복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에 당첨된 경우 일반공급 청약은 무효로 처리(특별공급에 예비입주자로 당첨된 경우에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에서 제외)하고, 특별공급 신청자가 타 유형의 특별공급에 중복청약 시 둘 다 무효처리 됨.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경우 특별공급 당첨자의 세대원이 일반공급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 제58조에 따라 특별공급 당첨은 인정되나, 일반공급으로 당첨된 주택은 당첨이 취소(재당첨제한 적용)되고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됨. • 일반공급의 당첨자로 선정되신 분이 이전기관중사자 등 특별공급(규칙 제47조) 예비입주자로 중복하여 선정된 경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의 입주자 선정기회는 제공하지 않음. • 예비입주자(동·호수 배정 추첨 및 계약 전)로 선정된 후 다른 주택에 당첨된 경우 예비입주자 지위 인정 불가 <p>○ 기타 유의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 청약(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신청자의 경우 당첨자에 한하여(당첨자발표 후) 서류제출 기한 내 자격확인을 위한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출하여야 하나,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으로서 인터넷 청약이 불가하여 견본주택 방문 접수한 청약신청자는 청약신청 시 공급유형별 구비서류를 완비하여 제출하여야 함.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 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계약체결 이후라도 전산검색결과 등에 따른 부적격(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하지 못한 경우)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음이 확인될 경우 아파트 당첨 및 계약이 임의 해지될 수 있고, 계약금 납입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급이자 없이 원금만 환불하며, 당첨취소 세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예비입주자 지위 인정 기간까지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제8항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취소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 (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	---

※20.02.28. 시행한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1590(청약과열지역 등 예비입주자 선정비율 확대 요청)호에 따라 '20.3.16. 이후 청약과열지역:수도권(인천, 경기):지방 광역시(부산, 대구, 대전, 광주, 울산)에서 입주자모집공고하는 주택은 300%의 예비입주자를 선정 (투기과열지구 내 공급 주택은 500% 적용)

V 당첨자발표 및 서류제출 일정

■ 당첨자발표 및 서류제출 일정

구분	신청대상자	당첨자(동·호수) / 예비입주자(예비순번) 발표	당첨자 서류제출 및 자격확인(서류확인)
특별공급	일반(기관추천),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생애최초, 노부모부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 : 2021.03.02(화) • 확인방법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www.applyhome.co.kr) 또는 스마트폰앱에서 개별조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출대상 : 특별공급/일반공급 당첨자 (예비입주자 추후 별도 통보) • 제출일시 : 2021.03.03(수) ~ 2021.03.09(화) (10:00~17:00) • 접수방법 : ※등기우편 접수 • 제출장소 : 더샵 오포센트리체 건본주택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손곡로 9 (동천동 855-2)) (우편번호 16827)
일반공급	1순위, 2순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동인증서 및 네이버인증서로 로그인 후 조회 가능 ※예비입주자 서류제출 일정 및 동·호수 추첨일정은 추후 통보예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류제출 방식은 등기우편 접수가 원칙이며, 서류제출 기간 이후 도착분은 인정하지 않음. ※서류제출 기간 내 미접수 시 계약포기로 간주되오니, 기간 내 필히 제출하여주시기 바람. ※당첨유형별 제출서류는 당첨자 발표일 이후 분양 홈페이지(www.더샵오포센트리체.com)를 통하여 안내 예정이오니, 참조하시기 바람.

- ※당첨자 명단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당첨자 및 동·호수 확인 시에는 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가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람.
- 다만,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으로서 인터넷 청약이 불가하여 건본주택(특별공급) 또는 은행창구(일반공급) 등에 방문하여 청약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정보입력(주택명, 주택형, 성명, 생년월일 입력) 조회가 가능하나 정보 오입력 등의 경우 부정확한 내역이 조회될 수 있으므로 인증서를 발급받으신 분은 반드시 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정확한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람.
- *인터넷 청약신청 건에 대해서는 '정보입력'에 의한 당첨내역 조회가 불가(당첨 여부에 관계없이 '당첨내역이 없음'으로 표기됨)하오니 반드시 인증서로 로그인하시어 당첨 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람.
- ※당첨자 명단은 상기 장소에서 공급신청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음. (전화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람)
- ※접수 건수 과밀로 인한 서류검토일정 및 운영시간은 변경될 수 있음.
-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예방을 위한 정부정책에 따라 서류제출 일정 및 접수방식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당첨자의 계약 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시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체결이 가능함.
- ※공급계약체결 전 입주자자격 확인 및 계약일에 계약체결 소요시간 단축을 위한 일정오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 ※상기 당첨자 서류제출일정은 당첨자(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 한하며, 예비입주자(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의 동·호수 배정 추첨 및 서류제출, 계약체결 등의 일정 및 방법은 추후 별도 통보예정임.

■ 인터넷, 휴대폰 문자 당첨자발표 서비스 이용 안내

- 본 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를 위한 부가서비스이며 정확한 당첨여부는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를 통해 확인하여 주시기 바람.

구분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주 은행 청약자)	
이용기간	2021.03.02(화) ~ 2021.03.11(목) (10일간)	
인터넷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접속 → 청약조회 → 당첨조회(최근 10일) - 스마트폰 접속 → 당첨조회 → 당첨조회(10일간) ※당첨조회(10일) 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확인' 또는 '청약소통방' > '당첨사실 조회하기(아파트)'를 통해 당첨내역 확인 가능	
휴대폰 문자서비스	대상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신청시 휴대폰 번호를 등록하신 분 중 당첨(예비)자
	제공일시	2021.03.02(화)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휴대폰 문자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 도모를 위한 부가서비스로서 정확한 당첨 여부는 상기 발표일에 청약홈 > 청약당첨조회 등에서 본인이 반드시 재확인하여야 함.

▣ 특별공급 자격확인 제출서류 (※당첨자는 서류제출 기간 내 제출되어야 하며, 건본주택 청약신청자는 특별공급 신청일에 해당서류를 완비하여 제출하여야 함)

※특별공급 신청당일 건본주택 내 현장접수는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고령자,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에만 해당하며, 해당 특별공급 서류를 완비 후 신청자격 여부 확인 후 적격한 경우에만 접수 가능함.

※인터넷 청약신청자는 당첨자에 한하여 서류제출기간 내 해당 서류접수를 완료하여 자격 여부를 확인받아야 함.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서류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공통 서류	○		특별공급 신청서, 특별공급 약약서,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서약서	-	• 건본주택에 비치 ※인터넷 청약으로 청약한 경우 생략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	• 인터넷 청약 신청한 당첨자는 계약 시 제출 • 건본주택 청약신청자(정보취약계층)는 청약접수 시 제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3자 대리신청 및 대리계약 불가
	○		인감도장	본인	• 인터넷 청약 신청한 당첨자는 계약 시 지참 필수 • 건본주택 청약신청자(정보취약계층)는 청약접수 및 계약 시 지참 필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제출 시 생략
	○		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주민등록표등본	본인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 사유,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전체포함'으로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	본인	•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전체포함'으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출입국사실증명서	본인	• 국외 거주기간 여부 확인 (*출생년도부터 현재까지 기간지정으로 발급)
		○	청약통장순위(가입)확인서	본인	• 청약통장 가입은행으로부터 순위(가입)내역 발급 또는 '청약Home' 홈페이지에서 청약통장순위(가입)확인서 발급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제외] ※인터넷 청약으로 청약한 경우 생략
		○	해외체류(단신부임) 관련 증명서류	본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7항에 의거 당첨자(청약신청자)가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직접(본인만)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생업종사 중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아래표 '해외근무자(단신부임) 입증서류' 참조]
		○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 주민등록표등본 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상기 본인 등본 발급 유의사항과 같이 '전체포함'하여 발급)
		○	복무확인서	본인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이 입주자저축에 가입하고 현재 거주하는 지역과 다른 주택건설지역의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 군복무기간(10년 이상) 명시
기관추천(일반) 특별공급	-	-	해당 기관별 추천 명단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거 해당 기관장이 발행한 추천서 및 추천명부로 확인 *해당기관의 추천대상자는 사업주체(건본주택)에서 확인 가능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우선순위 배점기준표	-	• 건본주택 비치
		○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 직계존속	• 3세대 이상 세대구성 배점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주민등록표상 신청자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여부 확인)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및 발생일,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전체포함'으로 발급
		○	출입국사실증명서	피부양 직계존속	• 3세대 이상 세대구성 배점을 인정받고자 하는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해당 직계존속 제출 *출생년도부터 현재까지 기간지정으로 발급
		○	한부모가족증명서	본인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자
		○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 상 등재된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본인의 친자녀가 아닌 자녀)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	자녀	• 자녀의 연령이 만18세 이상 만19세 미만인 경우 (*상세'로 발급)

		○	임신진단서 또는 출생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임신의 경우 임신진단서(국내의료기관으로 한정) 제출 *임신진단서의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 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임신확인서' 인정 안됨)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본인	• 임신의 경우 (건본주택 비치)
		○	입양관계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입양의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		○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 혼인신고일 확인 (*본인 및 배우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본인 및 성년자인 세대원 전원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공급신청자 및 성년자(만19세 이상 포함)인 세대원 전원 제출 (발급처:국민건강보험 T. 1577-1000) *분리된 배우자와 같은 주민등록표등본 상 등재된 배우자 및 성년자인 세대원 전원 필수
		○	소득증빙서류	본인 및 성년자인 세대원 전원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당첨자(청약신청자) 및 성년자(만19세 이상 포함)인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 (아래표-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참조) *분리된 배우자와 같은 주민등록표등본 상 등재된 배우자 및 성년자인 세대원 전원 필수
		○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 상 등재된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본인의 친자녀가 아닌 자녀)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임신진단서 또는 출생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임신의 경우 임신진단서(국내의료기관으로 한정) 제출 *임신진단서의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 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임신확인서' 인정 안됨)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본인	• 임신의 경우 (건본주택 비치)
		○	입양관계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입양의 경우
		○	비사업자확인각서	본인 또는 해당자	•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 (건본주택 비치)
생애최초 특별공급		○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 혼인신고일 확인 (*상세'로 발급)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본인 및 성년자인 세대원 전원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당첨자(청약신청자) 및 성년자(만19세 이상 포함)인 세대원 전원 제출 (발급처:국민건강보험 T. 1577-1000) *분리된 배우자와 같은 주민등록표등본 상 등재된 배우자 및 성년자인 세대원 전원 필수
		○	소득증빙서류	본인 및 성년자인 세대원 전원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당첨자(청약신청자) 및 성년자(만19세 이상 포함)인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 (아래표-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참조) • 당첨자(청약신청자)의 소득세 납부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의 5개년도 서류 (아래표-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및 소득세 납부 입증 제출서류 참조) *분리된 배우자와 같은 주민등록표등본 상 등재된 배우자 및 성년자인 세대원 전원 필수
		○	혼인관계증명서	자녀	• 만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미혼인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상세'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피부양 직계존속	• 직계존속을 소득산정 시 당첨자의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직계존속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 직계존속	• 직계존속을 소득산정 시 당첨자(청약신청자)의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을 포함하여 발급)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및 발생일,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전체포함'으로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	배우자	•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직계존속이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 상 등재되어 있는 경우
		○	입양관계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입양의 경우
		○	비사업자확인각서	본인 또는 해당자	•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 (건본주택 비치)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청약 가점점수 산정기준표	본인	• 건본주택 비치
		○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 직계존속	•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여부 확인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을 포함하여 발급)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및 발생일,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전체포함'으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피부양 직계존속	• 피부양 직계존속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 만30세 이전에 혼인하여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	자녀	• 만18세 이상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성명, 주민등록번호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	자녀	• 만30세 이상 미혼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을 포함하여 발급
	○	출입국사실증명서	피부양 직계 존·비속	•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직계 존·비속이 있는 경우 피부양인 전원 제출 *출생년도부터 현재까지 기간지정으로 발급
제3자 대리인 신청시 추가서류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청약자	• 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또는 아파트 계약 위임용
	○	위임장	청약자	•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건본주택 비치)
	○	신분증, 인장	대리인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 (소명자료)	○	무주택 소명서류	해당주택	'주택소유 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 기준'에 따른 해당 서류제출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등본(가옥대장등본 포함), 무허가건물확인서, 철거예정증명서, '소형·저가주택등'임을 증명하는 서류(주택공시가격 증명원 등), 기타 주택소유에 관한 증명서류
	○	당첨사실 소명서류	본인	• 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 확인서 등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제3자 대리인 제출 시 추가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청약자	• 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	위임장	청약자	•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건본주택에 비치
	○	신분증	대리인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상기 모든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건본주택에서는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청약접수 및 당첨자 자격확인이 가능함.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간 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람.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득실확인서, 소득증빙서류 등 모든 제반서류 상 등재된 모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등은 반드시 표기되어 발급하시기 바람.
 ※공급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공급신청자 본인의 책임임.

■ 일반공급 자격확인 제출서류 (※당첨자에 한하여 서류제출 기간 내 제출되어야 함)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확인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공통서류	○		주민등록표등본	본인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 사유,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전체포함'으로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	본인	•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전체포함'으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출입국사실증명서	본인	• 국외 거주기간 여부 확인 (*출생년도부터 현재까지 기간지정으로 발급)
	○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 주민등록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 (상기 본인 등본 발급 유의사항과 같이 '전체포함'하여 발급)
	○		출입국사실증명서	직계 존·비속	• 직계 존·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출생년도부터 현재까지 기간지정으로 발급)
	○		해외체류(단신부임) 관련 증빙서류	본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7항에 의거 당첨자(청약신청자)가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직접(본인만)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생업종사 중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아래표 '해외근무자(단신부임) 입증서류' 참조]
	○		복무확인서	본인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이 입주자저축에 가입하고 그가 거주하는 지역과 다른 주택건설지역의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 군복무기간(10년 이상) 명시

일반공급	○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 직계존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부양 직계존속을 주민등록표등본 상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한 사실을 인정받으려는 경우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전체포함'으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피부양 직계존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부양 직계존속을 주민등록표등본 상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한 사실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 직계비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30세 이상 미혼의 피부양 직계비속을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한 사실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전체포함'으로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	피부양 직계비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18세 이상의 미혼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상세'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혼가정의 자녀(본인의 친자녀가 아닌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산정 한 경우 *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 경우에 한하며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30세 미만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가점자 당첨자로서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 (소명자료)	○	무주택 소명서류	해당주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소유 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 기준'에 따른 해당 서류제출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등본(가옥대장등본 포함), 무허가건물확인서, 철거예정증명서, '소형·저가주택등'임을 증명하는 서류(주택공시가격 증명원 등), 기타 주택소유에 관한 증명서류
	○	당첨사실 소명서류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 확인서 등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제3자 대리인 제출 시 추가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청약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	위임장	청약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견본주택에 비치
	○	신분증	대리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인 외국인등록증

※상기 제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람.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간 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람.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으로 간주함.

■ 해외근무자(단신부임) 입증서류 (※'단신부임' 청약신청 및 당첨자는 상기 공통서류 외 추가 제출)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확인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해외근무자 (단신부임)	○		해외체류 증빙서류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기업 및 기관소속 해외 주재원 및 출장자인 경우 : 파견 및 출장명령서 • 해외 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인 경우 :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 또는 근로 관련 서류, 취업 또는 사업비자 발급내역 등 • 근로자가 아닌 경우(※반드시 제출) : ①비자 발급내역 ②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유학, 연수, 관광, 단순체류자의 경우 생업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며, 생업관련 증빙서류 불가능한 자 또한 생업사정 불인정
	○		출입국사실증명서	배우자 및 세대원 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우자 및 세대원이 생업 등으로 해외 체류 여부 확인 (*출생년도부터 현재까지 기간지정으로 발급)
	○		비자발급내역 및 재학증명서 등	본인 및 세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권 분실 및 재발급으로 체류국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비자발급내역, 재학증명서 등 체류국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통해 소명을 하여야 하며, 세대원이 당첨자(청약신청자)와 동일한 국가에 체류하지 않았다는 사실(계속하여 90일, 연간 183일을 초과)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단신부임 인정 불가

■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및 소득세 납부 입증 제출서류

서류 구분	해당자격	증빙 제출서류	발급처
자격 입증서류	근로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당직장 세무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자영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자등록증 사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근로자,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1년 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납부내역증명 포함) (과거 1년 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에 한함)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소득세납부 입증서류	과거 5개년도 소득세 납부내역 (근로자 / 자영업자 /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과거 5개년도 소득세 납부증명서류로 아래에 해당하는 서류 중 하나 소득금액증명원(근로자용 또는 종합소득세신고자용) 및 납부내역증명서(종합소득세 납부자) 납세사실증명(종합소득금액 증명 제출자에 한함)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일용근로자용 소득금액증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세무서 해당직장

※상기 모든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청약접수 및 당첨자 자격확인이 가능함.

※상기 모든 증명서류는 해당 서류상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등 모두 표기되도록 발급하여야 함.

■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해당자격		소득입증 제출서류	발급처
근로자	일반근로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직증명서(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휴직기간을 명시하여 발급)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서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전년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증명서(‘매월신고 납부대상자확인’으로 발급) ※연말정산 등으로 인해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기 전에 특별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전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당직장 세무서
	금년도신규취업자 / 금년도 전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직증명서 금년도 월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근로기간이 1개월을 경과하지 못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부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과 동일한 직장의 동일 직급, 동일 호봉인 자의 전년도 근로자 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를 제출받아 월평균소득을 추정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당직장
	전년도 전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직증명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당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 자 (건강보험증 상 직장가입자만 해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총급여액 및 근무 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직인 날인) 또는 월별급여명세서(근로소득지급조서) ※근로계약서 및 월별급여명세서에 사업자의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당직장
자영업자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면세사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사업자등록증 사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세무서
	간이과세자 중 소득세 미신고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명원(*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금액증명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세무서
	신규사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민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및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 또는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부분) 사업자등록증 사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민연금공단 세무서
	법인사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세무서 등기소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년도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또는 전년도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또는 해당 회사의 급여명세서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세무서 해당직장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 국민 기초생활 수급자증명서	• 행정복지센터
비정규직 근로자 / 일용직 근로자	• 계약기간 및 총급여액이 명시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서 또는 근로소득지급조서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상기 서류가 없는 경우 '국민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및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	• 해당직장 • 국민연금공단
무직자	• 비사업자 확인각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해당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에는 전년도 1월 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건본주택 비치

※상기 모든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청약접수 및 당첨자 자격확인이 가능함.
※상기 모든 증명서류는 해당 서류상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등 모두 표기되도록 발급하여야 함.

▣ 예비입주자(예비순번) 발표 및 공급 방법

구분	신청대상자	예비입주자(예비순번) 발표	예비입주자 서류제출 및 동·호수 추첨/계약체결
특별공급	일반(기관추천),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생애최초, 노부모부양	• 일시 : 2021.03.02(화) • 확인방법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www.applyhome.co.kr)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폰앱(청약홈)에서 개별조회 *공동인증서 및 네이버인증서로 로그인 후 조회 가능	• 청약 시 입력한 개인정보를 토대로 개별 연락 예정 (서류제출 일정 및 동·호수 추첨일정 등) ※청약신청 시 입력한 주소, 연락처 등의 정보가 사실과 다를 경우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신 분은 건본주택으로 본인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를 사업주체에 통보하여야 함. (통보하지 않을 경우 연락처,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공급에서 제외될 수 있음)
일반공급	1순위, 2순위		

※특별공급 부적격 당첨된 동·호수 및 미계약 동·호수는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일반공급 부적격 당첨된 동·호수 및 미계약 동·호수는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며, 공급 일정은 별도로 통보할 예정임.
※예비입주자 명단은 당첨자발표 시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개별조회가 가능하며, 최초 계약이 가능한 날부터 예비입주자 지위 인정 기간까지 분양 홈페이지에 공고 예정임.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청약신청 시 입력한 개인정보(주소, 전화번호)가 사실과 다른 경우, 필히 건본주택으로 본인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를 사업주체에 통보하여야 함.
(통보하지 않을 경우 연락처 및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예비입주자 공급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음을 유의하시기 바람)
※동·호수 배정 추첨에 참가하여 당첨된 예비입주자는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되어 향후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함.
※예비입주자 선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자동으로 추첨되며, 정당 당첨자 계약 이후 미계약 세대에 한하여 추첨 후 계약이 가능함.
※신청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주택공급신청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나 정정은 할 수 없음.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도 참가할 수 없음.
※특별공급, 일반공급 모두 예비입주자가 된 경우 특별공급을 우선하여 배정(둘 중 선택 불가)하고 특별공급으로 당첨된 경우 일반공급 예비는 무효처리하며, 특별공급 예비물량이 모두 소진되어 예비 추첨기회가 소진된 경우 일반 예비 지위를 인정함.
※개별 통신사업자의 시스템 제한, 고객의 요청, 개인별 휴대폰 기능 제한 등으로 인해 SMS, MMS의 전송 및 도달 또는 통화가 불가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음.

VI 계약체결

▣ 계약체결 일정(예약시스템) 및 장소

구분	1일차	2일차	3일차	4일차	5일차	6일차	7일차	8일차	9일차	10일차
	2021.03.18(목)	2021.03.19(금)	2021.03.20(토)	2021.03.21(일)	2021.03.22(월)	2021.03.23(화)	2021.03.24(수)	2021.03.25(목)	2021.03.26(금)	2021.03.27(토)
해당 세대수	120	130	150	160	160	160	160	160	150	125
계약장소	더샵 오피스센터리체 건본주택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손곡로 9 (동천동 855-2)									
계약기한 및 유의사항	2021.03.18(목) ~ 2021.03.27(토) [10일간] ※계약기간 종료일(10일차) 입장 마감 시간은 16:00까지이며, 이후 계약금 입금 및 건본주택 입장 등 계약과 관련한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인정하지 않음. ※해당 계약 일자별 시간 배분 계획은 당첨자발표일 이후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예방을 위한 정부 정책에 따라 상기 공급계약 일정 및 배정세대수, 장소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상기 일정을 참조하여 반드시 해당일 및 해당시간에 건본주택으로 방문하여 계약을 진행하여야 함.
• 당첨자의 계약 기간은 주택소유 유무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 유무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 여부를 확인한 자

(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체결이 가능함.

- 정당 당첨자는 당첨 동·호수의 공급금액을 확인 후 지정된 분양대금 계좌로 계약금을 납부하고, 계약 시 구비사항을 준비하시어 반드시 지정된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코로나19의 지역사회 또는 집단감염확산을 방지하고자 건본주택 내외부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하며, 해외 입국자 또는 확진자로 인한 자가격리 등의 사실이 있는 경우 필히 최초 계약 가능일 전까지 분양사무실에 통보 및 협의하여야 하며, 일정 등을 조정하여야 함. 또한, 별도 연락이 없거나 현장 내 발열로 인한 출입이 제한될 수 있음.
- 이하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 '계약체결 조건 및 유의사항' 또는 건본주택(문의 1661-0069)로 확인하시기 바람.

▣ **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분양대금 납부계좌	우리은행	1005-304-106858	(주)포스코건설

- 분양대금의 계약금은 지정된 계약기간에 반드시 상기 계좌로 납부하여야 함. (※건본주택에서 계약금(현금 또는 수표) 수납은 불가하며, 타은행 계좌이체 및 무통장입금 가능)
- 계약금 납부 : 분양대금 납부계좌로 입금(입금 예시 : 201동 201호 당첨자가 홍길동인 경우 입금자명을 "2010201홍길동" 기재) 후 입금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납부영수증, 입금 확인증, 캡처 등)를 계약 시 제출 바람.
- 분양대금 중 중도금, 잔금은 약정된 납부일에 지정된 계좌(계약 시 부여되는 가상계좌)로 계좌이체 및 무통장입금(입금 시 비교란에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 기재)하시기 바람 사업주체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음. 또한, 선납 시 주택도시보증공사 분양보증의 보호를 받지 못함.
- 지정된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은 공급계약서상 해당 회차별 납부일에 따라 순서대로 납부하여야 하며, 지정된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 대상에서 제외됨.
- 착오 납부에 따른 문제 발생 시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계약금 입금자 중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고, 환불 이자는 없음. (환불 시기, 방법 등은 추후 통보)
- 이하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 '계약체결 조건 및 유의사항' 또는 건본주택(문의 1661-0069)로 확인하시기 바람.

▣ **계약 시 구비사항**

구분	구비사항
본인 계약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첨유형별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일체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제출기한 내 제출한 경우 제외) • 기타 사업주체가 적격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로 요구하는 서류 (해당자에 한하여 개별통지) • 계약금 입금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납부영수증, 입금 확인증, 캡처 등)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제출기한 내 제출한 경우 제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자의 경우 제3자 대리계약 불가 • 인감도장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외)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사실신고증 (또는 국내거주사실증명서 1통) / 외국인인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1통)
제3자 대리계약 시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계약 (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으로 간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3자 대리계약 시 상기 구비서류와 함께 다음 서류를 추가 제출 • 계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 (※본인발급용 / 용도 : 아파트 계약 위임용) 및 인감도장 • 대리인 신분증, 인장(또는 대리인 서명) • 계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건본주택 비치)

※상기 모든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계약이 가능 함.

※주민등록표등·초본 발행 시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세대주 성명 및 관계, 과거 주소 변동사항 및 변동 사유, 세대구성일 및 사유, 발생일 등을 포함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람.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배우자, 직계 존·비속 포함)으로 간주함.

▣ **계약체결 조건 및 유의사항**

-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전산 관리됨.
- 당첨자 계약 체결기간 준수
 - 정당 당첨자(특별공급 및 1, 2순위 당첨자)는 계약기간 이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해당 동·호수는 계약기간 종료 이후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함.
 - 지정 계약기간 내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계약 포기로 간주 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에 따라 사업주체에서는 당첨자에 대한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 시 제출서류를 확인하여 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된 자에 대해, 그 결과를 당첨자에게 즉시 통보하며, 당첨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부적격 사항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취소 또는 계약 포기로 간주 됨.
 - 관련 기관의 전산시스템과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시 입주대상자의 현황이 상이할 수 있으며, 부적격 사항 및 적격 여부 확인이 필요한 자료 통보된 경우, 소명기간(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류 확인

- 등을 통하여 부적격 사항 소명이 완료된 경우, 계약기간 내 계약체결이 가능함.
- 당첨 및 계약체결 이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 해지 조치가 될 수 있으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음.
(※공급질서교란자로 관리될 수 있는 등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귀속됨)
 - 계약체결 이후라도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부적격자가 아님을 소명하지 못하는 경우 계약은 취소됨.
 - 청약 또는 계약 신청 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될 경우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기체결된 계약은 취소함.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 관련 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당첨취소 및 고발 조치 될 수 있음.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거 부동산 계약 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여야 함.
따라서 부동산거래신고에 따른 관련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하여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람.
- 계약체결 후 해제 또는 해지하게 되는 경우 공급계약서 약관에 따라 위약금을 공제함.
- 계약체결 이후 인·허가청의 요청 및 지시로 인하여 행정구역 및 단지내 명칭, 동·호수는 향후 변경될 수 있으므로 계약 시 이점 양지하시기 바람.
- 계약체결을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는 사업주체, 시공사, 중도금대출 취급기관, 국가기관 등에서 계약관리 및 추후 주요일정 통보 등의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대하여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함.
- 주택분양보증 관련
 - 본 아파트는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이며,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해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장래에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주택건설사업부지(지상 건축물을 포함)를 신탁하는 경우 입주예정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함.
 -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분양보증 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 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음.
 - 중도금 및 잔금 선납 시 선납금액은 분양보증을 받을 수 없음.
- 외국인 등이 국내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국인 등은 동법 제8조 및 제반 규정에 따라 정해진 기한 내 부동산취득신고를 하여야 함.
 -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비거주자(대한민국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않은 개인 및 법인)는 동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를 하여야 함.
 - 영리목적 법인의 국내 설립 후 토지 취득 시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마치고 상기 법령에 따른 부동산취득신고 및 자본거래신고를 하여야 함.
- 기타 계약조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에 준함.

■ 계약자 중도금대출 안내

- 본 주택의 중도금대출은 이자후불제이며, 총 분양대금의 50% 범위 내에서 사업주체가 지정하는 대출 금융기관에서 대출이 가능함. (대출관련 세부내용은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임)
- 중도금대출 협약조건에 의거 계약금 10% 완납 이후 중도금대출이 가능하며, 계약금 미납 시 중도금대출이 불가하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람.
- 중도금대출 이자는 사업주체, 시공사 및 중도금 대출기관과 체결되는 중도금대출 협약 조건에 의거하며, 중도금대출 약정기간은 사업주체 등이 지정하는 입주개시월의 이자정산일(단, 이자정산일 이전에 입주개시가 될 경우 입주개시 전 월 이자정산일까지로 함)까지 발생한 중도금대출 이자는 계약자를 대신하여 사업주체에서 우선 납부함.
(단, 사업주체가 지정한 중도금 대출기관의 중도금대출 이자만 해당하며, 관련정책 및 개인의 사정 등으로 대출 비율을 제한받아 계약자가 자기 책임하에 조달한 중도금에 대한 대출이자는 해당하지 않음)
- 계약자는 입주 시 사업주체에서 지정한 기일 내에 중도금 대출금 상환 및 사업주체에서 계약자를 대신하여 우선 납부한 중도금대출 이자 등을 일시 납부하여야 함.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입주가 거부될 수 있고, 납부지연으로 인한 연체이자 등을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함) 또한, 입주개시월의 이자 납입일 이후 발생한 중도금대출 이자는 계약자가 부담하므로 중도금 대출기관에 직접 납부해야 함.
-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한국주택금융공사 중도금대출 보증(9억원 이하 주택)은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세대당 1건으로 제한되며, 금융기관의 대출조건에 따라 일부 중도금대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확인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중도금대출에 필요한 제반 경비(보증수수료, 인지대 등)는 계약자가 부담해야 하며, 금융 신용 불량거래자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한 대출이 불가하거나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분양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본인이 직접 납부 해야하며(이 경우 사업주체는 분양대금 납부일정을 별도로 통보할 의무가 없으며, 미납 시 연체료 가산됨), 대출 불가 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없음.
- 중도금 및 잔금의 선납할인율 및 지연이자는 공급계약서를 기준으로 함.
- 금융관련정책, 대출기관의 여신관리 규정, 집단대출 보증기관의 관리규정 등을 감안한 적격대출 대상자의 경우, 사업주체가 알선한 금융기관을 통한 대출신청 여부는 계약자의 선택사항임.
- 중도금대출 신청 안내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의무사항이 아니며 '개인사유로 인한 대출 미신청' 또는 계약자 개인 신용 등의 사유로 사업주체가 알선한 중도금대출 은행에서 중도금대출을 받지 못하는 경우 중도금 납부 회차에 맞추어 계약자가 직접 납부하여야 함. (미납시 연체료가 부과됨)
- 중도금대출 시 사업주체가 지정한 대출금융기관을 통해 용자받는 것에 동의하며(개별 금융기관 지정 불가), 관련정책 및 대출상품의 종류, 개인의 사정 등으로 대출한도가 개인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으므로 지정 금융기관에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람. 이에 따른 대출 불가 및 축소 등의 사유로 발생한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으며 이와 관련된 책임을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부담하지 않음.
- 계약자는 관계법령 변경 및 정부의 부동산정책(대출 제한 등), 금융시장 변화 또는 대출기관의 규제 등에 따라 사업주체의 중도금 대출 알선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분양대금은 계약자 본인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 납부하여야 함. (※중도금대출 은행의 알선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의무사항이 아니며 계약자에 대한 편의 제공에 불과함)
- 중도금대출이 가능할 경우에도 대출조건이 각 세대별, 각 개인별로 상이하거나, 최종적으로 중도금대출 실행이 불가할 수 있음을 인지하시기 바람. 이에 따른 중도금대출 불가 및 대출한도 축소 등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고 이와 관련된 책임을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부담하지 않음. (재외동포 및 외국인, 법인의 경우 대출 가능 여부 반드시 확인)
- 분양사무소는 대출기관이 아니므로 분양상담사와 분양상담 시 대출 여부에 대해 확정할 수 없으며, 추후 금융기관 심사를 통하여 대출 여부가 결정됨. 이에 고객의 대출 제한에 대하여 분양상담(전화상담 포함) 내용을 근거로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대출 책임을 요구할 수 없음.
- 중도금대출 기간 이내라도 계약자의 금융 신용불량 등 결격사유 등이 발생하여 대출 금융기관의 중도금대출 중단 등 요구에 따라 분양대금이 납부되지 않을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사업주체는 중도금대출 지정 금융기관에 중도금대출을 위한 계약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함.
- 정부정책, 금융기관,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사정 등으로 대출 관련 제반 사항(대출취급기관, 대출금액, 대출조건 등)이 변경되더라도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어떠한 책임도 물을 수 없음.
- 「주택법 시행령」 제73조에서 정하는 분양권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 분양권 전매 요청 시 사업주체 및 대출 취급기관은 양수인의 신용등급 등의 제반 조건을 확인하기 위하여 추가 증빙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며, 대출 취급기관 또는 사업주체의 판단에 따라 양수인이 신용등급 등의 제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분양권 전매가 제한될 수 있음.
-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체가 대납하던 중도금대출 이자는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 금융시장의 경색 또는 변동성으로 인하여 선정된 중도금대출 금융기관의 특성(업종, 업태 등) 및 대출 형태에 따라 부득이 계약자의 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입주자 사전방문 안내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제3항제27호에 따라 입주지정 개시일 약 1~2개월 전에 특정 일자를 통보하여 입주자 사전방문을 실시할 예정임. (정확한 사전방문 예정 일자는 추후 통보)
- 사전방문 확인 대상 : 도장공사, 도배공사, 가구공사, 타일공사, 주방용구공사 및 위생기구공사의 상태 확인

■ 입주예정일 : 2023년 12월 예정 (향후 일정 등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추후 개별 통보함)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 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지정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음.
-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 중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의 귀책사유가 아닌 전쟁, 내란,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노동조합 파업 및 전염병 발생, 정부의 정책이나 관계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 지연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입주지연보상금도 발생하지 않음.
- 입주지정기간 종료 후 입주하는 경우 거주 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관리비 등이 부과되며, 입주 시 단지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 선수금을 납부하여야 함.
- 입주지정기간 종료 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 대해서는 입주 및 잔금납입이나 소유권이전 유무에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함. 또한, 계약자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주체가 입은 손해는 계약자가 배상하여야 함.
- 사업주체와 시공사는 수분양자에 대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채권회수를 위하여 입주관리(분양대금, 보증부대출금 등 채무 미완제 시 입주 및 소유권등기의 거부, 채무변제의 독촉, 가압류 등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적절한 조치를 위한 통지 등을 말함)를 이행하며, 이와 관련하여 수분양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상대로 민원을 제기할 수 없으며, 또한 민·형사상의 어떠한 책임도 물을 수 없음.
- 소유권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음. (특히 대지의 이전등기는 상당기간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물등기와 대지권 등기를 별도로 이행하여야 함)

■ 부대·복리시설 : 관리사무소, 경로당, 어린이집, 작은도서관, 주민공동시설,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경비실, 지하주차장, 자전거보관소, 근린생활시설 등. (단, 근린생활시설은 별도 분양 시설물임)

■ 주차장 출입 가능한 제한 높이 : 단지 서측 주출입구 2.7미터 미만(지하2층 직접연결), 단지 북측 부출입구 2.3미터 미만(지하1층 직접연결)

■ 공동주택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은 「공동주택관리법」,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VII 발코니 확장 및 추가선택품목

■ 발코니 확장공사 및 추가선택품목의 계약은 공동주택 공급계약과 별도로 계약을 진행함.

■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제품에 관한 사항 및 내용은 사이버모델하우스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판매 일정 및 방법, 납부계좌 등에 대해서는 별도 통보예정임.

■ 발코니 확장공사

(1) 발코니 확장공사 금액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구분		59A	59B	59C	76A	76B	84A	84B	84C	84D
공급금액		23,700,000	23,700,000	23,400,000	27,500,000	27,200,000	30,900,000	29,900,000	30,300,000	29,500,000
계약금(10%)	계약시	2,370,000	2,370,000	2,340,000	2,750,000	2,720,000	3,090,000	2,990,000	3,030,000	2,950,000
잔금(90%)	입주지정일	21,330,000	21,330,000	21,060,000	24,750,000	24,480,000	27,810,000	26,910,000	27,270,000	26,550,000

(2) 발코니 확장공사비 납부계좌

계좌 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발코니 확장공사비 납부계좌	우리은행	1005-804-099369	(주)포스코건설

※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발코니 확장비용대금은 인정하지 않음.

※ 각 회차별 납부 및 납부금액에 대해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음.

※ 지정된 납부일에 계약금, 잔금을 납부 하시기 바라며, 납부 시 동(3자리), 호수(4자리)와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여야 함.

(예시 201동 303호 계약자가 '홍길동'인 경우, 입금자명을 "2010303홍길동"으로 기재하시기 바람. '입금자'란 기재 시 문자 수 제한이 있을 경우 동호수를 우선 기재하고 성명은 기재 가능한 문자까지 최대한 기재해야 함)

(3) 발코니 확장공사 유의사항

- 발코니는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확장하여 건본주택에 설치하였으며, 발코니 확장은 세대별로 선택하여 계약하는 별도계약 품목으로 분양가에는 미포함 되어 있으며 발코니 확장이 필요한 경우 공동주택 공급계약 시 별도의 계약을 체결해야함.
 - 발코니 확장공사비는 공동주택 분양금액과 별도로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며, 발코니 확장에 따른 기존 설치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임.
 - 상기 발코니 확장공사비에는 통합취득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입주 후 관할관청으로부터 통합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 미선택 시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은 해당사항 없음.
 - 발코니 확장 선택 시 현관중문, 엔지니어드스톤(주방상판/주방벽)이 제공됨. (발코니 확장 미선택 시 현관중문은 미설치되며, 주방은 기본형인 MMA(주방상판), 타일(주방벽)로 시공됨)
 - 발코니 확장 계약은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으며, 일괄 확장 기준으로 산정된 금액임.
 - 주택형별로 확장면적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확인하시고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자재조달에 따른 계약 및 세대 내부공사 등 공사여건에 의해 발코니 확장계약 가능한 이후에는 계약체결 및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포함) 선택이 불가함.
 - 발코니 확장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주택형별 확장 위치 등 세부사항은 카탈로그 및 건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 및 새시는 기능 및 미관 개선을 위하여 형태, 재질 및 사양이 실시공시 인허가 협의 완료 후 변경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 창호는 향후 협력업체 선정결과에 따라 개폐 방향, 제조사, 프레임, 유리, 손잡이 등의 사양 및 규격이 변동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 창호는 내풍압 구조검토 등의 결과에 따라 세대별, 층별, 위치별로 창호규격 및 사양(유리, 창틀)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창호의 개폐방향, 날개벽체 및 분할이 변경될 수 있음.
 - 발코니 비확장 선택 시 냉매배관, 조명기구 및 배선기구의 TYPE, 배치 및 설치는 확장형 세대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발코니 확장형 평면에서 비확장으로 남아있는 발코니 창호는 단창으로 설치되며, 확장하지 않는 발코니는 단열공간이 아니므로 단열재 시공이 되지 않으며, 발코니 비확장 평면으로 시공됨. (결로 및 곰팡이 등의 하자발생 시 하자보수 대상에서 제외됨)
 - 발코니 확장(별도품목)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비확장 세대는 입주 전 외부창호 설치 후 입주하여야 발코니 우수 침투에 대한 문제가 없음.
 - 발코니 확장에 따른 일부 배선기구 및 조명기구의 사양, 수량, 종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 시 세대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천장 환기구 위치, 에어컨 매립배관 위치, 세대 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고, 실내습도 등 생활습관에 따라 발코니 창호 및 유리, 기타 확장부위에 결로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니 입주자께서 환기 등으로 예방하셔야 하며(주기적인 실내 환기는 결로 발생 예방에 큰 도움이 됨), 이로 인한 하자발생 시 하자보수 대상에서 제외됨.
 - 단위세대의 설계 당시 소비자의 성향 등을 고려해 발코니 확장을 감안하여 설계하였으며, 발코니 확장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 단위세대의 공간 활용도가 저하될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람.
 - 발코니 확장에 따른 이중새시 및 단열재의 추가 설치로 발코니 실사용 면적이 줄어들 수 있음.
 - 발코니 확장 세대는 인접세대 또는 상부세대가 비확장일 경우와 세대내 비확장 발코니에 면하는 경우 추가 단열재 시공으로 인하여 침실 및 거실 발코니 벽체 부위에 단차가 생길 수 있음.
 - 발코니 비확장 세대는 인접세대 또는 상부세대가 확장일 경우와 세대내 발코니에 면하는 경우 추가 단열재 시공 등으로 인하여 실사용 공간이 줄어들 수 있음.
 - 발코니 확장세대의 상부 세대가 비확장일 경우 단열재 추가설치 등으로 인한 벽체 돌출, 우물천정 사이즈 감소, 조명의 위치와 상태가 변경될 수 있음.
 - 각 세대의 발코니에 필요 시 선풍통 및 드레인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인접 비확장 세대의 발코니 사용 또는 우천으로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발코니에는 드레인 및 선풍통이 설치되는 발코니와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가 있으며, 위치와 개수는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으며, 드레인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 내에서는 물을 사용하실 수 없음.
 - 발코니에 환기시스템이 설치될 수 있으며 설치에 따른 배관노출, 건축 입면 및 내부마감(창호, 외부그릴, 전등 사이즈 및 위치)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 및 창호는 기능 및 미관 개선을 위하여 형태, 재질 및 사양이 실시공시 인허가 협의 완료 후 변경될 수 있음.
 - 주방(식당) 우물천정은 발코니 확장 시에만 설치(59A, 76A 제외)되며, 유상옵션 선택 여부에 따라 주방(식당) 우물천정의 형태 및 크기, 등기구 설치개수 및 위치가 상이함. (발코니 확장 미선택 시 주방(식당) 우물천정은 설치되지 않음.)
- ※공동주택의 발코니 설계 및 구조변경기준 - 「건축법시행령」 제2조제14호, 제46조제4항,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공동주택의 발코니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기준 내에서 구조 변경할 수 있음.

■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별도계약) ※발코니 확장 시 선택 가능

(1)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단위: 원, 부가가치세 포함)

주택형	주택형	설치대수	설치 위치	공급금액	계약금	잔금	비고
					계약시(10%)	입주지정일(90%)	
59A, 59C	선택1	2대	거실+침실1(안방)	3,200,000	320,000	2,880,000	삼성
	선택2	4대	거실+침실1(안방)+침실2+침실3	5,400,000	540,000	4,860,000	
59B	선택1	2대	거실+침실1(안방)	3,600,000	360,000	3,240,000	
	선택2	3대	거실+침실1(안방)+침실2	4,700,000	470,000	4,230,000	
76A, 76B	선택1	3대	거실+주방+침실1(안방)	4,300,000	430,000	3,870,000	
	선택2	5대	거실+주방+침실1(안방)+침실2+침실3	6,700,000	670,000	6,030,000	
84A, 84B, 84C, 84D	선택1	3대	거실+주방+침실1(안방)	4,400,000	440,000	3,960,000	
	선택2	5대	거실+주방+침실1(안방)+침실2+침실3	6,800,000	680,000	6,120,000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선택은 발코니 확장을 선택한 세대에 한하여 공급하며 계약 후 선택사항 변경이 불가함.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미선택 시 거실 스탠드형 및 안방 벽걸이형 에어컨 각 1개소 설치 가능하도록 냉매매립배관 및 냉매배관 연결용 매립박스가 기본 제공됨. (에어컨 장비는 제외)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설치 위치는 상기 선택사항(선택1, 선택2)별 위치에 설치되며,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 지정을 할 수 없음.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공사비는 본 아파트(공동주택) 공급금액과 별도이며,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음.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공사비는 기본으로 제공되는 냉매배관(거실, 안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이 정산된 금액으로 제시됨.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설치 위치는 세대별로 차이가 있음.
- 실외기실 쪽의 냉매배관은 노출배관으로 시공됨.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선택에 따라 각 세대내 실외기실에는 에어컨 실외기가 설치되며, 이로 인한 실외기실 공간이 협소해 질 수 있음.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실외기는 선택한 실내기 소요 용량에 맞는 제품이 설치됨.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선택 시 세대 내 냉매박스, 냉매매립배관 및 배관연결구는 시공되지 않으므로 스탠드형 및 벽걸이형 에어컨을 추가 설치할 수 없음.
(시스템에어컨 옵션 공급금액은 냉매매립배관 비용을 차감하여 산정된 가격임)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선택 시 설치되는 실외기에 스탠드형 및 벽걸이형 에어컨을 연결하여 가동할 수 없음.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은 외부에서 인터넷을 이용해 제어할 수 없음.
- 리모콘은 실내기 1대당 1개가 제공되며, 추후 유선 미설치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시스템에어컨은 공기청정 등 별도의 부가기능이 제공되지 않으며 공급계약 전 제품에 대해 확인하여야 함.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선택 시, 시스템에어컨 제조사 및 모델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견본주택에 설치된 천장형 냉·난방기기는 견본주택용 전시용품으로 본 공사 시 설치되는 장비 사양 및 위치와는 무관하여 변경될 수 있음.
- ‘공동주택분양가격산정 등에 관한 시행지침’에 따라 설치되는 시스템에어컨의 유형, 제품 등은 확정된 것이 아니며, 관계사의 도산, 품질 및 현장시공 상황 등에 따라 입주 시 동질, 동가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음.

(2) 추가선택품목(가전/가구)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항목	주택형	구성	공급금액	계약금	잔금	
				계약시(10%)	입주지정일(90%)	
본(本)다이닝	76A	홈바형 다이닝 수납장 + 복도팬트리	2,600,000	260,000	2,340,000	
	84A	홈바형 다이닝 수납장 단품	1,800,000	180,000	1,620,000	
	84B	홈바형 다이닝 수납장 + 주방팬트리 + 복도팬트리	2,700,000	270,000	2,430,000	
	84C		2,600,000	260,000	2,340,000	
안방 붙박이장	59A, 59B, 59C	슬라이딩 유리도어 / W3,000	1,800,000	180,000	1,620,000	
	76A, 76B	슬라이딩 유리도어 / W3,300	2,200,000	220,000	1,980,000	
	84A, 84B, 84C, 84D	슬라이딩 유리도어 / W3,600	2,700,000	270,000	2,430,000	
자녀방 붙박이장	59A, 59C	침실3 붙박이장 (서랍형)	600,000	60,000	540,000	
	76A, 76B, 84A	침실3 붙박이장 (서랍형)	800,000	80,000	720,000	
	84B, 84D	침실2 붙박이장 (서랍형)	800,000	80,000	720,000	
	84C	침실2 붙박이장 (서랍형)	1,000,000	100,000	900,000	
수납강화	59B	복도팬트리	300,000	30,000	270,000	
	76B	침실2, 침실3 드레스룸장	1,100,000	110,000	990,000	
	84A	침실3 드레스룸장 + 복도팬트리	1,300,000	130,000	1,170,000	
	84D	침실2 드레스룸장 + 복도팬트리	1,300,000	130,000	1,170,000	
스타일링 바스	84A, 84B, 84D	건식 세면공간 + 수납장 + 조명형 거울 + 디자인 벽판넬	1,700,000	170,000	1,530,000	
스마트 감성조명 더샵 루미나 옵션	59A, 59B, 59C	거실 우물천정 내 간접조명 + 거실, 침실 감성조명	1,700,000	170,000	1,530,000	
	76A, 76B		1,800,000	180,000	1,620,000	
	84A, 84B, 84C, 84D		2,000,000	200,000	1,800,000	
키친 패키지 1	삼성	59B	전기오븐 + 수납장	600,000	60,000	540,000
		59A, 59C, 76A, 76B, 84A, 84B, 84C, 84D	비김치냉장고 + 전기오븐 + 수납장	2,300,000	230,000	2,070,000
	LG	59B	전기오븐 + 수납장	600,000	60,000	540,000
		59A, 59C, 76A, 76B, 84A, 84B, 84C, 84D	비김치냉장고 + 전기오븐 + 수납장	2,300,000	230,000	2,070,000
키친 패키지 2	삼성	59A, 59C, 76A, 76B, 84A, 84B, 84C, 84D	비스포크(냉장/변온/김치) + 전기오븐 + 수납장	6,600,000	660,000	5,940,000
		59B	비스포크(냉장/변온) + 전기오븐 + 수납장	4,500,000	450,000	4,050,000
가사편의 패키지	삼성	전타입	식기세척기(삼성) + 음식물처리기(지비앤디)	2,000,000	200,000	1,800,000
	LG		식기세척기(LG) + 음식물처리기(지비앤디)	2,000,000	200,000	1,800,000

- 가구 추가선택품목 선택 시 설치 주택형 및 타입에 따라 색상 및 형태, 길이가 상이하게 설치됨.
- 스마트 감성조명 더샵 루미나 기능은 거실등, 안방등, 침실등이 색온도와 밝기가 제어되고, 거실 우물천정에 간접 LED 조명(밝기만 제어)이 적용 (알파룸은 감성조명 옵션 제외)
- 거실은 월패드, 침실은 통합스위치에서 제어되며, 더샵 전용 스마트폰 APP. 및 카카오톡 음성인식으로도 제어 가능함. (단, 음성인식 제어 기능은 카카오톡 플랫폼 운영정책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 자녀방 붙박이장 추가선택품목 선택 시 서랍형(수납구성 선택 불가)으로 설치되며, 미러 세대에 따라 좌/우 타입이 변경될 수 있음.
- 추가선택품목 선택 여부에 따라 공간 간 벽체 두께가 변경될 수 있음.
- 가전제품이 포함된 추가선택품목 선택 시 세대 내 구조에 따라 설치 위치가 상이할 수 있음.
- 스타일링 바스 추가선택품목 선택 시 건식 세면공간에는 바닥 배수 트랜치가 설치되지 않으며, 마루 바닥재가 설치됨.
- 스타일링 바스 추가선택품목 선택 여부에 따라 욕실 및 캐아룸 도어 위치, 욕실 사이즈, 욕실장의 형태와 구성, 욕실 악세서리 설치품목 및 위치, 거울 형태, 조명설치 여부, 수납장 구성, 상판 석재 등이 변경됨.
- 84D 타입의 수납강화 추가선택품목 선택 시 기본형과 침실 및 알파룸 폭이 상이함.
- 빌트인 김치냉장고 추가선택품목 선택 시,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김치냉장고를 위한 별도의 공간은 제공되지 않음.

(3)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공급대금 납부방법 및 납부일정

구분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추가선택품목		추후 별도 통지 예정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및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가전/가구 등) 대금의 납부계좌 및 납부일정은 추후 별도 공급계약 시 안내 예정임.
- 추가선택품목의 계약 내용 및 계약금 납부일정과 납부금액은 시공사가 적의 조정한 별도 공급계약서에 준함.
- 착오 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 시 당사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4)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유의사항

- 상기 추가선택품목은 발코니 확장 세대에 한해 선택이 가능함.
- 상기 추가선택품목 계약은 공동주택 공급계약 및 발코니 확장 계약과는 별도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상기 추가선택품목 판매가는 공동주택 공급금액 및 발코니 확장금액과는 별도로이며,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음.
- 상기 추가선택품목에는 취득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입주 후 관할관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음.
- 상기 추가선택품목 설치공사는 입주자모집공고 시 공개된 금액의 총액 범위 내에서 사업주체가 정한 기준에 따라 별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 상기 추가선택품목에 따라 일부 배선기구 및 조명기구의 사양, 수량, 종, 위치가 변경될 수 있음.
- 상기 제품의 신청형별 설치 위치 등 세부사항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상기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계약 시점 모델 확정 등의 사유로 등급 이상으로 적용, 변경될 수 있으며, 주택형별 설치 위치 등 세부사항은 계약체결 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 견본주택 내에는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을 보여드리기 위하여 타입별로 상이한 브랜드 제품을 전시하고 있으며, 선택하는 브랜드 제품에 따라 설치방법 및 설치형태 등이 달라질 수 있음.
- 제시된 제품은 비교, 확인할 수 있도록 사진 등을 전시할 예정임.
- 본 공고 외 추가선택품목 설치에 관한 내용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및 시행지침' 에 따름.

VIII 단지 여건 및 유의사항

※아래의 유의사항에 대하여 반드시 확인 후 청약 및 계약하시길 바라며, 추후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지구단위계획 및 단지 외부 여건

- 고산1지구 도시관리계획 지구 내 기반시설(도로, 상하수도, 공원, 녹지, 학교, 도서관 등)은 개발계획변경 등에 따라 사업추진 중 일부 변경, 취소,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시기 및 사용검사 완료가 지연될 수 있음.
- 본 사업지구(고산1지구) 및 인근 지구(태전지구, 고산2지구, 고산3지구) 도시관리계획 지구의 토지이용계획은 개발(실시)계획 및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등으로 사업추진과정에서 변경, 조정될 수 있음.
- 본 아파트 인근에는 다수의 주택건설사업, 도시계획도로 공사 등의 기반시설 공사가 진행예정으로 이에 따라 소음 및 분진, 진동이 발생할 수 있음.
- 광역도로 등 광역교통망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계획하여 진행하는 사항으로 일부 변경 및 취소, 개통지연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귀책사유가 없음.
- 본 사업지구 인근으로 세종~포천고속도로가 공사 진행 중으로 이에 대한 사항을 청약 및 계약 전 견본주택 및 현장 방문을 통하여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본 아파트 인근의 타 지구(고산2지구, 고산3지구) 및 타 단지(C1블록)의 신설, 확장 도로 및 기반시설은 타 지구 사업주체의 추진일정 및 관계기관의 협의 결과 등에 따라 개설 시기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본 아파트 내 및 인근의 신설, 확장 도로는 인·허가 추진일정 및 관계기관 협의 결과 등에 따라 도로 선형, 개설 시기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주변의 도시계획시설(어린이공원, 근린공원, 도로, 학교, 완충녹지, 경관녹지, 주차장, 도서관 등)은 계획 추진 중인 예정사항을 표시한 것으로, 인·허가 진행 및 국가시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남측 경관녹지는 단지 외부시설이며, 시행주체가 계획, 추진 중인 예정사항으로 관련 기관의 인·허가 진행 및 국가시책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고산1지구 가스정압시설은 본 아파트(C2블록) 남측 경관녹지에 설치될 예정이며, 인·허가 협의에 따라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
- 본 아파트에 면한 인접 대지 레벨은 향후 변동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단지 경계부의 옹벽 및 사면의 종류, 노출 범위, 높이, 길이, 형태 등이 달라질 수 있음.
- 단지 내 옹벽구조물 및 시설물의 안전 및 시공 구조상 보강시설물에 따른 점용비용이 발생 가능함.
- 본 아파트 인근에 개발사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환경변화 및 공사로 인한 생활 불편이 야기될 수 있으며, 이 부분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 바람.
- 본 사업지 초등학교의 통학구역,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교는 경기도 광주하남교육지원청에 문의 바람.
- 사업지구 내 초등학교부지 관련 당 사업자는 학교부지만 조성하여 경기도 광주하남교육지원청에 기부채납 예정이며, 학교설립 일정은 경기도 광주하남교육지원청에 문의 필요.
- 사업지구 내 고등학교부지 관련 당 사업자는 학교부지만 조성하여 경기도교육청에 매각 예정이며, 학교설립 여부 및 추진은 해당 청에서 결정되며, 당 사업지의 준공 및 입주 시 학교설립이 지연되거나 취소될 수 있음.
- 경기도교육청 협의 결과 현재 고산1지구 내 고등학교 부지에 대한 학교설립계획은 수립되어 있지 않음.
- 북측 고등학교부지에 학교 건립 시 인접 주동은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사업지구 내 유치원부지 관련 당 사업자는 유치원부지만 조성하여 경기도 광주하남교육지원청에 매각예정이며, 유치원 설립의 규모, 시기 등 제반 사항은 당 사업자와 무관하며, 입주 시 해당 유치원의 설립이 지연되거나 취소될 수 있음.
- 영유아보육법개정(18.12.24.)에 따라 당 사업지는 「주택법」 제35조 공동주택으로 단지 내 어린이집은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설립 추진함을 원칙으로 하며, 입주자 등의 과반수 이상 반대 또는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하지 않을 수 있음.
- 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의 의무 설치 운영을 위해 추후 사용검사 신청 전까지 관할 지자체와 협약을 체결할 예정임. (다만, 입주(예정)자 등의 과반수가 서면으로 이를 동의하지 않을 경우 국공립어린이집이 설치되지 않을 수 있음)
- 당해지구 내 학생 배치계획은 개발계획의 변경, 학생수용여건 변화 등에 의해 추후 변경될 수 있고, 동 계획은 향후 공동주택 입주시기 및 학생수 등을 감안하여 해당 관청에서 결정하는 사항이므로 자세한 사항은 해당 관할청에 반드시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람.
- 향후 당 사업지구 내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이 변경 절차를 진행할 경우, 관계기관 협의 및 국가시책 등으로 계획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일체의 민원을 제기할 수 없음을 양지하시기 바람.
- 본 아파트(C2블록) 남측의 도로 및 경관녹지 지하에 재해 예방을 위한 저류조가 설치될 예정임.
- 당 사업지구 내 도시계획도로의 레벨 및 시설물은 실시계획인가 및 관련 심의 등 인·허가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최종 인·허가를 득한 사항에 적합하게 조성될 예정임.
- 당 사업지구는 북측이 높고 남측이 낮은 경사지대에 위치하고 있어, 아파트 단지 및 각종 도시계획시설은 경사지형을 감안하여 옹벽, 산벽, 사면 등이 발생하며 이와 관련하여 사업시행자는 최종 인·허가를 득한 사항대로 공사 진행 예정임.
- 당 사업지 동측에 십여기의 분묘가 위치하고 있어 각동 및 세대에서 분묘가 보이며, 사전에 현장 및 위성사진을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에 따른 민원을 제기할 수 없음. 또한, 주변 임야 및 토지의 소유자가 분묘를 생성하는 것에 대하여 민원 및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당 사업지 주변 토지에 개발계획은 당 사업자와 무관하며, 개별 건축허가, 개발행위 등의 진행 사항은 개별 확인이 필요한 사항임.
- 당 사업시행자는 사업지구 내 유치원 부지조성, 초등학교 부지조성, 고등학교 부지조성, 녹지조성, 공원조성, 주차장부지 조성의 개발을 담당하고 있으며, 기타시설의 경우 개별토지 소유주에 의하여 개발될 예정으로 입주 시기에 개발 완료 여부는 개별 사업주체에 따라 상이 함.
- 단지 남측의 경관녹지와 아파트 단지는 별도의 연결통로가 계획되어 있지 않음.
- 고산1지구 서측에 동서울 T/L 송전선로 지중화 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사업추진 중 일부 변경, 취소, 지연될 수 있음.
- 고산2지구 사업일정에 따라 고산1지구 남서측에 예정된 임시철타의 설치 유무 및 철거 시기는 변경될 수 있음
- 사업시행자가 부지조성 후 매각/기부채납하는 시설부지의 개발 및 시설설립 등의 일정은 관련 기관에서 확정하며, 추후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음.
- 광역도로 및 광역교통망 등 도시계획에 의한 기반시설 설치하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계획하여 진행하는 사항으로 일부 변경 및 취소, 지연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귀책사유가 없음.

■ 단지 내부 여건

● 일반공통

- 세대별 계약면적은 소수점 이하 단수 조정으로登記면적이 상이 할 수 있음.
- 당 사업에 사용된 사업주체의 브랜드 등은 향후 회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공동주택과 근린생활시설의 대지지분은 각각의 시설별 전용면적 비율로 분할 하였으며, 아파트 각세대별 대지지분은 전용면적 비율로 분할하되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버림하였고, 각각의 버림에 대한 오차는 적정 할애하였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또한, 준공 시 확정측량으로 인한 대지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음.
- 세대 당 공급면적, 계약면적 및 대지지분은 법령에 따른 공부절차, 즉 준공 시 확정측량으로 인한 대지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며, 이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의 의거하여 지적확정측량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발생하는 대지지분의 감소는 별도의 분양대금을 정산하지 않음.
- 대지경계 및 면적은 최종 측량 성과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사용승인 시 대지경계 및 지적 확정에 따른 대지면적 정산 처리 시 입주자는 동의하여야 함.
- 본 아파트의 내부 구조벽체 제거 및 변경은 불가하며, 이를 어길 경우, 민형사상 처벌을 받게 됨.
- 소유권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특히 대지의 이전등기는 상당기간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물등기와 대지권 등기를 별도로 이행하여야 함)
- 「실내 공기질 관리법」 제9조에 의거 공동주택 실내 공기질 측정결과를 입주민의 확인이 용이한 곳에 공고할 예정임.
- 단지 배치상 동별, 향별, 층별 차이 및 세대 상호간의 향, 층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환기권, 사생활권을 일부 침해당할 수 있으며, 배치도 상 층수 혼선이 있을 경우 동·호수 배치가 우선함. 계약자는 동·호수 위치를 사전에 충분히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단지 경계부는 도로와의 높이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타 지역의 타사 또는 당사 분양아파트의 마감 사양, 설치 부대편의시설 및 조경시설 등을 본 아파트와 비교하여 견본주택 및 인·허가 도서에서 제시한 사항 외에 추가적인 마감 사양 및 부대편의시설, 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음.
- 주거동 입면 계획상 설치된 장식물딩 등으로 인해 일부 세대는 음영 발생 등 일조 침해를 받을 수 있음.
- 동일한 평면이라도 위치에 따라 입면 재료가 상이하니 계약 전 필히 세대 입면을 확인하기 바람. (입면 재료에 따라 창호 상세가 일부 상이할 수 있음)
- 단지 내 옥외 조경공간은 모든 입주민을 위한 공동사용 공간임.
- 옥외경관조명, 조경의 운영 및 관리에 따른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관리비 부과기준 등 일체의 비용은 관리규약에 따라 입주자 부담으로 운영됨.
- 외부 시설물 가로등, 가로수 등은 공동주택과 비주거시설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물이며 공동으로 관리비를 정산함.
- 본 아파트의 최초 관리업체(관리사무소, 입주관리업체 등)는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가 선정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건축물 내에는 무선통신 안테나 및 이동통신 기간사업자 중계기가 설치될 수 있으며, 추후 설치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발전기 배기 루버 설치로 비상 발전기 운전 때 따른 소음, 냄새,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향후 예비 소음 평가 실시 후 결과에 따라 방음벽이 설치될 수 있음.
- 부지 내 옹벽 지지를 위해 시공한 지하 매설물에 대한 영구 점용료 발생 시 입주자에게 납부 의무가 있음.
- 도시가스 원격검침계량기(AMR) 설치 시 교체 비용은 가스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함.
- 배관 동파 방지를 위해 열선이 설치될 수 있으며, 사용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은 관리비에 포함하여 부과됨.
- 구조 형식상 지하주차장의 일부 주동 직하부 주차구획은 기동 및 벽 등으로 인하여 차량 도어 개폐 시 간섭이 발생할 수 있음.
- 본 주택은 공동주택 통합 경비시스템(용역 경비)이 적용될 수 있는 아파트이며, 이와 관련된 제반 비용은 매월 입주자 관리비에 합산되어 부과됨.
- 공장생산 자재(타일, 인조석, 엔지니어드스톤 등) 및 천연자재는 자재 특성상 일정한 무늬나 색상의 공급이 어려우므로 자재 자체의 품질상 하자의 판단은 KS기준에 의함.
- 견본주택 내 스프링클러 및 소방감지기는 견본주택 소화 시설물로서 본 공사 시 설계도면 및 화재안전기준에 의해 시공됨. (본 공사 시 상기 사항 적용에 따른 일부 마감 사양, 우물천장, 커튼박스, PL창호, 주방가구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의해 내진설계가 되어있으며, 동 기준에 의한 내진 능력은 수정 메르칼리 등급 VII-0.169g(207, 211동), VII-0.197g(206, 208, 209, 210동), VII-0.204g(201~205동, 212, 213동) 임.
- 공동주택의 특성상 층간, 세대 간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본 아파트는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인정 및 관리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611호)을 준수하며 층간소음·진동 등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바닥충격음 성능등급은 국가 공인 표준시험동에서 시험한 완충재의 시험성적서에 따른 등급이므로, 추후 실제 세대의 성과 다를 수 있음.
- 본 아파트는 단지 배치계획에 따라 건물 상호 간섭, 지형물 및 기타 구조물로 인한 조망, 프라이버시가 침해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견본주택에 설치된 모형 등의 자료를 통해 충분히 확인하고 계약체결을 하여야 함.
- 수목의 생육과 조기 활착을 위해 식재 시 뿌리분에 감겨진 철사, 고무바 등은 일부 제거되지 않고 존치될 수 있으며, 이는 수목 고사와 전혀 관련이 없는 사항으로 이에 대해 이의 또는 민원을 제기할 수 없음.
- 카탈로그 등 홍보물에 사용된 조감도, 단지배치도, 조경 컷, 단위세대는 '20년 12월 사업계획승인도면 기준으로 작성되었음.
- 카탈로그 등 홍보물에 사용된 이미지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컷으로 실제 시공 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람.
- 창호의 높이 및 위치는 견본주택에 설치된 모형 등의 자료를 통해 충분히 확인하고 계약체결을 하여야 함.
- 일부세대는 공사 시행 중에 품질관리를 위하여 샘플하우스로 사용될 수 있음.
- 단지 명칭 및 동 번호는 관계기관의 심의 결과에 따라 공급 시의 명칭과 상이 할 수 있으며, 추후 변경 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견본주택 내에는 분양가 포함 품목과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전시품 등이 혼합되어 시공되어 있으나, 본 공사 시에는 전시품은 설치되지 않으며,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은 계약 내용에 따라 시공됨.
- 각 주택형별 단위세대 구조에 따라 발코니 면적 및 확장면적에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여야 하며,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 내 근린생활시설은 별도의 분양시설로서 공동주택단지와 별도구획이 불가하므로 향후 대지지분에 따른 구획 및 분할을 요청할 수 없으며 지상 부위의 차로 등은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로서 일체의 점유권 등을 주장할 수 없음.
- 입주민에게 인계된 이후 발생하는 옥외공간의 경관 및 모든 시설의 관리책임 및 이에 따른 부담비용은 입주민에게 있음.
- 개인 부주의로 인한 옥외공간에서의 안전사고 발생 시에는 입주민에게 책임이 있음.
- 단지 내 조경시설 중 물놀이장은 어린이 물놀이장이며, 준공 후 사용 시 관리주체가 안전요원을 배치할 의무가 있으며, 물놀이장을 포함하여 단지 내 설치된 수경시설은 인계 후 안전, 보건, 수질관리는 관리 주체의 의무이며, 관리소홀로 인한 냄새, 오염수, 해충, 개구리 소음 등에 대하여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조감도, 세대 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이나 설계관련 도서의 내용 중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오기 및 성능개선과 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 공사 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설계의 경미한 변경에 대하여 사업주체의 결정에 따르며, 제반 권리를 사업주체에게 위탁하는데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함.
- 일부 세대의 경우 서비스면적 확보 및 발코니 확장을 고려한 평면설계로 견본주택과 설계도, 세대별 유니트 모형 등의 자료를 통하여 충분히 확인하고 청약 및 계약체결을 하여야 함.
- 각 세대의 배치에 따라 조망과 향, 일조량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각 세대 중 인접 동 및 인접 단지에 의한 시각적 간섭 발생이 있음을 확인한 후 청약 및 계약체결을 하여야 함.

- 본 아파트 일조 환경상 일부 세대의 경우 일조 수인한도가 만족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견본주택 내 모형도 및 단지배치도와 시뮬레이션 결과표를 참고하여 청약 및 계약을 진행하시기 바라며, 본 사항으로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수인한도 세대수 현황 (*평가대상 건물의 일조환경 평가를 위해 각 세대별 거실에 측정점을 설정하여 일조시간을 산출)					
동	세대수	총 일조 4시간 이상 확보세대수 (08:00~16:00)	연속 일조 2시간 이상 확보세대수 (09:00~15:00)	수인한도	
				만족 세대수	만족 비율(%)
201	121	87	106	107	88.43%
202	121	46	76	77	63.64%
203	121	42	62	62	51.24%
204	116	54	57	59	50.86%
205	115	115	115	115	100.00%
206	88	88	88	88	100.00%
207	111	53	57	57	51.35%
208	88	88	88	88	100.00%
209	115	115	115	115	100.00%
210	116	62	65	66	56.90%
211	121	45	97	98	80.99%
212	121	43	89	89	73.55%
213	121	44	57	61	50.41%
세대수합	1,475	882	1,072	1,082	-
확보비율	-	59.80%	72.68%	73.36%	

출처: ㈜에코백스이엔씨건축사사무소, 경기 광주오포 고산1지구 C2블록 공동주택 '단지 내 일조환경 분석보고서'

- 당첨자가 계약체결 시 견본주택, 평면도, 배치도 등 현황 관계를 확인하고 계약체결 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는 계약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음.
- 견본주택의 연출용 시공 부분 또는 카탈로그, 기타 홍보물 상 조감도 또는 사진은 당사에서 연출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사업계획승인도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견본주택에 설치된 단지모형 및 단위세대는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단지 주변 현황, 공사 시 필요한 설비 기기 및 출입문 등은 표현되지 않음.
- 견본주택에 시공된 제품은 자재의 품질, 품귀, 제조회사의 도산 등의 부득이한 경우에는 동질 및 등급 이상의 타사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음.
- 선택형 품목의 경우 분양 후 일정 시점이 지나면 본공사 일정을 감안하여 선택형 중 1개 품목으로 일괄 시공되며 시공되는 품목은 그 시점에 선택현황 및 공사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예정임.
- 선택형 품목의 경우 최초 계약자의 선택에 의해 결정되는 품목으로 시공이 되며 이후에는 배선, 배관 등 관련 설비공사에 따라 선택 변경이 불가함.
- 계약 후 주방가구, 일반가구 규격 및 배치 불만, 전자제품 사용 불편 등 견본주택에 설치된 배치 평면 및 가구류에 대하여 변경을 요구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주택 특성상 세대 내 가구배치, 평면배치 등을 입주자 개인의 기호에 맞게 변경할 수 없으며, 내부시설물의 변경 필요 시 준공 및 시설물 인수인계 후 입주자 개인이 직접 시행하여야 함.
- 전기차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전기차 충전기는 급속 6대, 완속 6대를 지하주차장 내에 설치하며, 입주 후 기기에 대한 유지, 관리, 보수 및 전기세 납부는 입주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관리해야 함.
- 외부계단 및 엘리베이터 인접세대는 소음발생 및 프라이버시 침해가 있을 수 있음.
- 204동, 205동에 인접하여 외부계단이 설치되며, 해당 시설물 이용 시 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음.
- 206동은 측벽에 외부계단 및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해당 시설물 이용에 따른 소음발생 및 프라이버시 침해가 있을 수 있음.
- 지하주차장 램프 인접 주동은 하부에 위치한 세대 내에서 램프 지붕이 보일 수 있으며, 지하주차장 램프 이용에 따른 소음, 눈부심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동 조합으로 인한 요철과 입면의 장식 등으로 인하여 일조, 조망 및 프라이버시 침해가 있을 수 있음.
- 지붕재로 및 형태/구조는 실시공시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본 아파트에 적용된 각종 입면 및 마감, 색채에 대한 디자인 일체는 당사의 고유한 자산이므로 인-허가 등 중대한 변경 사유 발생 및 마감 수준 저하가 아닌 경우 입주자에게 별도의 동의절차를 받지 않음.
- 「주택법 시행규칙」 제13조제3항에 해당되지 않는 설계변경 및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며, 사업주체가 경미한 사항의 변경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
- 실 단지 측량 결과, 관련법규의 변경, 인-허가의 변경, 사업계획승인변경 및 신고, 대지지분 정리 등에 따라 본 계약 물건의 견본주택, 단지 배치, 단지 내 도로 선형, 조경(수목, 시설물, 포장 등), 동·호수별 위치, 각종 인쇄물과 모형도 상의 구획선, 단지 내 시설물의 위치, 설계도면 등의 표시, 대지지분 및 분양면적 등이 계약체결일 이후 입주 시까지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공동주택 및 지하주차장의 기초구조는 굴토 후 지내력시험 결과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으며, 설계변경 필요 시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준공 전·후 개인 또는 임의 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 내·외 공용부분 시설물 등)을 요구할 수 없으며, 만약 사용승인 전·후 최종 인-허가도서 이외의 사항을 요구할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함.
- 녹색건축인증 등 관계기관의 협의 과정에서 각종 조경 및 시설물 계획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내에 설치되는 미술장식품은 미술작품설치 계획 심의를 득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위치, 형태 등이 심의 결과에 따라 결정됨.

- 본 건본주택은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되어 있으며, 목창호류, 가구류, 바닥재 등 마감자재의 색상, 디자인, 재질 등은 실제 시공 시 건본주택과 다소 상이 할 수 있음.
- 본 건본주택 건립 타입(59B, 84B, 84D) 외 건본주택 미건립 타입(59A, 59C, 76A, 76B, 84A, 84C)의 내부 치수 및 마감재의 사양은 건본주택 건립 타입과 상이 할 수 있으며,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본 건본주택의 연출용 시공 부분 또는 카탈로그, 기타 홍보물 상 조감도 또는 사진은 당사에서 연출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사업계획승인도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본 건본주택 내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인승, 속도, 탑승 위치 등)은 사업계획승인도서에 준하며, 이와 관련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본 건본주택에 설치된 단지모형, 미건립세대 모형 및 단위세대는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대지 주변 현황, 공사 시 필요한 설비기기, 배관, 배선 등과 출입문은 표현되지 않음.
- 본 건본주택 단위세대 내부에 설치된 인테리어 소품가구(커튼, 침대, 쇼파 등), 디스플레이 가전제품, 기타 전시용품 등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한 연출용으로 입주 시 제공되지 않음. (분양가 미포함)
- 본 건본주택에 설치된 창호(프레임, 유리 등)는 건본주택 설치를 위해 생산된 제품으로 본 공사 시 변경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프레임 및 손잡이 등의 하드웨어는 다소 상이 할 수 있음.
- 본 건본주택은 일정기간 공개 후 관계규정에 의거 폐쇄 또는 철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철거 전 건본주택 내부의 평면설계 및 마감자재 등은 촬영하여 보관할 예정입니다.
- 본 건본주택에 설치된 감지기, 유도등, 스프링클러 헤드의 위치 및 개수는 본 공사와 무관하며, 실시공사 소방법에 맞추어 설치됨.
- 본 건본주택에 설치된 조명기구, 콘센트, 스위치의 제품사양 및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
- 본 건본주택에 설치된 전열교환기, 온도조절기 및 바닥배수구의 제품사양 및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
- 입주 후 입주민 불편해소(입주관리, 하자접수 및 보수)를 위해 공용공간을 시공사에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음.
- 212동 지하1층에 게스트하우스가 위치하여 입주민들의 활용에 따라 해당동 및 인접동에 소음이 유발될 수 있음.
- 아파트의 구조 및 성능개선을 위하여 전용면적(공용면적 제외)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내부 구조의 위치 또는 면적이 변경될 수 있음.

● 세대 내부

- 본인 동·호수 지정 시 동일평형이나 건본주택과 달리 평면이 좌우대칭이 될 수 있으니 청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 현관 신발장, 창고장, 팬트리, 주방가구, 각실 불박이장, 드레스룸, 욕실장 등 수납공간의 크기와 형태 마감자재는 주택형별로 상이하므로 반드시 확인 바람에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계약자가 사용 또는 희망하는 가전제품(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김치냉장고 등 일체)의 용량 및 규격에 따라 세대 내 설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어 확인 바람에,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세대 내 가구설치 위치의 후면 및 하부는 최종마감재가 미설치되며 바탕면이 노출되나, 가구에 의해 가려지는 부분이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세대 내부 가구(불박이장, 주방가구, 욕실장 등)설치 부위의 비 노출면(천장, 벽체, 바닥)은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음.
(예, 욕실장 후면 타일 미시공, 불박이장/신발장 및 주방가구 천장/후면/측면 마감재 미시공 등)
- 단위세대 마감재 내용은 주택형별, 선택형 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으니 건본주택 내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인테리어 마감재, 가구, 전기 설비 등 시설물이 설치되면서 일부 사(死)공간이 발생할 수 있음.
- 세대 내 욕실 단차는 바닥 구배 시공으로 인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침실 내부로 물 넘김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계되었고, 욕실 출입 시 문짝에 의한 신발 걸림이 있을 수 있음.
- 세대 내 욕실 천장높이는 바닥 타일의 마감 구배와 천장 내 설비배관 설치 등에 의해 도면상의 치수와 달리 일부 오차가 발생할 수 있음.
- 렌지후드 환기 배관으로 인해 일부 상부장의 내부 형태가 변경될 수 있으며, 관련법규에 의거하여 주방가구 상부에 점검구가 설치됨.
- 온수 분배기가 설치되는 주방 하부장 내부는 공간이 협소할 수 있음. (공용홀에 설치되는 세대 분배기는 세대 전용 공간이 아님)
- 하향식피난구 및 실외기 설치공간은 단열재가 설치되지 않으며, 내·외부 온도 차에 의하여 결로 및 결빙으로 인한 마감재 손상이 있을 수 있음.
- 하향식피난구는 짝수층, 홀수층 교차 설치되어 층별로 위치가 상이 함.
- 하향식피난구 및 실외기 설치공간에 설치되는 전열교환기 및 비상등 등의 시설물은 짝수층, 홀수층 교차 설치되어 층별로 위치가 상이 함.
- 하향식피난구는 비상시 세대간 피난을 위해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 비상시 외에 임의 개폐 시 경보음 발생으로 인한 다른 세대가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용상 주의가 필요함.
- 발코니 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배관은 노출 배관(천정, 벽)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음.
- 외벽에 설치되는 난간과 새시의 형태 및 사양은 기능 및 미관개선을 위하여 형태 및 재질이 실시공사 변경될 수 있음.
- 발코니 및 욕실의 경우는 상부층 세대 배관점검 및 보수를 위해 부득이 하부층 세대에서 천장 배관을 점검할 수 있음.
- 세대 내 전열교환기는 세대 환기를 위해 설치된 장비로 동절기 환기를 하지 않을 경우, 장비 내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기적으로 전열교환기를 가동시켜 환기해 주시기 바람.
- 단위세대 내 부천반, 통신단자함, 조명기구, 콘센트, 월패드 및 배선 기구류, 다용도실과 발코니의 수전 및 트레인의 설치 위치는 본 공사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본 공사 시 침실 내부에 세대 전기통신함, 주방가구 하부장에 온수분배기로 인해 가구 내부 형태 및 수납이 변경될 수 있으며 타입에 따라 설치 위치가 일부 상이 할 수 있음.
- 식탁용 매입 및 직부 조명기구의 위치는 일반적으로 식탁이 놓일 것으로 예상되는 곳에 정하였으며, 위치변경은 불가함.
- 월패드 전화 수신기능은 국선전화에 한하여 가능함.
- 무선인터넷 사용을 위한 세대 내 무선AP가 설치되며, 인터넷회선 비용은 입주자 부담임.
- 에어컨 실외기실의 전원은 단상(1Ø x 220V x 60Hz)이 공급되므로 입주 후 제품 선정 시 유의해 주시기 바람.
- 세대 동체 감지기는 1층, 2층 및 최상층에만 적용됨.
- 에어컨 실외기의 용량 및 규격에 따라 실외기실 내 설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어 확인 바람에,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발코니에 전동 빨래건조대가 설치될 경우 발코니등이 설치되지 않음.
- 벽걸이TV 설치 시 전선, 케이블 등이 노출될 수 있음.
- 인덕션 하이브리드 쿡탑 용량은 3kW 기준으로 인프라를 구성하며, 입주자가 추후 3kW 이상의 제품으로 별도 설치할 경우 배선 및 배선기구의 변경은 입주자 부담임.
- 전 평형 욕실 내 샤워부스, 욕조 바닥에는 바닥난방이 설치되지 않음.
- 현관중문은 장식성 도어로 차음 및 단열을 위한 기능성 도어가 아니며, 도어 교체 시 흔들림,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현관중문은 설치 주택형 및 타입에 따라 색상 및 형태, 길이 등이 상이하게 설치되며, 현관중문 설치로 인해 현관창고 및 신발장의 형태, 길이가 달라질 수 있음.

- 세대 내 설치되는 석재류에는 이음매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음매의 개수 및 위치는 본공사 시 변경될 수 있음.
- 평면 구성에 따라 세대의 내부가 각 층 공용부에서 일부 들여다보일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59B타입에는 빨래건조대가 설치되지 않으며, 빨래 건조 등을 위한 별도의 비확장 발코니가 제공되지 않음.
- 필로티가 설치되어있는 일부 동의 필로티 옆, 상부층 세대는 외부 통행에 의한 소음 발생으로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으며, 필로티 위층의 바닥 난방의 효율이 떨어질 수 있음.
- 일부 세대의 경우, 세대 내 공용부 설비 배관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미관이 저해될 수 있음.
- 주방 및 거실의 천장에 도시가스 법규에 따라 가스누출탐지를 위한 점검구 또는 누출 점검이 가능한 설비가 설치될 수 있음.
- 건본주택 내 미건립 세대의 경우 76A, 84A, 84C는 84B와 76B는 84D와 59A, 59C는 59B와 마감재, 색상 등이 동일하며, 평면 형태 및 공간 크기에 따라 일부 마감 및 가구 구성, 길이, 색상의 조합 등이 상이할 수 있음.
- 건본주택 내 미건립 세대인 59A, 59C 타입에는 건립세대인 59B에 설치된 라이프스타일룸이 적용되지 않으며, 이와 관련된 마감(아트월, 우물천정, 등기구, 목창호 공틀 등)이 상이함.
- 건본주택 내 미건립 세대인 59A, 59C 타입에는 건립세대인 59B와 부부욕실 및 드레스룸 형태 및 구성이 상이하며, 이에 따라 일부 마감재가 변경됨.
- 건본주택 내 미건립 세대인 76B 타입에는 건립세대인 84D에 설치된 식당 맞은편 벽체의 아트월은 적용되지 않으며, 아트월 적용 부위 및 길이가 상이함.
- 59B 타입 주방에는 김치냉장고 설치공간이 확보되어 있지 않으며, 다용도실 내 설치 할 경우, 가전제품의 형태에 따라 외부창호 등과 간섭이 발생할 수 있음.
- 각 세대에 설치되는 수납 선반의 경우, 사용 패턴 및 과도한 하중으로 인하여 처짐이나 손상이 발생할 수 있음.
- 올인원 드레스룸 선택 시 부부욕실 및 드레스룸 진입 동선, 도어 설치 위치가 변경되며, 선택형에 따라 드레스룸 선반 구성이 상이함.
- 각 세대에 설치되는 외부창호의 개폐 위치 및 방향과 설치 위치는 본 공사 시 달라질 수 있음.
- 세탁기와 실외기가 설치되는 공간 또는 발코니에 수전이 설치되는 곳은 겨울철 동파가 발생할 수 있으니, 창문 닫기 및 보온 조치 등 입주자의 신중한 관리가 필요함.
- 우물천장과 걸레받이는 본 시공 시 하자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PVC 위 래핑 또는 도장으로 시공될 수 있음. (건본주택의 시공 자재와는 상이할 수 있음)
- 바닥 배수가 필요한 공간(욕실, 필로티, 욕실, 발코니 등)의 바닥 높낮이는 도면과 상이할 수 있음.
- 욕실 도기, 위생기구 및 수전 등 부착물의 위치는 실제 시공 시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인허가 과정 및 실제 시공 시 사용성 개선을 위하여 주방가구 및 수납공간의 계획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전열교환 환기시스템 및 욕실배기, 주방배기를 위하여 외부에 환기캡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건축 입면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환기 디퓨저, 가스배관 및 계량기 위치는 본 공사 시 설계도면 기준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 207동 코어에 부대시설용 연도가 설치될 예정이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세대 내 가구에 적용된 도장 제품은 설치 후 시간 경과 시 황변 및 표면의 평활도가 변형되는 현상이 발생 될 수 있으며, 건본주택에 설치된 제품 대비 도막 두께가 변경될 수 있음.
- 세대 내 설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의 다양한 두께로 인하여 안목치수가 도면과 상이 할 수 있음.
- 59A, 59C, 76A, 84A 필로티 상부 지상3층 세대는 안방 발코니에, 59B 지상3층 세대는 발코니(비확장 시) 또는 침실2 드레스룸(확장 시)에 완강기가 설치됨.
- 발코니 부위는 세대 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세대 간 마감 등이 상이 할 수 있으며, 발코니 벽면에 단열재 등이 시공되나 결로 발생 및 일부 벽체의 돌출이 발생할 수 있음.
- 발코니 부위는 결로 등이 생길 수 있고 직접 외기에 면해 상대적인 추위를 느낄 수 있으며, 실내습도 등 생활여건에 따라 발코니새시 및 유리창 표면에 결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며, 이와 관련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발코니는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기준 내에서 확장할 수 있으며, 계약체결 이후 관계법령 해석상의 차이 등의 사유로 발코니 확장 공사가 일부 변경될 시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발코니 창호의 위치, 크기 및 세부 사양 등은 공사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거실의 아트월 설치 및 복도 등에 벽지 외의 두께가 있는 마감재의 마감으로 인하여 안목치수가 줄어 들 수 있음.
- 본 공사 시 세대 마감 자재(수전 및 액세서리류)의 설치 위치는 마감 치수 및 사용자 편의를 고려하여 건본주택에 설치되는 위치와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수전이 설치되는 비확장 발코니를 제외하고 확장된 발코니에는 별도의 급배수 설비가 시공되지 않음.
- 세대 내 환기장치로 인해 가동 시 장비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각 실내 환기구 위치 및 개소는 성능개선을 위하여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실내 점검구는 설비공사 등의 유지관리를 위해 수량이 증감될 수 있으며, 사양, 위치도 변경될 수 있음.
- 세대의 주방 배기 및 욕실 배기의 경우 외부로 직배기 방식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하부세대의 일부 취기가 인근 세대로 확산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계약체결을 하여야 함.
- 세대의 화장실의 배관은 층하 배관으로 설계됨.
- 시스템에어컨 유상옵선 선택 시 실외기는 기본사양으로 설치되며, 계약자가 추가로 설치하는 실외기는 제품의 폭, 높이 및 전기사양 등의 차이로 인하여 설치 불가할 수 있으므로, 건본주택에서 이를 확인하고 에어컨 전문업체 확인 후 설치하시기 바람.
- 본 공사 시 실외기실 출입문의 열림 방향이 변경될 수 있으며, 도어 하드웨어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본 아파트는 개별 가스보일러를 이용한 난방 및 급탕설비로 공급될 예정임.
- 본 공사 시 싱크대 하부에는 온수분배기 및 음식물 탈수기(옵선선택 시 미시공)가 설치되며 이로 인해 싱크대 하부공간이 부분 수정될 수 있음.
- 냉방기기(에어컨) 실외기가 세대 내 별도의 구획된 장소에 설치되어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본 아파트 세대의 천장높이는 2,350mm이며, 욕실과 실외기실, 발코니 등은 상이 함.
- 실외기실에 설치되는 덕트, 청정환기유니트, 에어컨배관, 스프링클러 배관 등이 노출되거나 천장이 낮아질 수 있음.
- 다용도실의 천장높이 및 바닥 단 깊이 등은 본공사 시 현장여건에 따라 건본주택과 다소 상이 할 수 있음.
- 단위세대 내부 전세대 욕실의 샤워실, 욕조하부, 현관 및 현관창고는 바닥난방이 시공되지 않음.
- 59B타입은 샤워실 및 양변기 위치에 바닥난방이 시공되지 않음.
- 세대 내의 비내력벽(건식벽체)은 내력벽(옹벽) 또는 비내력벽(조적 또는 ALC)으로 변경될 수 있음.
- 세대 내부 커튼박스의 길이 및 형태는 천장 내부의 설비 및 전기배관 등의 시설물 위치로 인해 변경될 수 있음.
- 세대 목문을 및 시트마감 부위는 시공상 불가피하게 타카핀 자국이 보일 수 있음.

- 발코니 외부 새시의 사양으로 인해 침실창 외부 골조 상단에 물 끊기 홈이 미설치 될 수 있음.
- 세탁기와 실외기가 설치되는 공간 또는 발코니에 수전 및 스프링클러 헤드가 설치되는 곳은 겨울철 동파가 발생할 수 있으니, 창문닫기 및 보온조치 등 입주자의 신중한 관리가 필요함.
- 실외기실에 설치된 루버의 설치 높이와 형태, 부속 손잡이 등은 설비 장비의 성능에 지장이 없는 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가구 헌지, 레일 등 가구 하드웨어는 본공사 시 제품이 동급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음.
- 세대에 설치되는 수전류 및 각 화장실의 마감자재 액세서리류(수건걸이, 휴지걸이 등), 도기류는 설치 시 현장여건에 따라 위치가 변경될 수 있음.
- 세대 내 사용되는 타일류는 특성상 색상 및 무늬가 동일하지 않으며, 타일 나누기는 본공사 시 변경될 수 있음.
- 세대 내부에 적용되는 가구의 패턴클래스는 유리 특성상 조명 및 각도 등에 따라 색상이 다르게 보일 수 있음.
- 욕실 거울 및 철재류는 녹발생 방지를 위하여 알칼리나 산성세제가 아닌 중성세제를 사용하여야 함.
- 욕실 출입문(부부, 가족) 및 다용도실 문은 본 공사 시 PVC 계통(ABS) 도어로 시공됨.
- 세대 내 PL창호의 위핑훅(물구멍) 개수 및 위치는 실시공사 견본주택과 상이 할 수 있음.
- 현관 방화문은 성능에 따라 형태 및 디자인이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가구 디테일 및 이음매의 위치, 도어 나누기 등은 견본주택과 다소 상이 하게 시공될 수 있음.
- 가구 상부장 및 수납의 크기 등은 기준층 세대와 1층 세대가 천장과 차이로 인하여 상이 하게 시공되므로 확인하시기 바람.
- 천장 몰딩의 형태는 본공사 시 현장여건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견본주택에 사용된 도배지는 하자방지를 위하여 제조사가 변경될 수 있음.
- 세대 내의 일반 조적벽은 옹벽으로 비내력은 조적벽으로 변경될 수 있음.
- 단위세대 내부 및 세대 간 벽체 종류는 분양면적 내에서 공사 중 변경될 수 있음.

● 공용부

- 경관조명 등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공용조명, 단지 홍보용 사인물, 오배수시스템 유지 등)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함.
- 본 아파트의 단지 내에 건립되는 공유시설물 및 대지는 공동으로 사용함.
- 각 세대의 엘리베이터 홀과 현관문 사이의 공간은 공용면적이므로 전용화하여 사용할 수 없음.
- 각동 저층부 세대는 지하 시설물의 배기구, 쓰레기집하시설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인접 세대는 소음 및 냄새 등의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음을 계약자는 직접 확인 후 청약 및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이에 대해 사업주체 및 시공사 또는 승인권자에게 민원을 제기할 수 없음.
- 각 주동 저층부 측벽(필로티 벽체 포함) 또는 코어 벽체에 면하여 단지 내 지하시설의 환기 및 화재 시 급배기를 위한 시설물(DA)이 설치되며 그 위치는 실 시공 시 규모 및 형태가 변경될 수 있음.
- 각 동의 저층부 주변에 단지 내 지하시설의 환기 및 화재 시 급배기를 위한 시설물(DA)이 설치되며, 그 위치는 실 시공 시 규모 및 형태가 변경될 수 있음.
- 각 주동 저층부 세대는 단지 내 도로 및 각종 부대-복리시설 등과 인접하여 소음 및 프라이버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 지하주차장 천장 상부는 각종 배선, 배관이 노출됨.
- 본 아파트 단지의 서측 주출입구의 지하주차장 램프를 이용하여 지하2층 주차장으로 통하는 경로는 차량통행 구간에 한하여 높이 2.7m를 확보하여 지하2층 주차장에서 각동으로 소형(1톤)택배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며, 지하2층에서 지하1층 및 지하3층으로 통하는 내부램프 등 기타 동선은 통과할 수 없음. (북측 부출입구는 높이 2.3m미만임)
- 아파트 외벽 입면 몰딩 설치에 따른 입면 돌출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일부 동은 놀이터, 휴게소, 조경시설, 주민운동시설, 단지 외부 보행도로 등으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207동 근처에 어린이집 및 유아놀이터 1개소, 201동, 202동 근처, 203동, 211동, 212동 근처, 210동 근처에 각 1개소씩 3개의 어린이 놀이터가 위치하며,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213동에 근접하여 주민운동시설이 위치하며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201동에 근접하여 근린생활시설-1이 위치하며, 소음 발생 및 프라이버시 침해가 있을 수 있음.
- 203동 측벽에 설치된 경관조명은 시간별 연출이 실행될 수 있으며, 일부 세대에 영향을 줄 수 있음.
- 단지 내 지상도로가 없는 일부 세대의 경우는 이삿짐 운반 시 엘리베이터를 사용해야 하며, 단지 내 지상 도로가 있더라도 단지 배치 특성상 일부 세대에는 위치 및 층수에 따라 이삿짐 사다리차 진입이 어렵거나 불가능할 수 있음. (임의사용에 의한 파손의 복구비용은 원인자부담의 원칙을 따름)
- 해당 주택의 입주 후 주차공간을 이용함에 있어 모든 이용자는 상호간에 불편을 야기하거나 방해하여서는 아니되며, 주민공동시설 이용 등에 관한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와 관리사무소의 운영기준에 따라야 함.
- 엘리베이터와 면하거나 또는 인접한 실은 엘리베이터의 운행 중에 발생하는 소음 및 진동이 전달 될 수 있음.
- 각 동의 엘리베이터홀 전층과 계단실 3층, 12층, 옥탑층의 창에는 자동폐쇄장치가 설치됨.
- 승강기 사용 시 일부 시간대 및 이사세대로 인한 혼잡 및 대기시간 지연이 있을 수 있음.
- 건물과 건물 사이 보행자 통로, 주변도로 및 비상차로 등으로 인하여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음.
- 지하주차장 이용 시 차량 순환체계에 따라 일부동은 동선이 길어질 수 있음.
- 쓰레기 분리수거함이 일부 세대 전면에 위치하여 악취 및 소음이 발생하여도 민원제기 등을 할 수 없음.
- 주동공용부 엘리베이터홀의 지하층은 바닥-타일, 벽-타일 및 도장 마감 기준, 1층은 바닥-석재, 벽-타일 및 도장 마감 기준으로 시공됨. 이는 동등수준 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타일은 300*300 국산타일이며 대형타일/외산타일로의 변경요청 시 추가비용은 요청 주체에서 부담하여야 하며 추후 변경에 따른 민원 등에 대해 책임져야 함)
- 옥탑층에 의장용 구조물, 정화조 배기탑, 경관조명, 위생안테나, 공청안테나, 태양광 판넬, 이동통신 중계기, 피뢰침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조명 및 빛의 산란에 의해 침해를 받을 수 있음.
- 건축물 측벽에 낙뢰예방(「건축법 시행령」 제87조,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0조)을 위한 측벽 피뢰침이 시공될 수 있으며, 세대 내에서 피뢰침 일부가 보일 수 있음.
- 단지 배치상 레벨차에 의해 데크로 분할 계획되어 있으며, 각 데크의 수직면 및 인접 대지와와의 레벨차에 따른 옹벽면에 인접한 세대는 조망권, 일조권 침해가 있을 수 있음.

- TV공청안테나 및 위성수신안테나는 전파수신이 양호한 지붕층에 설치됨.
-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여 한국전파진흥협회와 협의한 사항을 고지하며, 아래 위치에 기간통신사업자들에 의해 구내용 이동통신설비가 설치될 예정임.
(옥외안테나 및 옥상중계장치 - 203동, 204동, 205동, 208동, 210동, 212동 / 중계기 - 212동의 지하1층 헬룸 인근, 204동 210동 212동의 지하2층 인근 TPS, 204동 210동 212동의 지하3층 인근 PIT)
- CCTV 시스템은 해당 시스템 구성 변경에 따라 장비의 사양이 사업승인 시 제출되었던 사양과 다소 상이할 수 있음.
- 단지 내 CCTV를 위한 주차장 카메라의 설치 및 촬영으로 인한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향후 이에 따른 민원 및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지하주차장과 아파트 지하층 엘리베이터홀과 연결된 층수 및 연결통로의 길이와 형태는 동별로 상이하나, 해당 평면 및 동·호수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 화재 안전기준에 의거 옥내소화전의 배치상 지하주차장의 일부 주차구획은 차량도어 개폐 시 간섭이 발생할 수 있음.
- 배치계획 상 동별 주차구획 배분이 다를 수 있으며 동별 출입 동선은 모든 동이 동일하게 계획되어 있지 않으므로 주동 출입 위치 등을 확인하시기 바람.
- 본 아파트의 주차대수는 2,086대(장애인 주차/근린생활시설 주차 포함)로 계획되어 있으며, 입주자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은 불가함.
- 외부 공간 식재, 시설물, 포장 등은 분양자료(CG, 모형 등)와 상이 할 수 있음.
- 단지 내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휴게소 등의 조경시설물 설치로 인해 이와 인접한 일부 세대는 소음, 시야 차단 등 생활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음.
- 경관조명 및 공용시설 조명, 아파트 및 근린생활시설 조명, 개별 상가 간판, 야외 조경용 조명 등에 의해 일부 호실은 눈부심이 발생 될 수 있음을 충분히 숙지 바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 옥외공간의 모든 시설은 입주민 공동의 시설로 개인의 기호에 의한 변경은 불가함.
- 단지 내 조경수와 조경시설의 위치는 관계기관 심의 결과, 시공과정, 단지 옥외공간의 조화 등에 따라 선형이나 포장과 시설의 재료, 형태, 색채,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내 비상차로 및 포장구간 중 일부는 화재 등의 응급상황 발생 시 비상 차량의 정차 위치로 표기/활용될 수 있음.
- 단지 내 도로와 인접한 저층세대는 차량의 전조등 및 보행자에 의해 거주 시 불편함이 있을 수 있음.
- 단지 주출입구, 부대·복리시설, 주차 출입구, 근린생활시설 등 단지 내 시설물 등에 의해 특정 세대의 경우 일조권, 조망권 및 환경권 등이 침해될 수 있으며, 야간조명 효과 등에 의한 눈부심 현상이 발생 될 수 있음.
- 지하주차장의 확장형 주차, 경차, 전기차, 장애인 주차 등의 위치는 현장여건에 따라 도면과 상이 할 수 있음.
- 주동 저층부(지상1~2층) 외벽 마감은 디자인 계획에 따라 석재뿔칠, 도장, 석재가 혼용 적용될 수 있으며 적용비율은 각 동별 상이 할 수 있음. (필로티 내부 포함)
- 각 저층부 석재마감 줄눈의 간격은 디자인 및 시공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저층부 외벽 마감재의 종류에 따라 저층부 세대 일부 창호폭이 줄어들거나 창호가 이동될 수 있음.
- 207동 옥상에 부대시설 설비의 연도가 설치될 예정임.
- 각 동 주변에 화재 등의 응급상황 발생 시 대피를 위하여 에어매트 설치공간이 조성되는 경우, 해당 자리에는 교목 및 관목 식재가 불가함.
- 단지 내 조경 식재 구간 중 중의 일부 구간은 소방법상 비상시 공기안전매트 설치를 위해 식재를 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해 저층 세대는 사생활권 및 환경권 등이 침해될 수 있음.
- 지하주차장 및 PIT 등은 별도의 트랜치가 시공되지 않음.
- 지하층 내 유지·보수 점검을 위한 PIT 내부, 각동 PS내부의 경우 천장 및 바닥, 벽체부에 별도의 마감은 없음.
- 지하에 계획된 전기실, 발전기실 등으로 인하여 인접세대의 소음, 진동 등의 영향이 있을 수 있음.
- 지하주차장 구조는 PC, 데크플레이크, R.C로 구성되어 있으며, 구조계산 및 현장여건에 따라 구획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지하주차장이 변경될 수 있음.
- 지하주차장 천장은 미장, 도장, 뿔칠 등 별도의 마감이 없으며, PC부재 및 데크플레이트 부재가 노출되는 형식임.
- 지하주차장과 동하부 PIT 구획, 높이 및 면적, 비내력벽의 두께 등은 변경될 수 있음.
- 주요 구조체는 정밀구조계산에 따라 최적화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내력벽은 비내력벽으로 변경될 수 있음.
- 계절적 요인 및 환경에 따라 지하주차장 내에 결로가 발생할 수 있음.
- 주동 및 부대시설의 장애자 램프 위치/길이, 점자 블록 위치/개소 등 장애인 관련 시설은 관련기관, 단체, 부서 협의 사항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한전 인입 장비 및 한전 패드, 통신 인입 맨홀이 단지 내에 설치되므로, 일부 세대에서는 조망권 침해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고, 시공 및 인·허가 과정에서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
- 각동 복도 및 계단실, 공용홀, 부대시설 등의 벽체 마감이 타일, 석재, 뿔칠 도장 등의 경우 별도의 걸레받이 시공은 되지 않으며, 도장 마감일 경우에도 색채 및 디자인에 따라 걸레받이 도장은 별도 시공되지 않음.
- 최상층 세대에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및 엘리베이터 기계실 설치로 인해, 일부 소음, 진동, 눈부심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어린이집, 주민공동시설-1, 근린생활시설-1은 옥상 녹화가 설치예정으로 옥상이 보일 수 있음.
- 옥상조경 및 옥상배수 등의 설비 등에 대해 관리가 필요한 경우 세대 내 프라이버시, 조망 등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계약 전 필히 확인하시기 바람. (세대에서 해당 옥상은 사용할 수 없음)
- 단지 내부 고저차에 의거하여 201, 202, 212, 213동은 북측의 부출입구를 통하여 지상층으로 접근이 가능하며, 서측의 주출입구를 이용할 경우 옥외계단 등을 통하여 지상으로 접근이 가능함.
- 옥상의 청소용 고리는 세대당 전후면 2개소 설치 기준이며, 공사 중 임의로 추가요청을 할 수 없음.

● 부대시설

- 본 아파트 계약면적 외의 근린생활시설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음.
- 주민공동시설은 피트니스, 골프연습장, 실내수영장, 다목적홀, 사우나, 독서실, 작은도서관 등으로 구성됨.
- 부대·복리시설은 법적으로 설치가 의무화된 품목만 당사가 시공하므로 제공 집기 및 마감재 등이 변동될 수 있으며, 유지, 관리 및 운영은 입주민 대표자 회의를 통하여 운영기준을 수립, 시행하여 자체적으로 하여야 함.
- 부대·복리시설의 변경으로 인해 발생하는 계약면적 및 대지지분 등의 변경이 계약체결 이후 입주 시까지 일부 발생할 수 있음.
- 관리사무소, 경로당, 어린이집, 작은도서관 및 주민공동시설, 근린생활시설, 지하주차장, 경비실 등 부대·복리시설 및 기계/전기실 등은 설계변경을 통하여 실시공시 위치, 다른 실로의 변경/통합, 사용자 동선, 입면 형태(색채, 재질, 간판 형태 등), 실내구획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주민공동시설 내 일부 공간은 입주민을 위한 입주지원센터 및 AS센터가 운영된 뒤 향후 주민공동시설 등으로 변경될 계획임.

-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은 기본 마감만 시공되며, 집기류는 제공되지 않음.
- 부대·복리시설(주민공동시설 포함)의 마감 및 시설의 경우 견본주택과 홍보자료는 참고용으로 제작된 것으로서 실제 설치되는 기자재의 종류 및 수량과 사양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임의로 변경 및 추가 요구를 할 수 없음.
- 부대·복리시설(주민공동시설 포함)은 실제 시공 시 현장여건에 따라 설계변경을 통해 일부 실의 규모 및 배치 형태, 내부 구조 등의 건축계획과 마감재, 집기가 변경될 수 있으며 향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 내 근린생활시설은 별도의 분양시설이며, 공동주택단지외 별도구획이 불가하므로 향후 주거시설과 대지지분에 따른 구획 및 분할을 요청할 수 없음.
- 일부 동 하부에 경로당, 어린이집 및 주민공동시설 등이 인접하여 소음 및 진동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단지 내 부대시설(주민공동시설 등)은 사업주체가 설치하고, 운영 및 관리 등은 입주 후 입주자 부담으로 입주자가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인수, 인계하기 전까지 위탁관리를 할 수 있음.
- 근린생활시설의 입점 업체는 미확정이며, 입점업종과 관련한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근린생활시설은 후분양에 따른 MD계획이 미확정이므로 MD계획에 따른 면적 변경이 될 수 있음.
- 우편물 보관함 및 무인택배보관함의 설치 위치 및 개소는 실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 (무인택배보관함은 각동 지하2층에 동별 1개소 설치예정이며 동별 설치 위치는 상이 하여 각 세대에서의 접근성은 차이가 있음)
- 근린생활시설-1 전면 및 부출입구 주변 보도는 잔디블록 포장으로 보행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고, 인허가 사항으로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의 가구 소품과 디스플레이 용품 등은 분양가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인접한 동의 일부 세대는 지상 또는 인근에 설치되는 에어컨 실외기, 환풍기 후드 및 기타 장비에서 발생하는 소음 및 급·배기에 의한 사생활권 침해를 받을 수 있음.
- 근린생활시설-2 주차구획은 배치 계획상 202동 인근 지하 2층 주차장에 위치(근린생활시설 주차구획 5대)하며, 단지 입주인 차량과 출입구를 함께 사용하게 됨. (실시공시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
- 주민공동시설은 각 동 하부에 용도별로 위치 해있음.
(202동 하부에는 관리사무소, 206동, 208동 하부에는 독서실, 207동 하부에는 피트니스, 골프연습장, 다목적홀, 212동 하부에는 경로당, 게스트하우스가 있음)
- 어린이집, 주민공동시설-1, 근린생활시설-1 상부에 옥상 녹화(잔디 및 지피초화류), 207동 측벽에 부대시설 실외기실이 설치될 예정이며 해당 시설의 주변 동에서 옥상배수, 실외기, 설비 등 기기 소음 및 관리자 진입 시 세대 내 프라이버시, 조망, 소음 등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 단지 내 근린생활시설의 내·외부 공간계획은 확정되지 않았으며, 분양홍보물(모형, CG, 카탈로그 등) 상에 설명된 것과는 상이하게 시공될 수 있으며, 외관, 인접한 외부 공간의 조경, 포장 등과 내부 건축계획의 변경은 아파트 계약자와 무관하게 설계 변경될 수 있음.

● 설계관련 변경 사항

- 본 아파트의 입주 후 불법 구조 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
- 본 아파트의 구조개선을 위한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합리적인 시공을 위하여 관련법령 내 적합한 세대 내 일부 설계변경 등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진행될 수 있음.
- 본 아파트의 구조개선을 위한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본 아파트의 서비스면적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경미한 설계변경의 범위 안에서 옥탑, 지붕, 난간, 입면, 단지시설물 등의 위치가 이동되는 등 디자인이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본 아파트는 옥탑구조물, 외관색채, 옥상조경 등은 시공 중 변경될 수 있음.
- 본 단지는 지하수위 저감을 위한 영구배수 상수위 제어공법이 적용될 수 있으며, 입주 후 이에 따른 관리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
- 주동 색채 및 옥외시설물은 향후 상위 지침변경 및 인허가 과정 중 입주자 동의 없이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내 조경시설 및 조경수 식재위치는 입체적 단지 조화를 고려하여 설치하나 식재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단, 규격이나 수량의 변경이 있을시 당초 계획보다 동등 이상으로 시공됨), 시공과정 중에 특화설계 등에 따라 조경시설물은 조경 선형이나 포장 및 조경시설물의 재료, 형태, 색채,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
- 아파트의 현장여건 및 구조/성능/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적절한 절차를 거쳐 설계변경을 추진할 수 있으며, 관련법규(「건축법」, 「주택법」)에서 정하는 경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음을 인지하시기 바람.
- 단지 내 조경, 동 현관, 지하 출입구 등 공용부분은 디자인 의도에 따라 형태, 재질, 색채 등이 각기 다르나 성능개선을 위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상기 사항은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 대상이 될 수 없음.
- 부대·복리시설 계획은 동선, 기능, 성능개선을 위하여 설계 변경될 수 있음.
- 광주시청의 인·허가 조건(사업계획(변경)승인, 교통영향평가, 각종심의 등 포함)에 따라 단지 내·외의 도로(인도, 차도 및 비상차량동선 등), 부대·복리시설, 주민운동시설(어린이놀이터 및 주민휴게공간 등)의 선형, 위치, 크기, 모양, 대지경계선형 등의 사항은 적절한 절차를 통하여 변경 시공될 수 있음.
- 마감수준 등은 현장여건에 따라 세부 계획 시 동등수준 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견본주택, 관련 도면을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각 주거동 필로티의 천장고는 변경될 수 있고, 자전거 보관소는 법 또는 사업승인조건을 충족하는 수량을 설치하며 설치 위치 및 규모는 공사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외부창호 디자인, 개구부 및 프레임 사이즈, 유리, 안전난간 등은 성능개선, 안전성에 따라 공사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201동 인근에 근린생활시설-1, 202동 지하1층에 근린생활시설-2의 분리수거용기 전용공간이 위치하고 있어 인접 세대 및 주변시설 사용자에게 불편함을 유발할 수 있음.
- 지상에 설치되는 지하주차장 환기용 그릴은 본 공사 시공 시 위치 및 디자인 변경이 될 수 있음.
- 단지 내 문주 및 지하주차장 램프 지붕은 본 공사 시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서측(204동 근처)에 설치된 보행통로용 외부계단의 재질 및 디자인은 추후 변경될 수 있음.
- 태양광 판넬은 202동, 207동, 210동, 211, 213동 옥상층에 설치되며, 상세 설계 및 공사 중 위치 및 용량은 변경될 수 있음.
- 스프링클러 배관 관경 및 기준 개수 등 소화 시설물의 기준은 수리계산에 의해 설계도면과 다르게 시공될 수 있음.
- 주요방범 및 방재 활동 영역에 보안등과 CCTV가 설치될 예정이나, 일부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으며, 본 공사 시 수량과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
- 견본주택 및 단지 내에 적용되는 모든 자재 및 제품은 시공 시기와 생산 여건에 따라 자재품질, 품귀, 생산중단, 제조회사 도산 등 부득이한 경우와 신제품 개발 시에 한해 동질 이상의 타사제품으로 변경될 수

- 있음.
- 분양 시 설계도서와 견본주택 단지모형 상 외벽 색채, 옥상 조형물, 외벽 돌출 몰딩 등은 안전사고 방지, 성능개선, 유지관리 등을 고려하여 공사 중 변경될 수 있음.
- 본 아파트 입면의 색채는 견본주택 내 모형과 다르게 관련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관련한 이의 제기 및 변경을 요청할 수 없음.
- 주출입구, 경비실 위치, 지하주차장은 교통 통제의 필요성, 효율성, 측량결과 등에 의거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설계변경 필요 시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단지 내 지하주차장은 동선, 기능, 성능개선을 위하여 설계변경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본 공사 시 추가 지질조사 및 현장여건 등에 따라 가시설 및 구조방식, 기초의 형식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옥실, 다용도실, 발코니 등에 설치되는 바닥 배수구, 수전, 우수 선홍통 등은 위치 및 형태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실시공사 대지면적, 연면적, 용적률, 주차대수 및 조정면적, 자연지반면적, 인공지반 녹지면적 등은 축소 또는 증가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 조경(식재, 시설물, 공간계획, 포장 등)은 설계변경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외관 색채, 부대시설, 문주 등의 기타시설은 경관심의 재심의 등을 통해 색상 및 디자인이 변경될 수 있음.
- 측량결과에 따라 일부 주동의 위치가 경미하게 변경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지하층 층고, 일부 지하주차장 레벨, 램프 위치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각종 분양 홍보자료는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기초 자료이며, 자료에 표시된 주변 개발계획은 각각의 개발주체가 계획 또는 추진예정, 실행 중인 상황을 표현한 것으로 향후 변경 및 취소될 수 있으니 반드시 사업부지 주변 여건 및 주변 환경, 개발계획 등을 확인하시고 계약하시기 바람. 이에 대한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각종 홍보물, 견본주택의 전시품 및 연출용 시공 부분, 카탈로그, 팸플렛 등 각종 인쇄물에 사용된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그림)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시설물의 위치, 규모, 색채는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 심의 결과 또는 행정처리 등에 따라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
- 세대 평면도, 주민공동시설 평면도 및 카탈로그 이미지 컷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임의로 가구 등을 시뮬레이션한 것으로 현장여건에 따라 설계변경을 통해 일부 실 배치, 형태, 내부 구조 등 건축계획과 마감재, 집기 및 외부공간 식재, 시설물, 포장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본 아파트의 명칭, 외부색채와 외부 상세계획 등은 인·허가 과정, 법규 변경, 현장시공 여건 및 상품개선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분양 시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동·호수의 표기 또한 변경될 수 있음.
- 아파트 측벽로고의 위치와 디자인은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 취향 민원에 의한 변경사항이 될 수 없음.
- 203동의 서측 측벽은 일부 강판 마감재로 시공될 예정이며, 금속자재의 특성상 신축팽창 및 우천에 따른 소음 등 불편함이 다소 발생할 수 있음.
- 대지 주위의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사항은 최종 측량 성과도에 따라 결정되므로 도로 폭 등의 사항이 다소 변경되어질 수 있음.
- 단지 외부의 기반시설인 도로의 레벨 조정으로 도로 경사도 및 도로접속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위하여 지반레벨(계획고), 비상차로 경사도가 현장여건에 맞게 설계변경 될 수 있음.
- 당 사업장 위치 여건상 대지 주변 및 대지경계 부근 또는 단지 내로 U형 측구(우수관로)가 설치되어 미관상 노출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비상차량 동선의 폭이 조정될 수 있음.
- 단지 내·외부 유입수 처리를 위해 설치된 U형 측구, 비점오염저감시설에 대한 유지, 보수, 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하고, 향후 이에 따른 민원 및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더샵 스마트홈 서비스

- 입주자대표회의 설립 후 별도의 인터넷회선(단독IP)을 설치해야 홈네트워크와 연동하여 일괄소등 및 가스차단 등 원격제어가 가능함.
(해당 홈네트워크사의 스마트홈 전용 어플 및 세대인증 필요, 휴대폰 제어 시는 통신요금이 발생함)
- 무선통신기술을 이용한 공동현관 문열림 서비스는 더샵 스마트폰 어플이 실행되고 있는 스마트폰을 소지한 상태에서만 사용이 가능함.
- 무선통신기술을 이용한 공동현관 문열림 서비스는 스마트폰의 블루투스 기능이 비활성화된 상태에서는 사용할 수 없음.
- 주차 위치 안내 서비스는 더샵 스마트폰 어플이 실행되고 있는 스마트폰을 소지한 상태로 주차한 경우에만 사용이 가능함.
- 주차 위치 안내 서비스는 스마트폰의 블루투스 기능이 비활성화된 상태에서는 사용할 수 없음.
- 무선통신기술을 이용한 공동현관 문열림 및 주차 위치안내 서비스는 개발 여건에 따라 명칭, 적용 범위, 적용 시점, 사용 방법의 차이는 발생할 수 있으며, 시스템 동작을 위하여 안드로이드 6.0.0, iOS 11.0 버전 이상이 필요함.
- 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신용카드 및 NFC 사용 가능한 스마트폰 일부 모델은 입주인이 개별적으로 세대 디지털 도어락에 등록 가능하나, 보안상의 이유로 권장하지 않음. (단일 인식번호로 생산된 일부 카드와 스마트폰 등록 시, 같은 종류의 다른 카드 혹은 다른 스마트폰에 대해서 동일하게 인식되어 문이 열리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단, 등록 가능한 판단의 주체는 도어락 제조사가 아닌 입주인에게 있음.
- 1~2층(필로티 포함), 최상층 1개층 세대 내부에 동체감지기가 설치되며, 배터리 교체 주기는 통상 1년이며, 사용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무선인터넷 사용을 위한 세대 내 무선 AP가 설치되며, 인터넷 회선 가입 및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함.
- 세대 통신단차함 내부에는 별도의 허브 장치가 지원되지 않으며 해당 장치는 인터넷 설치 시 각 사업자에게 제공 요청하여야 함.
- 입주인이 개별적으로 디지털 도어락에 등록한 신용카드 및 스마트폰은 보안상 이유로 공동현관 자동출입문에는 등록할 수 없음.
- kakao i 연동 스피커를 입주 시점에 세대별 1개 무상 제공이나, 연결을 위한 통신사별 인터넷 상품은 미포함으로 별도가입을 권장함. 또한 세대별 IoT 제어 서비스 (조명 제어 등) 및 일부 정보기능(에너지 사용량 조회 등) 연동 비용은 입주 기간 종료 후부터 10년간 무상이나, 카카오의 플랫폼 운영정책에 따라 유상으로 전환 가능성이 있음.
- kakao i 연동 스피커 제품의 성능향상을 위한 카카오사의 운영정책에 따라 외관 디자인 및 규격, 사양, 재료, 구성품은 사전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음.
- kakao i 연동 스피커의 구성 및 기능, 연결, 문제 발생 시 해결방법, 설치장소, 품질보증, 고객센터,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제품사양 등은 제품박스 개봉 시 동봉되어 있는 사용설명서를 참조 바람 Kakao i 연동 스피커와 관련된 문제 발생 시 입주인이 직접 Kakao i 고객센터로 접수하여 카카오 고객센터 A/S 정책에 따라 진행하여야 함.
- kakao i 연동 스피커, 카카오희 앱, 카카오톡을 통해 더샵 홈네트워크와 제어기능(조명제어 등), 정보기능(에너지 사용량 조회 등) 서비스의 다중 사용자(가족 구성원), 다중 기기(Kakaomini) 연동은 카카오의 운영정책에 따라 기능에 대한 명칭, 적용 범위, 적용 시점의 차이는 발생할 수 있음.
- 카카오희 앱, kakao i 연동 스피커 음성제어, 헤이카카오 앱 음성제어 및 카카오톡 챗봇의 세대 기기 제어와 정보 확인 서비스 제공범위는 서로 상이할 수 있음.
- kakao i 연동 스피커를 통한 음악, 라디오, 팟캐스트, 카카오톡, 알람, 타이머, 날씨, 뉴스, 날씨, 시간, 주식, 환율, 운세 등의 카카오톡의 운영정책에 따라 제공되는 생활편의서비스는 카카오의 운영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또한 일부 기능(멜론을 통한 음악 듣기 등)은 이용요금 결제가 필요할 수도 있으며, 과금의 주체는 ㈜카카오에 있음.
- 대화형 더샵 스마트홈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포스코 더샵 단지 홈페이지의 회원가입 및 인증, 포스코 더샵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한 월패드 동기화 등 사전 등록 과정이 필요하며, kakao i 연동 스피커, 카카오톡과 연동하기 위한 카카오 계정 생성, 헤이카카오 앱 및 카카오희 앱의 스마트폰 다운로드 및 계정 연동, 카카오톡-플러스 친구추가 과정이 필요함.
- kakao i 연동 스피커의 A/S 정책은 제품 보증서에 기재된 A/S 정책에 준하며, 기산 시점이 불분명한 경우 킴출일로부터 품질보증 기간을 기산 함.
- 모델하우스에 전시, 시연용 AI 스피커 및 생활 가전제품들은 기본으로 고지된 상품을 제외하고는 미제공됨을 알려드립니다.
- 삼성전자 스마트 생활가전 연동 서비스를 위해서는 삼성전자의 IoT 기능이 있는 생활가전제품을 입주자가 별도 구매/설치 후 이용 가능하며, SmartThings 앱에 제품등록 및 더샵 통합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연동 등 사전 등록 과정이 필요함.
- 옵션 제공 품목 이외 입주인이 개별 구매 후 포스코 더샵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AiQ Home)과 연동 가능한 삼성전자 생활가전제품의 종류(9종:냉장고, 세탁기, 에어드레서, 건조기, 로봇청소기, 에어컨, 공기청정기, 식기세척기, Smart TV) 및 서비스 기능은 당사 및 삼성전자의 운영정책에 따라 사전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음.
- 삼성전자 스마트 생활가전 연동 서비스를 위한 삼성 SmartThings 앱 사용환경은 삼성전자 홈페이지(www.samsung.com/sec/apps/smarthings)에서 확인 가능함. 빅스비 사용환경은 삼성전자 홈페이지(<https://www.samsung.com/sec/apps/bixby/>)에서 확인 가능함.
- 삼성전자 IoT 홈 기기의 와이파이 연결을 위한 통신사별 인터넷 상품은 미포함으로 별도가입을 권장함. 또한 세대별 삼성전자 생활가전 연동 서비스 비용에 한하여 입주 지정기간 종료 후부터 3년간 무상이나, 무상기간 이후 홈IoT 플랫폼 제공사 운영정책에 따라 유상으로 전환 가능성이 있음. 유상 전환 시 홈IoT 플랫폼 제공사 정책에 따름.
- 더샵클라우드와 연동되어 SKT 스마트홈, NUGU에서 제공되는 인공지능 서비스의 경우 입주 지정기간 종료 후, 10년 동안 무상서비스로 제공됨. 이후 서비스제공사의 정책에 따라 이용요금이 발생할 수 있음.
- SKT 스마트홈, NUGU 음성인식서비스 중 가전기기를 제어하는 서비스의 경우, IoT 연동 가전기기를 구매하시면 무선인터넷 환경에서 사용이 가능하며, 해당 기기가 제공하는 기능에 따라 서비스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SKT 스마트홈, NUGU 음성인식서비스는 서비스 제공사의 성능개선이나 입주 시의 기술개발 환경 등의 사유로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며, 전자투표, 방송TTS와 같은 부가서비스는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
- 스마트홈, NUGU 음성인식서비스 이용을 위한 앱 사용환경은 SKT SmartHome 홈페이지(www.sktsmarthome.com)에서 확인 가능함.
- SKT 스마트홈 IoT 홈 기기의 와이파이 연결을 위한 통신사별 인터넷 상품은 미포함으로 별도가입을 권장함.
- LG전자 스마트 생활가전 연동 서비스를 위해서는 LG전자의 IoT 기능이 있는 생활가전제품을 입주자가 별도 구매/설치 후 이용 가능하며, LG ThinQ 앱에 제품등록 및 더샵 통합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연동 등 사전 등록 과정이 필요함.
- 옵션 제공 품목 이외 입주인이 개별 구매 후 포스코 더샵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AiQ Home)과 연동 가능한 LG전자 생활가전제품(8종:냉장고, 세탁기, 에어드레서, 건조기, 로봇청소기, 에어컨, 공기청정기, 식기세척기)의 종류 및 서비스 기능은 당사 및 LG전자의 운영정책에 따라 사전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음.
- LG전자 스마트 생활가전 연동 서비스를 위한 LG ThinQ 앱 사용환경은 LG전자 홈페이지(www.lge.co.kr)에서 확인 가능함.

■ 친환경 주택의 성능 수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제3항제21호에 따라 친환경 주택의 성능 수준을 다음과 같이 표시함)

의무사항		적용 여부	사양, 성능, 설치위치, 설치개수(필요시)
고단열 고기밀 현관문		적용	1등급
창의 기밀성능 (세대 직접외기 이중창)		적용	1등급
건축부문 설계기준 (제7조제3항제1호)	단열조치 준수(가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제6조제1호에 의한 단열조치
	바닥난방의 단열재 설치(나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제6조제3호에 의한 바닥난방에서 단열재의 설치
	방습층 설치(다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제6조제4호에 의한 기밀 및 결로방지 등을 위한 조치를 준수
기계부문 설계기준 (제7조제3항제2호)	설계용 외기조건 준수(가목) (냉난방설비가 없는 경우 제외)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제8조제1호에 의한 설계용 외기조건 준수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나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제8조제2호에 의한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 준수
	고효율 가정용보일러(다목)	적용	산업통상자원부 고시「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서 정하는 에너지소비효율1등급 제품
	고효율 전동기(라목)	적용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또는 최저소비효율기준 만족 제품(0.7kW이하 전동기, 소방 및 제연 송풍기용 제외)
	고효율 난방, 급탕·급수펌프(마목)	적용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또는 평균 효율이 KS규격의 1.12배 이상 제품
	절수형설비 설치(바목)	적용	세대 내 설치되는 수전류
전기부문 설계기준 (제7조제3항제3호)	수변전설비 설치(가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제10조제1호에 의한 수변전설비 설치
	간선 및 동력설비 설치(나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제10조제2호에 의한 간선 및 동력설비 설치
	조명설치(다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제10조제3호에 의한 조명설비 설치
	대기전력 자동 차단장치 설치(라목)	적용	거실, 침실, 주방에 각 1개소씩 설치
	공용화장실 자동 점멸스위치(마목)	적용	부속동 화장실내 자동점멸스위치 설치
	실별 온도조절장치(바목)	적용	각 실별 온도 조절장치

■ 친환경 성능 수준 및 공동주택성능에 대한 등급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4조 및 「주택법」 제39조)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6. 7. 27.>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

1. 공동주택명: 경기 광주오포 고산지구 C2블록 공동주택
 2. 신 정 지: ㈜포스코건설
 3. 대 지 위 치: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고산리 333외 32필지
 4. 성 능 등 급

가. 소용 관련 등급	상능등급
1. 경량층벽체 차단성능	★★★★
2. 중량층벽체 차단성능	★★★★
3. 세대 간 방음벽체 사용성능	★★
4. 고품질경도도, 합도에 대한 실내·외 소음도	★★
5. 화질성 급대수 등급	★★

나. 구조 관련 등급

성능항목	상능등급
1. 내구성	★★
2. 가변성	★★
3. 수리용이성 천공부분	★
4. 수리용이성 관통부분	★★

다. 환경 관련 등급

성능항목	상능등급
1. 기준 내외의 생태학적 가치	해당없음
2. 과도한 지하개발 지양	해당없음
3. 통풍사 절감용 차폐회	해당없음
4. 밀착경 강성방사 대체의 타당성	해당없음
5. 에너지 절감	★★
6. 에너지 모니터링 및 관리지형 설치	★
7. 산·채석폐기물 이용	해당없음
8. 저탄소 에너지원 기술의 적용	해당없음
9.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장물질의 사용 금지	★★
10. 환경상성안 제품(EPOD)의 사용	★★
11. 저탄소 자재의 사용	★
12. 자중순환 자재의 사용	★
13. 유해물질 차단 자재의 사용	★
14. 녹색건축자재의 적용 비율	★★
15. 재활용가능자재의 보급률 설치	★★★★
16. 빗물관리	★
17. 빗물 및 우수저류수 이용	★★★★
18. 갈수형 기기 사용	★★
19. 불 사용량 모니터링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정」 제11조 및 「주택법」 제39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를 발급합니다.

2021년 01월 21일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장

녹색건축 예비 인증서

[건축물 개요]

건축물명: 경기 광주오포 고산지구 C2블록 공동주택
 건축주: ㈜포스코건설
 준공예정일: 2023년 12월 1일

[인용 개요]

인용번호: G-SEED-P-2021-0053-7
 인용기관: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유효기간: 2021.12.1. ~ 사용종결일

[인용 등급]

인용등급: 일반등급(공동주택)
 인증기준: 녹색건축 인증기준
 인증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341호
 한국생산성본부 인증기준 제2016-110호

위 건축물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 및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정」 제11조 제3항에 따라 녹색건축(일반 등급)건축물로 인증되었기에 인증서를 발급합니다.

[분야별평가]

종합등급 ★☆☆☆

분야	평가
토지이용 및 교통	31%
에너지 및 환경오염	46%
재료 및 자재	55%
물순환관리	64%
유지관리	80%
생태환경	19%
실내환경	57%

2021년 1월 21일

kpc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KOREA PRODUCTIVITY CENTER QUALITY ASSURANCE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서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정(별지 제 6호 서식) <개정 2017.1.20.>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서

건축물 개요: 경기 광주오포 고산지구 C2블록 공동주택
 인증번호: 20231130
 주 소: 경기 광주시 오포읍 고산리 333외 2-2 C2블록
 면 적: 지면 3,485.14㎡ (10.38畓)
 건축물의 용도: 공동주택
 설계자: ㈜포스코에너지건축사사무소

에너지효율등급 평가결과

구분	단위면적당 에너지소비량 (kWh/㎡·년)	단위면적당 에너지소비량 (kWh/㎡·년)	1차 에너지소비량 (kWh/㎡·년)	단위면적당 CO ₂ 배출량 (kg/㎡·년)	단위면적당 CO ₂ 배출량 (kg/㎡·년)
냉방	0.0	0.0	0.0	0.0	0.0
난방	40.6	75.5	58.7	15.7	15.7
냉방	30.7	33.8	25.0	6.9	6.9
조명	12.7	12.7	34.9	6.0	6.0
기계	84.0	4.0	11.1	1.8	1.8
합계	168.0	126.0	129.7	30.5	30.5

■ 단위면적당 에너지소비량: 건축물의 냉방, 난방, 조명, 조류, 풍력, 열에너지 등 요구되는 단위면적당 에너지량
 ■ 단위면적당 에너지소비량: 건축물에 설치된 냉방, 난방, 조명, 풍력시스템에서 또는 단위면적당 에너지량
 ■ 단위면적당 CO₂ 배출량: 에너지 소비량에 따른 냉방, 난방, 조명, 풍력, 열에너지 등 단위면적당 에너지량
 ■ 단위면적당 CO₂ 배출량: 에너지 소비량에 따른 단위면적당 에너지량에 따른 냉방, 난방, 조명, 풍력 등 단위면적당 에너지량
 ※ 이 건물은 냉방설비가 1.5이하인 1세대 이하의 단독주택이므로 면제됩니다.
 ※ 에너지효율 등급 건축물은 인증 후의 변경을 받아야 하며,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인증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소비량 정도 등에 따른 보정계수를 반영할 예정입니다.

위 건축물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 17조 및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정」 제11조 제3항에 따라 에너지효율등급(1등급) 건축물로 인증되었기에 예비인증서를 발급합니다.

2021년 01월 19일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장

■ 감리회사 및 감리금액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포함)

구분	건축감리	전기감리	소방·통신감리
회사명	㈜혜원가치종합건축사사무소	㈜케이씨엔지니어링	㈜수양엔지니어링
감리금액	3,761,463,200	787,760,600	443,850,000
사업자등록번호	114-81-64961	135-81-66082	124-81-49079

※ 상기 감리금액은 감리회사와의 계약변경 등으로 증감될 수 있음.

■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

구분	회사명	소재지	법인등록번호
사업주체·시공사	㈜포스코건설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대승로 180(괴동동)	174611-0002979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주요내용 (※본 주택은 HUG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특한 아파트임)

보증서 번호	보증금액(원)	보증기간
제01282021-101-0001200호	450,692,018,000	입주자모집공고승인일로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해당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등별사용검사 포함)까지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 사업장의 공사진행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HUG-i)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수분양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함.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약관

제1장 보증채무의 내용

제1조 (보증채무의 내용)

공사는 「주택도시보증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주채무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 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 책임을 부담합니다.

- 【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의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 【주채무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주체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 【분양이행】 주택법령에서 정한 주택건설기준 및 해당 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입주를 마침
- 【환급이행】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되돌려 줌

제2조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

-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분양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습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한 채무
 2. 주채무자가 대물변제·허위계약·이중계약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 【대물변제】 주채무자의 채권자가 그 채권에 대하여 주채무자가 분양하는 아파트 등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변제에 갈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허위계약】 분양의사가 없는 자가 주채무자의 자금 용통 등을 돕기 위하여 명의를 빌려주어 분양계약하는 것으로 차명계약을 의미합니다.

- 3.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입주금】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로부터 받는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을 말합니다.

- 4.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납부계좌(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공사가 입주금납부계좌를 변경·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포함)에 납부하지 않은 입주금
- 5. 공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증지를 알린 후에 그 납부증지통보계좌에 납부한 입주금
- 6.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 전에 납부한 입주금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다만, 공사가 입주금을 관리(주채무자 등과 공동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계좌에 납부된 입주금은 제외합니다.
- 7.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넘어 납부한 입주금
- 8.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그 밖의 증속채무
- 9.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 대출금의 이자
- 10.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 11. 보증사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할 입주금. 다만,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이전에 분양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 12. 주채무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 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 1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주택 또는 일반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선택 품목(예시:홈오토, 발코니샤시, 마이너스옵션 부위, 그 밖의 마감재공사)과 관련한 금액. 다만, 사양선택 품목과 관련한 금액이 보증금액에 포함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 14. 보증채권자가 제5조의 보증채무이행 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3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그 밖에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 15.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납부한 입주금
- 16.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이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을 위하여 납부한 입주금
- 17.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으로부터 계약금 등을 빌려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 ② 공사가 제6조에 따라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1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공사에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입주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1. 사용검사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2.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중 전체 입주금의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

【보증채권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에 대하여 주택법령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여 주채무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분양권 양수자를 포함)를 말합니다. 다만, 법인이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 이전에 그 주택분양계약에 대하여 공사에 직접 보증편입을 요청하고 동의를 받은 법인만 보증채권자로 봅니다. 이하 같습니다.

제3조 (보증채권자 등의 협력의무)

- ①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공사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의 이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조사의 협조 및 「주택법 시행령」에 따른 입주예정자대표회의 구성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증채권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해야 합니다.
- ② 보증채권자는 공사가 선정한 승계사업자 또는 시공사의 공사를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 ③ 분양권양수자는 양도자가 이미 납부한 입주금영수증을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제2장 보증채무의 청구와 이행절차

제4조 (보증사고)

- ① 보증사고란 보증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주채무자의 정상적인 주택분양계약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1. 주채무자에게 부도·파산·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함. 이하 같음)보다 25퍼센트P 이상 부족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다만, 입주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행청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3.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퍼센트를 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 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4. 시공자의 부도·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보증기간】 해당 주택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복리시설의 경우 신고일을 말함)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해당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함)까지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 ② 보증사고일은 공사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사고 안내문으로 알리면서 다음 각 호 중에서 보증사고일로 지정한 날을 말합니다. 이 경우 공사는 보증서에 적힌 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일간지(공고로 한 일간지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개 일간지를 말함)에 실어 통보에 같음할 수 있습니다. 이하 같습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부도·파산일, 사업포기 관련 문서접수일 등
 2. 제1항 제2호에서 제4호의 경우에는 보증이행청구 접수일

제5조 (보증채무의 이행청구)

보증채권자는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경우에는 공사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1. 보증채무 이행청구서
2. 분양계약서
3. 입주금 납부영수증(무통장입금증)
4. 감리자발행공정확인서(제4조 제1항 제2호의 보증사고로 이행청구하는 경우에 한함)
5. 계약금 및 중도금 출금내역 등 그 밖에 공사가 필요하여 요구하는 서류

제6조 (보증채무의 이행방법)

- ① 공사는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 이행방법(해당 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의 환급이행) 선택에 대하여 지체 없이 서면으로 최고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1. 시공사-공동사업주체 또는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한 주채무자 등(이하 "시공사 등"이라 함)이 계속사업을 원하는 경우에는 시공사 등이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있는지 여부를 공사가 결정할 때까지 그 최고를 유보할 수 있으며, 시공자등이 주택분양계약의 이행이 가능한 경우에는 최고 없이 계속사업을 진행하도록 합니다.
 2. 보증사고일 현재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80퍼센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최고 없이 분양이행으로 결정합니다.
- ② 제1항의 최고통지서를 받은 보증채권자는 공사의 최고통지서 발송일로부터 1월 이내에 보증채무 이행방법을 선택하여 공사에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이 경우 회신기한까지 회신이 없거나 그 기한을 지난 경우에는 공사에 보증채무 이행방법에 대한 선택권을 위임한 것으로 봅니다.
- ③ 공사의 최고통지서를 받은 보증채권자의 3분의 2 이상이 환급이행으로 선택한 경우에는 환급이행으로, 그 이외의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위임된 선택권을 포함하여 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3분의 2 이상에 도달한 경우에 한함)으로 결정합니다. 이 경우 같은 사업계획승인에 대하여 발급된 하나 이상의 보증은 하나의 보증으로 보아 보증채무 이행방법을 결정합니다.
- ④ 제1항 제2호 및 제3항에 상관없이 문화재 발견·토지멸실 등의 사유로 정상 사업진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환급이행으로 결정합니다.
- ⑤ 공사는 보증사고일로부터 3월(단, 주채무자가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한 경우에는 회생절차개시 신청일로부터 6월)이내에 제1항 제2호,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보증채무 이행방법을 결정하고, 그 사실을 보증채권자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알립니다.
- ⑥ 제1항 제2호,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보증채무 이행방법이 분양이행으로 결정된 경우 보증채권자는 환급이행을 요구할 수 없으며, 환급이행으로 결정된 경우 보증채권자는 분양이행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⑦ 공사는 보증채무 이행방법을 환급이행으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알리며, 보증채권자가 제5조 및 제3조에 따른 서류제출 및 협력의무를 다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미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 중에서 제2조 제1항의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를 제외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 ⑧ 보증채무 이행방법이 분양이행으로 결정된 경우에는 공사가 선정하는 자가 해당 공사를 승계시공합니다. 이 경우 보증채권자는 제2조 제2항의 잔여입주금 등을 공사에게 납부해야 합니다.
- ⑨ 분양이행의 경우 공사는 원래의 입주예정일에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더한 기간의 범위에서 새로 입주금의 납부기일과 입주예정일 및 잔여입주금 납부계좌를 지정하여 지체 없이 보증채권자에게 알립니다. 다만, 보증사고가 원래의 입주예정일 이후에 발생한 경우는 보증사고일에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더한 기간의 범위에서 지정하여 알립니다.

1. 제5항의 보증채무 이행방법 결정시까지의 기간
 2. 실행공정률을 예정공정률에 도달시키기 위한 예정공정표상의 필요한 공정기간
- ⑩ 공사는 보증채무 이행과 관련하여 협의가 필요한 경우 제3조 제1항에 따라 구성된 입주예정자대표회의를 협의당사자로 합니다.

【계속사업】 보증사고의 사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시공사 또는 공동사업주체가 공사를 마지거나 회생절차를 개시한 주채무자가 법원의 허가를 얻어 분양계약을 이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제7조 (분양이행시 지체배상금 및 연체료의 적용)

- ① 공사는 제6조 제9항에 따라 알린 입주예정일에 입주(임시사용승인을 포함)시키지 못한 경우에는 기납부된 입주금에 대하여 그 초과일수에 원래 분양계약서의 지체배상금률(지체기간별로 상이한 경우에는 최소 지체배상금률을 말함)과 공사 내규의 연체료율 중 낮은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지체배상금을 부담합니다.<개정 2019. 7.25>
- ② 분양이행시 보증채권자가 납부해야 할 잔여입주금에 대한 연체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합니다.
 1. 보증사고 당시 납부기일이 지난 입주금 : 납부지연일수에서 입주지연기간(원래의 입주예정일로부터 분양이행시 새로 알린 입주예정일까지의 일수)을 뺀 기간에 원래 주택분양계약서의 연체료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2. 보증사고 당시 납부기일이 지나지 않은 입주금 : 제6조 제9항에서 공사가 알린 입주금납부기일에 입주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납부지연일수에 원래 분양계약서의 연체료율(연체기간별로 상이한 경우에는 최소 연체료율을 말함)과 공사 내규의 연체료율 중 낮은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개정 2019. 7.25>

제8조 (대위 및 구상)

- ① 공사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가지며, 보증채권자가 주채무자에게 가지는 권리를 대위하여 가집니다.
- ② 보증채권자는 제1항의 권리를 보전하거나 행사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공사에 제출하고 공사가 요구하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③ 공사는 보증채권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에 위반한 경우에는 그 위반으로 취득하지 못한 금액을 보증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상권】 타인을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한 경우 그 타인에 대하여 가지는 상환청구권을 의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대위(代位)】 권리의 주체 또는 객체인 지위에 대신한다는 의미로서 공사가 보증채권자인 분양계약자의 지위를 이어받아 채무자인 주채무자 등에게 권리를 행사함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제3장 보증채무의 성립과 효력

제9조 (보증채무의 성립)

공사의 보증채무는 주채무자가 보증서 발급일로부터 2월 이내에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을 받은 때(상가의 경우에는 신고한 때를 말함)에 유효하게 성립합니다.

제10조 (보증의 실효)

보증서 발급 이후에 보증서에 적힌 주택사업에 대하여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계획변경이 승인된 경우에는 그 변경승인일 이후에 납부한 입주금에 대하여 보증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 다만, 사전에 서면으로 공사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1. 사업주체의 변경
2. 분양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변경

제4장 그 밖의 사항

제11조 (보증채무의 이행장소)

보증채무의 이행장소는 공사의 관할 영업부서로 합니다.

제12조 (관할법원 및 준거법)

보증에 관한 소송은 피고 소재지 법원을 관할법원(단, 공사가 피고가 되는 경우에는 공사의 관할 영업부서 또는 본사 소재지 관할법원으로 함)으로 하되, 보증채권자와 공사 간에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며,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대한민국법령에 따릅니다.

제13조 (약관의 해석)

- ① 공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해야 하며 보증채권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 ② 공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증채권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 ③ 공사는 이행대상이 아닌 채무 등 보증채권자에게 불리하거나 부담을 주는 내용은 확대하여 해석하지 않습니다.

제14조(개인정보보호)

① 공사는 이 보증의 유지, 관리, 보증금 지급 및 대위권 행사를 위해 (신용)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개인(신용)정보를 수집, 이용, 조회 또는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사는「개인정보 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용)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신용)정보를 수집, 이용, 조회 또는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단서개정 2019.7.25.>

1.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2.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신용)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4. (신용)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신용)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개인정보처리자(신용정보제공·이용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신용)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신용정보제공·이용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넘지 않은 경우에 한합니다. <개정 2019.7.25.>

② 공사는 보증과 관련된 개인(신용)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개정 2019.7.25.>

※ 본 입주자 모집공고는 분양계약서의 일부로 구성되며 청약자는 필히 본 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본 입주자 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 사항에 대하여는 견본주택 또는 사업주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람.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법령이 우선함)

2021. 2. 8(월) GRAND OPEN (사이버모델하우스 운영)

특별공급 : 2021.02.18(목) 1순위[해당지역] : 2021.02.19(금) 1순위[기타지역] : 2021.02.22(월) 2순위 : 2021.02.23(화) 당첨자발표일 : 2021.03.02(화)

총 1,475세대

| 전용 | 59㎡A · B · C / 76㎡A · B / 84㎡A · B · C · D |

분양문의 **1661-0069**

■ 사이버모델하우스 : www.더샵오포센트리체.com

■ 견본주택 위치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손곡로 9 (동천동 855-2)